

2025



캘리포니아주 이·미용 위원회
법률및 규정집

공지 사항

본 간행물은 이·미용 업계 종사자가 2025년 1월에 발효된 최신 법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법령 및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 및 전문업법 및 캘리포니아주 규정집에서 각 절의 제목은 법률의 일부가 아니며, 참조의 용이성과 편리함을 위해 제공된 것입니다. 본 간행물은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으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2025

이·미용법

및

이·미용 규정



BarberCosmo
Board of Barbering & Cosmetology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2025 캘리포니아주 이·미용 위원회 법률 및 규정집의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모든 사본은 무상으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디지털판 이용 방법

페이지 하단의 ▲ 아이콘을 클릭하면
목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용법

캘리포니아주 사업 및 전문업법 제3부 10장

전문업 및 직업 일반

제1조. **관리**

7301.	법조항의 인용	3
7302.	정의	3
7303.	캘리포니아주 이·미용 위원회, 행정관	3
7303.1.	위원회의 최우선 사항, 공익 보호	4
7305.	연례 간부 선출	4
7309.	본부 및 지소	4
7311.	인장	4
7312.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4
7313.	시설, 이동 설비차, 교육 기관에 대한 출입 및 점검 위반 사항의 통지	5
7314.	기록 보관	6
7314.3.	보건안전 자문위원회	6
7314.5.	신체적,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7
7315.	과반수의 권한 행사	7

제2조. **장의 적용**

7316.	이발 행위, 미용 행위	7
7317.	무면허로 보수를 받고 이발, 미용 또는 전기분해요법을 수행하는 경우	9
7318.	예외적으로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인가된 시설 외부에서 이·미용 행위 수행	10
7319.	본 장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10
7319.5.	학생의 적용 면제	11
7319.7.	신체적, 성적 학대 관련 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요건	11
7320.	의료 시술 또는 수술 승인	11
7320.1.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시술 시 금속 기구 사용	11

7320.2. 엑스레이 장비의 불법적 사용11
 7320.3. 미용전문가 사칭12
 7320.4. 이발사 사칭12
 7320.5. 레이저 치료 경범죄12

제3조. 시험 응시 자격

7321. 미용 시험 응시 자격12
 7321.5. 이발사 시험 응시 자격13
 7322. 헤어스타일리스트 시험 응시 자격13
 7324. 피부미용사 시험 응시 자격14
 7326. 매니큐어사 시험 응시 자격14
 7330.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시험 응시 자격15
 7331. 타주 신청자의 면허 인정15

제4조. 견습

7332. “견습”16
 7333. 견습생 교육 프로그램 시행16
 7334. 이발, 미용, 피부 관리, 네일케어 또는 전기분해요법
 견습생 면허를 취득한 사람16
 7335. 견습생 면허의 만료17
 7336. 견습생 실습 가능 조건17

제5조. 시험

7337. 공식 지원 요건, 수수료18
 7338. 시험 내용18
 7340. 시험 준비, 시행 및 채점18
 7341. 시험 불합격 시 총점의 우편 통지19
 7342. 면허의 교부19
 7344. 시험 시설의 계약19
 7345. 시험 불참 및 응시료 환불 불가19

제6조. 시설

7346. “시설”19
 7347. 시설 운영을 위한 면허 신청19
 7348. 시설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책임20
 7349. 면허 미취득자 고용20
 7349.1. 불공정 상행위로 이발소 표시등의 오용20
 7350. 시설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21



7351. 적절한 시설의 제공 및 관리21
 7352. 손을 씻는 시설21
 7353.4. 직장 내 권리, 임금 및 근로시간법 공지.....21

제7조. 이동 설비차

7354. “이동 설비차” 22
 7355. 면허 신청..... 22
 7356. 소유권 이전 신청..... 22
 7357. 규정 준수, 필수 장비..... 23
 7358. 이동 설비차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책임..... 23
 7359. 면허 미취득자 고용..... 23
 7360. 이동 설비차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 23
 7361. 장의 규정 적용..... 23

제8조. 교육 시설, 강사 및 커리큘럼

7362. “위원회 승인 교육 시설” 24
 7362.1. 미용 교육 시설 승인 요건 25
 7362.2. 이발 교육 시설 승인 요건 25
 7362.3. 전기분해요법 교육 시설 승인 요건 25
 7362.5. 실습 및 기술 교육 시간..... 26
 7363. 헤어스타일리스트 과정, 실습 시간 27
 7364. 피부 관리 과정, 실습 시간..... 28
 7365. 네일케어 과정, 실습 시간29
 7366. 전기분해요법 과정, 실습 시간.....29
 7367. 학점 이전..... 30
 7368. 교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학생의 작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30
 7389. 위험 물질에 관한 보건 안전 과정 30
 7389.5. 연방 또는 주 당국이 주립 교정시설에 개설한 이발 과정 또는 미용 과정 30
 7395.1. 미용 교육 시설의 실무 수습생..... 30
 7395.2. 이발 교육 시설의 실무 수습생.....32

제9조. (보류)

제10조. 면허

7396. 면허증의 형식과 내용 34
 7396.5. 임시 규제 면허 34
 7397. 면허증 게시.....35

7398.	면허증의 재발급	35
7399.	임시 면허증	35
7400.	면허 갱신 시 필요한 정보	35
7401.	면허 갱신 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정보	35
7402.5.	개인 서비스 허가증	36

제11조. 징계 절차

7403.	면허 취소, 정지 또는 거절	37
7403.2.	면허의 일시 정지, 임시 기간, 면허 회복	38
7403.5.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 시설의 폐쇄	39
7404.	징계 조치의 사유	40
7404.1.	장의 규정 위반	42
7405.	‘유죄 판결’, 면허에 대한 영향	42

제12조. 과징금 및 소환장

7406.	위반 시 과징금 부과	42
7407.	과징금 요율표	42
7407.1.	동일한 위반에 대해 시설과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	42
7408.	소환장	43
7408.1.	분할 납부 방식	43
7409.	위반의 시정	43
7410.	징계 심사 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	44
7411.	징계 심사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44
7413.	이의신청 시기, 최종 결정	44
7414.	과징금 미납 시 영향	45

제12.5조. 태닝 시설

7414.1.	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에 의거하여 보존해야 할 점검 기록	45
7414.2.	1988년 피란테 태닝 시설법 위반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45
7414.3.	출석 통지서 발부 권한, 발부 책임	46



7414.4. 시설에 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
 준수 관련 정보 배포 46

7414.5. 조의 적용 범위 46

7414.6. 규정의 채택..... 46

제13조. 수입

7415. 면허 만료..... 46

7417. 만료된 면허 갱신 기간.....47

7418. 취소된 면허.....47

7419. 정지된 면허의 갱신47

7420. 취소된 면허의 만료47

7421. 수수료의 결정 48

7422. 회계 감사관에게 수수료 보고 48

7423. 수수료 48

7424. 이동 설비차 운영 관련 수수료 요율표49

7425. 이동 설비차 운영 관련 수수료 요율표49

7426.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49

7426.5. 처리 직무 기준 수수료 종별 분류,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환불 불가 50

7427. 면허 갱신 수수료 면제 50

제1.5부
캘리포니아주 사업 및 전문업법
제1.5부 1장

면허 거절, 정지 및 취소

제1장 일반 규정

475. 부의 규정 적용 50

476. 면제51

477. “위원회”, “면허”51

478. “신청서”, “자료”51

제2장. 면허의 거절

480. 거절 사유, 재할 증명서
 취득 시 효력52

480.5. 면허 교부 신청: 수감의 경우55

481. 범죄 및 직업 적합성 기준55

482. 재할 기준..... 56

484.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57

485. 면허 거절 시 절차57
 486. 결정 또는 통지의 내용.....57
 487. 심의회 - 시기.....58
 488. 심의회 요청.....58
 489. 심의회 없이 신청 거절.....58

제3장. 면허 정지 및 취소

490. 정지 또는 취소 사유59
 490.5.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 불이행 시
 면허 정지59
 491.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절차59
 492. 징계 조치 또는 면허 거절 시 약물 치료
 프로그램의 효력 또는 면허의 취소 60
 493. 비윤리적 범죄 유죄 판결 기록의
 증거 효력..... 60
 494. 임시 정지 또는 제한 명령61
 494.5. 면허 소지자가 확인된 명단에 포함된 경우 기관의 조치,
 정의, 징수 및 확인된 명단의 배포
 정보, 시기, 공지, 지원자의 과제 및
 면허소지자,공개 양식, 기관 간 계약, 수수료,
 구제수단, 문의 및 정보공개;
 분리 가능성..... 64
 494.6. 노동법 위반 - 면허 관련 징계의 근거71

제4장. 공개 견책1

495.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면허 또는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되는 행위에 대한
 공개적 견책, 법적 절차71

제5장 시험의 보안

496. 면허 거절, 정지 또는 취소 사유.....72
 498. 면허 관련 징계 조치의 사유가 되는 사기, 기만,또는
 허위 진술.....72
 499. 타인의 신청과 관련한 면허 소지자의 행위에 따른
 면허 관련 징계 조치72



이·미용 규정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16편 제9부

이·미용 위원회

제1조. **관리**

900.	“시설”	74
904.	집행	74
905.	소비자를 위한 정보성 통지문 게시	75

제2조. **시험 응시 자격**

909.	교육 증명서	75
910.	타주 신청자 또는 군복무 신청자	75

제3조. **견습**

913.	견습생 교육 프로그램 승인	76
913.1.	승인 취소: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	77
914.1.	견습 신청서 접수, 신청 자격	78
914.2.	견습 신청서 접수, 재등록	79
915.	관련 교육	79
916.	교육 시간 및 일정	80
917.	견습생 예비 교육	80
918.	견습생 교육 강사	80
919.	위원회에서 승인한 강사 및 시설	81
920.	견습생 교육의 기록	82
921.	이발사 견습 과정 커리큘럼	83
921.1.	미용 견습 과정 커리큘럼	85
921.2.	전기분해요법 견습 과정 커리큘럼	88
922.	전과/변경	90
923.	면허 반납	91
924.	견습생 교육 프로그램 수료	91
925.	강사의 책임에 대한 선언문	92
926.	견습 사전 교육 학점	92

제4조. 시험	
931.	통역사 93
932.	시험의 합격 점수 94
제5조. 이동 설비차	
937.	면허 교부 및 운영 94
제6조. 교육 시설	
940.	교육 시설의 장비 95
941.	교육 시설의 승인 96
950.5.	전기분해요법 과정 커리큘럼 97
950.10.	크레딧의 이전 99
950.12.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무 수행 105
961.	교육 자료 105
제8.5조. 실무 수습	
962.	정의 106
962.1.	미용 실무 수습 프로그램 참여 통지 107
962.2.	코팅된 교육 시설 학생증 108
제9조. 면허	
965.	면허증 게시 108
965.1.	이 장의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제품 시연 108
965.2	개인 서비스 허가증 109
제10조. 징계 절차	
969.	특정 직무의 위임 111
970.	상당한 관련성 기준 111
971.	재활 기준 112
972.	징계 기준 114



973. 즉각적인 정지 사유..... 114
 973.1. 즉각적인 정지 절차..... 115
 973.2. 즉각적인 정지 통지서의 내용 115
 973.3. 임시 규제 조건 116
 973.4. 교정 교육의 정의..... 116
 973.5. 교정 교육 과정의 승인..... 116
 973.6. 이의제기 절차..... 117

제11조. 과징금 및 소환장

974. 과징금 요율표 118
 974.1. 징계 심사 위원회..... 128
 974.2. 징계 심사 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 128
 974.3. 분할 납부 방식..... 130
 975. 심의회 불출석의 합당한 사유..... 130
 976. 소환, 무면허 활동 131

제12조. 보건 안전

977. 보건 안전 관련 용어 정의 131
 978. 최소 장비 및 용품 132
 979.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 소독..... 133
 980. 전기 기구의 소독..... 134
 980.1. 월풀 풋스파 및 에어제트 족욕기의
 세척 및 소독 절차 134
 980.2. 파이프리스 풋스파 세척 및 소독 절차..... 136
 980.3. 월풀 기능이 없는 족욕기 또는 족탕기의
 세척 및 소독 절차 138
 980.4. 족탕기 또는 족욕기에 사용하는 일회용 라이너 138
 981. 기구 및 용품 139
 982. 전기분해요법 기구 살균 139
 983. 개인 청결..... 140
 984. 질병 및 감염 140
 985. 넥 스트립..... 141
 986. 넥더스터 및 브러시..... 141
 987. 타올..... 142
 988. 액체 용품, 크림, 파우더 및 화장품 142



989. 금지된 위험 물질/제품 사용143
990. 머리 받침대, 샴푸 트레이, 샴푸대 및 시술대.....143
991. 침습적 시술.....143
992. 피부 각질 제거144
993. 금지된 도구.....144
994. 청결 및 유지보수.....144
995. 건물 표준.....145
998. 수수료 요율표145

제13조. 수입

999. 부도 수표 수수료.....146

이·미용법

50



캘리포니아주 사업 및 전문업법
제3부 10장

및

캘리포니아주 사업 및 전문업법
제1.5부 1장

2025년 1월까지 개정 사항 포함





제10장. 이·미용 규정

제1조. 관리

7301. 법조항의 인용

본 장은 헤어, 피부, 네일 관리 및 전기분해요법 관련 장으로 구성되며, 이·미용법으로 인식되거나 인용될 수 있다.

7302. 정의

본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 (a) ‘부서’는 소비자 보호국(DCA)를 의미한다.
- (b) ‘국장’은 소비자 보호국 국장을 의미한다.
- (c) ‘위원회’ 또는 ‘사무국’은 캘리포니아주 이·미용 위원회를 의미한다.
- (d) ‘행정관’은 캘리포니아주 이·미용 위원회의 행정관을 의미한다.

7303. 캘리포니아주 이·미용 위원회, 행정관

(a) 정부법 제2편 2부 1편 1.5장 제8조(9148절로 시작)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국에는 본 장의 행정권이 귀속되는 주 이·미용 위원회가 있다.

(b) (1)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된다. 7명은 공익위원, 6명은 전문성을 대표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2) 주지사는 공익위원 5명과 전문위원 6명을 임명한다. 6명의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미용전문가(cosmetologist).
- (B) 이발사(barber).
- (C) 피부미용사(esthetician).
- (D) 전기분해요법 기술사(electrologist).
- (E) 매니큐어사(manicurist).
- (F) 시설 소유자.

(3) 상원 규칙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1명의 공익위원을 임명한다.

(4)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을 제외하고 4년으로 하되, 공익위원 2명 및 전문위원 2명은 초임 2년으로 임명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2회 연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5) 103절에 따라 위원회의 각 구성원에게 일당이 지급된다.

(c) 위원회는 대민 업무가 면제되는 행정관을 임명할 수 있다. 행정관은 위원회에서 위임하고 이 장에서 행정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행정관 임명은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인가된 위원회가 기존 또는 이전 사무국을 대체하는 경우, 새 위원회에서 상임 행정관을 임명할 때까지 임시로 근무할 위원회의 임시 행정관을 국장이 임명할 수 있다.

(d) 행정관은 심사원, 조사원 및 본 장의 규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인력을 제공한다.

(e) 본 절은 2027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해당 날짜부터 폐지된다.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절을 폐지할 경우 주의회의 적절한 정책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7303.1. 위원회의 최우선 사항, 공익 보호

이·미용 위원회는 면허 교부, 규제 및 징계 직무를 수행할 때 공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 보호가 추진하려는 다른 이익과 모순되는 경우, 공익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7305. 연례 간부 선출

위원회는 매년 구성원 중 간부를 선출하며, 각 구성원의 임기는 1년이다. 간부는 특정 직위에서 2회 연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7309. 본부 및 지소

위원회는 본부 사무소를 설립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내에 지소 및 실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7311. 인장

위원회는 위원회 기록의 진위를 명시하기 위해 공인 인장(common seal)을 채택하고 사용해야 한다.

7312.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a) 위원회는 다음 항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1)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본 장을 보충 또는 이행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한다.



- (2) 면허 신청자의 시험을 실시하고 관장한다.
- (3) 그에 따라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게 면허를 교부한다.

(4) 본 장의 규정이나 본 장에 의거하여 적용된 규정 위반자로 판명된 경우 해당 위반자를 징계한다.

(5)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시설, 교육기관에서 및 본 장에 규정된 모든 직종 종사자의 업무 수행 시 공중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위생 조건과 예방 조치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해당 규칙은 정부법 제2편 3.5장 (11340절로 시작)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모든 규칙의 사본은 각 면허 소지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6) 면허 소지자 및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로 제작하여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b) 본 항의 개정은 해당 부분을 추가한 법률 조항에 따라 2017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7313. 시설, 이동 설비차, 교육 기관에 대한 출입 및 점검, 위반 사항의 통지

(a)(1) 본 장의 법률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159.5절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 시간이나 이발, 미용, 전기분해요법이 수행되는 시간에 위원회 행정관과 공식 담당관이 시설 또는 이동 설비차에 출입하여 점검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단체 협약과 공무 수행 규정에서 허용될 경우, 주중뿐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주의회의 취지이다.

(2) 위원회는 공중 보건 및 안전과 시설의 행위와 운영에 관한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무작위 표적 점검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공식 담당관은 시설 점검을 통해 규정 준수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표적 집행이 필요한 시장 상황을 파악한다.

(b)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건 및 안전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159.5절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발, 미용, 전기분해요법이 수행되는 모든 교육 기관과 그 건물에 출입권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고객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이 위반된 경우 해당 위반 사항을 교육 시설에 통지해야 한다. 각 통지서에는 위반 조항과 위반 사항 시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위반 통지서 사본은 사립 고등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에 제출되어야 한다.



(c)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또는 행정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위원 자격으로 영업 시간 또는 이발 또는 미용, 전기분해요법이 수행되는 시간에 언제든지 모든 시설에 출입하고 방문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원의 방문은 위원회 공식 업무 수행이 목적이어야 하며 위원회의 면허 관련 징계 조치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d) 위원회는 조사관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직원을 이해하거나 이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시설 점검 프로토콜을 도입해야 한다. 위원회는 2년마다 해당 프로토콜을 점검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7314. 기록 보관

(a) 위원회는 공개 회의,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절차를 기록하고 면허 교부, 거절, 갱신, 정지 및 취소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b) 위원회는 이름, 주소, 면허 번호 및 발급 일자가 기재된 각 면허 소지자의 등록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신청자가 면허 시험 신청서에 기재했을 수 있는 모든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면허 신청서와 이장에 의거하여 발급된 면허의 갱신용 전자 신청서에 포함된 선택 질문 항목을 통해 각 신청자가 선호하는 구두 및 서면 언어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c) 본 항의 개정은 해당 부분을 추가한 법률 조항에 따라 2017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7314.3. 보건안전 자문위원회

(a)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기본 노동법을 이해하고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성적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자문과 권고를 면허 소지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회보다 먼저 제공하는 보건안전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b) 본 조항의 목적상 기본 노동법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1) 직원과 독립 계약자의 법적 권리, 복리후생 및 의무의 주요 차이.
- (2) 시급을 받는 직원의 임금 및 시급에 대한 권리.



- (3) 직장 내 특정 언어 사용과 관련된 차별금지법.
- (4) 노동관계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및 이와 관련된 보복금지법.
- (5) 주 및 연방 노동법에 관한 정보 수집 방법.
- (c) 본 조항의 목적상 신체적 및 성적 학대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1) 가정폭력.
 - (2) 성폭행.
 - (3) 인신매매.
 - (4) 노인 학대.
- (d) 103절에 따라 위원회의 각 구성원에게 일당이 지급된다.

7314.5. 신체적,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 (a) 위원회는 신체적,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편,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신문, 책,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통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b) 본 조항의 목적상 신체적 및 성적 학대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1) 가정폭력.
 - (2) 성폭행.
 - (3) 인신매매.
 - (4) 노인 학대.

7315. 과반수의 권한 행사

위원회의 과반수는 베글리킨 공개 회의법(Bagley-Keene Open Meeting Act)에 따라 적절히 통지된 모든 회의에서 위원회가 위임한 모든 의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조
장의 적용**

7316. 이발 행위, 미용 행위

- (a) 이발 행위는 다음 행위 전체 또는 그 조합이다.
 - (1) 면도, 턱수염 손질, 모발 커트.
 - (2) 손이나 기계 장치로 오일, 크림, 로션 또는 기타 재료를 바른 후 얼굴과 두피 마사지 또는 트리트먼트 제공.
 - (3) шин, 샴푸, 머리 정리, 헤어드레싱, 컬링, 웨이브 처리, 파마, 매직 스트레이트, 염색, 헤어 토닉 도포.



(4) 화장품, 소독제, 파우더, 오일, 머드 또는 로션을 두피, 얼굴 또는 목에 바르기.

(5) 헤어스타일링 당시 유행하는 일바적인 방식으로 모발의 질감을 처리하는 헤어스타일링.

(b) 미용 행위는 다음 행위 전체 또는 그 조합이다.

(1) 머리 정리, 헤어 드레싱, 컬 및 웨이브 처리,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파마, 파마, 클렌징, 커트, 샴푸, 매직 스트레이트, 신징, 탈색, 틴팅, 염색, 스트레이트, 염색, 헤어 토닉 도포, 뷰티파잉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의 모발을 손질하는 기타 행위.

(2) 화장품, 소독제, 토닉, 로션 또는 크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손, 기기, 장치 등으로 두피, 얼굴, 목, 팔 또는 인체의 상부를 마사지, 클렌징 또는 자극하는 행위.

(3) 화장품, 소독제, 토닉, 로션 또는 크림을 사용하여 얼굴, 목, 팔 또는 인체의 상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행위.

(4) 제모제, 핀셋, 화학약품, 조제약품 또는 모든 종류, 등급의 기기나 장치를 사용(일반적으로 레이저라 부르는 광파 사용은 제외)하여 인체의 체모를 제거하는 행위.

(5) 사람의 손발톱 자르기, 다듬기, 광택 내기, 틴팅, 컬러링, 세척 또는 매니큐어.

(6) 사람의 손발 마사지, 클렌징, 트리트먼트, 미용 시술.

(7) 속눈썹과 눈썹의 틴팅 및 파마 또는 사람에게 속눈썹을 붙이는 행위.

(c) 피부 관리 행위는 다음 행위 전체 또는 그 조합이다.

(1) 피부의 외관이나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손, 에스테틱 기기, 화장품, 소독제, 로션, 토닉 또는 크림을 사용하여 얼굴, 두피, 목, 손, 팔, 발, 다리 또는 인체의 상부에 페이스, 마사지, 자극, 각질 제거, 클렌징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단, 살아 있는 조직을 제거하거나 박피하는 행위는 제외).

(2) 속눈썹과 눈썹의 틴팅 및 파마 또는 사람에게 속눈썹을 붙이는 행위.

(3) 제모제, 핀셋, 슈가 왁스 제모제, 비처방 화학약품 또는 왁스 제모제를 사용하거나 모든 종류, 등급의 기기나 장치를 사용(일반적으로 레이저라 부르는 광파 사용은 제외)하여 인체의 체모를 제거하는 행위.



(d) 네일케어는 사람의 손발톱 다듬기, 광택 내기, 틴팅, 컬러링, 클렌징, 매니큐어, 페디큐어 또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이나 무릎에서 발끝까지 마사지, 클렌징 또는 미용 시술을 시행하는 행위 전체 또는 그 조합이다.

(e) 다음 행위는 이·미용 행위 및 헤어스타일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가발 또는 헤어피스의 단순한 판매, 맞춤 피팅 또는 스타일링.

(2) 자연모 브레이딩. 자연모 브레이딩은 모발 꼬기, 감싸기, 엮기, 헤어연장, 머리 땀기 등으로, 손이나 기계 장치를 사용해 모발이나 모근을 팽팽하게 하는 서비스로, 모발 커트 또는 염색약, 반응성 화학약품, 기타 조제약품의 사용 또는 염색, 스트레이트, 컬링, 모발 조성을 바꾸는 행위는 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실면도. 실면도는 불필요한 체모에 대고 꼬아진 실을 당겨 체모를 제거하고, 그에 부수적으로 눈썹을 다듬는 기법이다.

(f) (e) 항의 (2) 목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이·미용 행위로 정의된 서비스나 시술과 함께 자연모 브레이딩 서비스 규정에 정의된 자연모 헤어스타일링을 수행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며,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각 서비스에 따라 적합한 이발 또는 미용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g) (1) 전기분해요법은 전기침만을 사용하여 인체의 체모를 뽑거나 제거하는 행위이다.

(2) 이 장에 언급된 ‘전기분해요법’은 전기분해 또는 열분해를 통칭한다.

(h) 헤어스타일링은 다음 행위 전체 중 하나 또는 두 개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1) 헤어스타일링 당시 유행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모발의 질감을 처리하는 스타일링.

(2) 전기 장치 및 비전기 장치를 모두 사용하여 사람의 모발 손질, 헤어드라이, 클렌징, 컬링, 커트, 헤어드레싱, 모발 연장, 샴푸, 웨이브 처리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스트레이트 시술.

7317. 무면허로 보수를 받고 이발, 미용 또는 전기분해요법을 수행하는 경우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또는 회사나 법인이 위원회에서 발급하여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면허 없이(단, 인가 교육 시설에서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제외) 또는 위원회에서 면허를 발급한 장소 외의 시설이나 이동 설비차에서 보수를 받고 이발, 미용, 전기분해요법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이 장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발, 미용 또는 전기분해요법을 수행하는 시설이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장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가 유효한 지역에서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당 행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절의 위반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경범죄에 해당한다.



7318. 예외적으로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인가된 시설 외부에서 이·미용 행위 수행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필요한 경우 인가된 시설의 목적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이·미용 행위를 수행한다면, 본 장에 규정된 이·미용 행위를 인가된 시설 외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7319. 본 장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다음 사람은 본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a)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근거하여 의료, 수술, 치과 시술, 약학, 접골, 척추 지압, 자연 요법, 족질환 치료 또는 간호를 수행하고 면허가 발급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도록 승인을 받은 모든 사람.

(b) 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 미국 공중보건국의 직원 및 공식 임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중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직원.

(c)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영화 제작 산업 분야 고용주의 사업상 또는 해당 사업의 부수적 필요에 의하여 이발, 미용 또는 전기분해요법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고용된 사람.

(d) 보수를 받지 않고 인가된 시설의 외부에서 이·미용 행위의 범위 내에서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

(e) 모발, 피부 또는 네일 제품을 추천하거나 시연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만 해당 제품을 다루는 사람.

(f) 수형자, 수감자 또는 범죄로 기소된 자를 감금하거나 구속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기관 프로그램에 따라 이발 또는 미용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 단, 다음 조건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1) 교정국에서 개발하여 소비자 보호국에서 승인한 이발 교육 과정을 통해 기구의 적절한 관리 및 전염병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기구의 적절한 관리 및 전염병 예방 관련한 교정국에서 개발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3) 교정시설에 설치된 모든 이발 시설은 교정국에서 정한 적절한 보건 안전 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7319.5. 학생의 적용 면제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재학 중인 인가된 교육 시설 내에서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본 장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7319.7. 신체적, 성적 학대 관련 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요건

(a) 면허 소지자나 신청자가 7389절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보건 안전 과정에 포함된 신체적, 성적 학대 인식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본인 및 그 고용주는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 중 알게 된 잠재적 신체 학대 또는 성적 학대의 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b) 본 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7320. 의료 시술 또는 수술 승인

(a) 본 장은 의료 시술 또는 수술을 승인하지 않는다. 본 장에 명시된 면허 소지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취득한 면허에 의하여 해당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승인 없이 의료 행위를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b)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제2부의 10.5장(4600절로 시작)에 따라 인증된 사람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7320.1.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시술 시 금속 기구 사용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시술 시 손발톱, 큐티클을 자르고, 다듬고,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를 바르거나 손발을 부드럽게 하고 마사지하는 데 필요한 금속 기구를 제외한 금속 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7320.2. 엑스레이 장비의 불법적 사용

면허 소지자가 사람의 치료 또는 얼굴이나 몸의 체모를 제거할 목적이거나 의도로 엑스레이 장비, 기구, 기계를 사용하거나 10% 이상의 페놀 용액, 부식성 승화물(수은), 또는 해당 재료를 이용한 조제물, 파생물 또는 1/500 이상으로 희석한 화합물을 인체에 바르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7320.3. 미용전문가 사칭

미용전문가의 모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미용전문가(cosmetologist)라 칭할 수 없다.

7320.4. 이발사 사칭

캘리포니아주의 이발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이발사(barber)라 칭할 수 없다.

7320.5. 레이저 치료 경범죄

면허 소지자가 사람의 치료에 레이저를 사용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제3조 시험 자격

7321. 미용 시험 응시 자격

위원회는 적절한 형식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며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네일케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매니큐어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a) 17세 이상.
- (b)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 (c) 480절의 거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d)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한 경우.
 - (1) 위원회 인가 교육 시설의 미용 과정 이수.
 - (2) 위원회에서 채택한 요건에 따라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 시설에서 미용 과정을 이수한 유자격자의 교육과 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외의 지역에서 본 장에 정의된 미용 행위를 수행. 수행한 때 3개월은 각각 이 항의 (1) 목에 규정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100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캘리포니아주의 이발사 면허 소지자로,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교육 시설에서 미용 교차과정 이수.
 - (4)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교육 시설에서 이발사 과정을 이수하고,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교육 시설에서 미용 교차과정도 이수.
 - (5) 제4조(7332절로 시작)에 명시된 전기분해요법 견습 프로그램 이수.



7321.5. 이발사 시험 응시 자격

위원회는 적절한 형식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며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이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이발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a) 17세 이상.
- (b)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 (c) 480절의 거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d)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한 경우.

(1) 위원회 인가 교육 시설의 이발사 과정 이수.

(2) 노동법 제3부 4장(3070절로 시작) 1939년 Shelley-Maloney 견습생 노동 기준법(Apprentice Labor Standards Act of 1939)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승인한 이발사 견습 프로그램 이수.

(3) 위원회에서 채택한 요건에 따라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 시설에서 이발 과정을 이수한 유자격자의 교육과 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외의 지역에서 본 장에 정의된 이발 행위를 수행. 수행한 때 3개월은 각각 (1) 목에 규정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100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캘리포니아주의 미용전문가 면허 소지자로,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교육 시설에서 이발 교차과정 이수.

(5)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교육 시설에서 미용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교육 시설에서 이발 교차과정도 이수.

군 경력 인증서(V-MET) 기록을 제출하여 입증되는 동등한 군사 훈련 이수.

7322. 헤어스타일리스트 시험 응시 자격

위원회는 적절한 형식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며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헤어스타일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헤어스타일리스트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a) 17세 이상.
- (b)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 (c) 480절의 거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d)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한 경우.

(1) 위원회 인가 교육 시설의 헤어스타일링 과정 이수.



(2) 위원회에서 채택한 요건에 따라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 시설에서 헤어스타일링 과정을 이수한 유자격자의 교육과 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외의 지역에서 본 장에 정의된 헤어스타일링 행위를 수행. 수행한 때 3개월은 각각 (1) 목에 규정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100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324. 피부미용사 시험 응시 자격

위원회는 적절한 형식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며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피부 관리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피부미용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a) 17세 이상.
- (b)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 (c) 480절의 거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d)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한 경우.

위원회 인가 교육 시설의 피부 관리 과정 이수.

위원회에서 채택한 요건에 따라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 시설에서 피부 관리 과정을 이수한 유자격자의 교육과 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외의 지역에서 본 장에 정의된 피부 관리 행위를 수행. 수행한 때 3개월은 각각 (1) 목에 규정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100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제4조(7332절로 시작)에 명시된 피부 관리 견습 프로그램 이수

7326. 매니큐어사 시험 응시 자격

위원회는 적절한 형식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며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네일케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매니큐어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a) 17세 이상.
- (b)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 (c) 480절의 거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d)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한 경우.

- (1) 위원회 인가 교육 시설의 네일케어 과정 이수.



위원회에서 채택한 요건에 따라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 시설에서 네일케어 과정을 이수한 유자격자의 교육과 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외의 지역에서 본 장에 정의된 네일케어 행위를 수행. 수행한 때 3개월은 각각 (1) 목에 규정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100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7332절로 시작)에 명시된 네일케어 견습 프로그램 이수.

7330.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시험 응시 자격

위원회는 적절한 형식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며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전기분해요법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a) 17세 이상.

(b)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2학년 또는 공인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c) 480절의 거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d)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한 경우.

(1) 위원회 인가 교육 시설의 전기분해요법 교육 과정 이수.

(2) 위원회에서 채택한 요건에 따라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 시설에서 전기분해요법 과정을 이수한 유자격자의 교육과 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내에서, 캘리포니아주 외의 지역에서 18개월 동안 본 장에 정의된 전기분해요법 행위를 수행. 수행한 때 3개월은 각각 (1) 목에 규정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100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4조(7332절로 시작)에 명시된 전기분해요법 견습 프로그램 이수.

7331. 타주 신청자의 면허 인정

위원회는 신청자가 다음의 모든 항목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면허를 교부해야 한다.

(a) 작성 완료한 신청서 및 위원회에서 규정한 일체의 수수료.

(b)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타주에서 발급된 현재 면허 증빙 서류.

(1) 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다른 제항 사항이 없다.

(2) 면허에 하자가 없다.



제4조 견습

7332. “견습”

(a) 견습생은 위원회가 승인한 면허 소지자의 감독하에 인가된 시설에서 이발, 미용, 피부 관리, 네일케어 또는 전기분해요법을 배우거나 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b) 본 조항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의 감독하에’라는 문구는 해당 견습생이 인가된 시설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안 항상 위원회가 승인한 면허 소지자의 감독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견습생은 단독으로 시설에서 일할 수 없다. 견습생을 감독하도록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면허 소지자의 감독 없이 근무하는 견습생은 본 장에 의거하여 무면허 행위자로 간주된다.

7333. 견습생 교육 프로그램 시행

견습생 교육 프로그램은 노동법 제3부 4장(3070절로 시작) 1939년 Shelley-Maloney 견습생 노동 기준법에 의거하여 견습 프로그램 관리자가 승인한 견습 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법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7334. 이발, 미용, 피부 관리, 네일케어 또는 전기분해요법 견습생 면허를 취득한 사람

(a) 위원회는 적절한 형식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며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이발, 미용, 피부 관리 또는 네일케어 견습생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1) 16세 이상.

(2)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3) 480절의 거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4) 법률로 규정된 견습생 필수 이수 교육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허 소지자의 감독하에 인가된 시설에서 시행된다는 적절한 증빙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b) 위원회는 적절한 형식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며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전기분해요법의 견습생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1) 17세 이상.

(2)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2학년 또는 공인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3) 480절의 거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4) 법률로 규정된 견습생 필수 이수 교육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허 소지자의 감독하에 인가된 시설에서 시행된다는 적절한 증빙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c) 이발 견습생으로 지원한 모든 사람은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위원회가 승인한 시설에서 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예비 견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d) 미용, 피부 관리, 네일케어 또는 전기분해요법의 견습생으로 지원한 모든 사람은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위원회가 승인한 시설에서 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예비 견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 견습생은 일반 대중에게 기술 교육을 받은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f) 노동법 3074절 및 307 8절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기관의 과정 수강 시, 견습생은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각 과목의 최소 기술 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최소 실습 횟수를 충족해야 한다.

7335. 견습생 면허의 만료

(a) 견습생 면허는 면허 발급일로부터 2년 후 또는 견습생이 면허 시험에 응시한 후 면허를 발급받은 날 또는 견습생이 면허 시험에 두 번 불합격한 경우 두 번째 시험 결과가 발표된 날 중 가장 이른 날짜에 만료된다.

(b) 견습생 면허 소지자가 면허 시험을 신청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필수 교육을 이수 후 3개월 이상 일할 수 없다.

(c) 위원회는 견습생이 질병, 사고 또는 미국 군대 복무로 인한 시험 신청 및 응시 지연 사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a) 및 (b) 항에 명시된 2년 또는 3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336. 견습생 실습 가능 조건

견습생은 인가된 시설에서만 그리고 위원회가 승인한 면허 소지자의 감독 및 고용하에서만 견습생 면허에 해당하는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시험

7337. 공식 지원 요건, 수수료

(a) 모든 시험 및 면허 교부 신청서는 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제공한 양식을 사용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b) 각 신청서에는 규정된 수수료가 있으며, 시험 및 면허 교부를 위한 신청자의 자격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자의 서약으로 그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허 소지자의 권리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를 확인하는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면허 신청 시, 7314.3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본적인 노동법 관련 정보 자료를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모든 신청자는 시험장에 입장하기 위해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적절한 신분증은 유효하고 아직 만료되지 않은 운전 면허증 또는 주정부, 연방 정부, 기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c) 면허 갱신을 위한 전자 신청서는 면허 소지자의 권리에 대한 갱신 신청자의 이해를 확인하는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면허 갱신 신청 시, 7314.3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본적인 노동법 관련 정보 자료를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d) 본 항의 개정은 해당 부분을 추가한 법률 조항에 따라 2017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7338. 시험 내용

(a) 면허 신청자의 시험은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을 평가하는 필기 시험으로 구성된다.

(b) 시험에는 면허를 취득하려는 직종의 실무와 관련한 신청자의 기술 및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필기 시험 및 신청자가 면허 교부를 신청한 직종의 실무에서 사용되는 살균, 소독, 기계 장치 및 전기 사용에 대한 필기 시험이 포함된다.

(c) (b)항에 명시된 필기 시험은 신청자가 면허를 신청한 실무에 적용되는 대로 다양한 유형과 질감의 모발의 개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기술과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 판별해야 한다.

7340. 시험 준비, 시행 및 채점

모든 시험은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시험의 시행 및 채점과 관련한 표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7341. 시험 불합격 시 총점의 우편 통지

위원회는 본 장에 규정된 시험에 불합격한 모든 사람에게 시험 총점을 통지해야 한다.

7342. 면허의 교부

위원회는 시험에 합격한 신청자, 법에서 요구하는 다른 자격증 소지자, 이 장에서 규정된 면허 수수료를 송금한 신청자에게 해당 직업 행위를 승인하는 면허증을 교부해야 한다. 면허는 소지자가 인가된 시설에서 해당 직업 행위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한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시험에 합격한 당일에 면허를 교부해야 한다.

7344. 시험 시설의 계약

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합당한 건물과 시설을 계약하거나 예약할 수 있다.

7345. 시험 불참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신청인이 신청서 접수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지 않거나,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춘 후 1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수료는 환불 불가하다. 신청을 포기한 후 제출된 신청서는 새로운 신청서로 취급되며, 최초 면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6조
시설**

7346. “시설”

(a) 본 장의 목적상 ‘시설’은 본 장에서 인가된 활동을 수행하는 구내, 건물 또는 그 건물의 일부를 의미한다.

(b) 또한 ‘시설’에는 보수를 받고 자연모 헤어스타일링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내, 건물 또는 그 건물의 일부가 포함된다.

7347. 시설 운영을 위한 면허 신청

(a) 시설을 운영하려는 모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위원회에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새로운 시설을 운영하거나 기존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모두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적용 가능한 모든 주 노동법의 준수에 관한 시설의 책임과 기본적인 노동법에 관한 정보 자료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를 확인하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면허 신청 시, 7314.3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본적인 노동법 관련 정보 자료를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면허 갱신을 위한 전자 신청서에는 적용 가능한 모든 주 노동법의 준수에 관한 시설의 책임과 기본적인 노동법에 관한 정보 자료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를 확인하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면허 갱신 신청 시, 7314.3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본적인 노동법 관련 정보 자료를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신청자가 기존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보다 낮은 금액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신청자, 신청자가 개인이 아닐 경우, 각 임원, 이사, 파트너는 480절에 의거하여, 새로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면허 교부 거절의 사유가 되는 행위 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본 절에 따라 교부된 면허로 면허가 교부된 장소의 시설만 운영할 수 있다. 이전 면허 교부와 동일하게 본 절의 규정을 준수하여 다른 장소의 시설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장소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b) 본 항의 개정은 해당 부분을 추가한 법률 조항에 따라 2017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7348. 시설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책임

견습생을 제외하고, 시설은 항상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

7349. 면허 미취득자 고용

모든 개인, 회사, 법인이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시설에서 이 절에 규정된 직업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허락하거나, 근무를 허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단, 인가된 시설에서 7395.1절 또는 7395.2절의 규정에 따라 실무 수습생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절을 위반할 경우 7406절에 따라 소환장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7349.1. 불공정 상행위로 이발소 표시등의 오용

본 장에 규정된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 회사 또는 법인이 면허를 소지한 이발사가 고용되지 않은 시설에서 이발 행위가 시행되거나, 면허를 소지한 이발사가 고용되었다고 대중이 믿도록 오도하기 위한 의도로 이발소 표시등이라 알려진, 상단에 구 모양이 더해진 긴 줄무늬 원통형의 전통적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한 상행위이다.



7350. 시설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

소유자나 직원을 불문하고 시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본 장에 규정된 직업 활동을 영위하거나 직업 행위를 실행하는 모든 공간 또는 그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비위생적이고, 건강에 유해하고, 안전하지 않게 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가 되는 기타 목적으로 해당 공간이 사용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시설에는 개인 숙소에 연결된 출입구와 별도로 분리된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본 절의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7351. 적절한 시설의 제공 및 관리

모든 시설은 구내에 혹은 가까운 곳에 고객용 공용화장실을 한 곳 이상 갖추어야 한다. 1992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모든 화장실은 면적이 18ft²(1.67m²) 이상이어야 한다. 화장실 출입구는 화장실 칸막이가 작업실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져야 한다. 화장실은 청결하고 보수 상태, 조명 상태, 외부로 환기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벌레나 쥐가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적절히 차단되어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 시멘트 타일, 도화 벽돌 또는 기타 비흡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모든 하수구는 승인된 처리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하며 적절한 배수 방취 트랩이 설치되어야 한다. 화장실은 창고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352. 손을 씻는 시설

모든 시설은 수돗물, 비누, 수건 또는 손건조기 등 손을 씻기에 적절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353.4. 직장 내 권리, 임금 및 근로시간법 공지

(a) 2017년 7월 1일부로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시설은 노동법 98.10절에 의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정한 공지문을 게시할 때 노동법 98.10절의 규정 준수를 위해, 직원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그와 유사한 공지문을 게시하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공지문은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로 게시되어야 한다.



(b) 위원회는 7313절에 따라 점검을 시행할 때 공지문 게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c) 본 절의 위반은 7407절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7404.1절에 해당하는 경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제7조 이동 설비차

7354. “이동 설비차”

이 조의 목적상, “이동 설비차”는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직업 행위를 수행하는 시설로, 면허를 취득하고 이 조항과 위원회에서 정한 모든 조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자급자족, 자립, 폐쇄형 이동 설비차를 말한다.

7355. 면허 신청

(a) 이동 설비차를 운영하려는 모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b) 목에 규정된 데이터와 정보를 기재한 면허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신청자, 신청자가 개인이 아닐 경우, 각 임원, 이사, 파트너는 480절에 의거하여, 면허 교부 거절의 사유가 되는 행위 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야 한다.

(b) 각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 설비차의 설계, 치수 및 그에 포함된 모든 필수 시스템과 장비가 상세히 표시된 평면도.

(2) 이동 설비차의 구매 또는 임대 증빙 서류.

(3) 규정된 수수료.

(4) 이동 설비차를 운전하는 임직원에게 발급된 유효한 캘리포니아주 운전 면허증 증빙 서류.

(5) 이동 설비차를 운영할 영구적인 기본 주소.

(c) 평면도 및 신청서의 최초 승인 후, 신청자는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담당관에게 이동 설비차를 보여줄 일정을 정해야 한다.

7356. 소유권 이전 신청

기준에 면허를 부여받은 이동 설비차의 소유권 이전 신청서는 구매 후 10일 이내에 구매인 또는 임대인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각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이동 설비차의 설계, 치수 및 그에 포함된 모든 필수 시스템과 장비가 상세히 표시된 평면도.

(b) 기존 장비 및 이동 설비차의 구매 또는 임대를 증명하는 매도 또는 임대 관련 서류.



- (c) 기존 이동 설비차 면허.
- (d) 규정된 수수료.
- (e) 이동 설비차를 운전하는 임직원에게 발급된 유효한 캘리포니아주 운전 면허증 증빙 서류.

7357. 규정 준수, 필수 장비

- (a) 이동 설비차는 이동 설비차의 청결과 적절한 보수 상태, 본 조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b) 각 이동 설비차에는 다음 각 기능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샴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음용 가능한 자급식 상수도.
 - (2) 필요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온수 탱크의 용량은 6갤런(22.71L) 이상이어야 한다.
 - (3) 적절한 환기 시스템.

7358. 이동 설비차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책임

견습생을 제외하고, 이동 설비차는 항상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

7359. 면허 미취득자 고용

모든 개인, 회사, 법인이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동 설비차에서 이 절에 규정된 직업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허락하거나, 근무를 허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본 절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7360. 이동 설비차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

소유자나 직원을 불문하고 이동 설비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본 장에 규정된 직업 활동을 영위하거나 직업 행위를 실행하는 모든 공간 또는 그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비위생적이고, 건강에 유해하고, 안전하지 않게 되거나 이동 설비차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가 되는 기타 목적으로 해당 공간이 사용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면허가 교부된 지역 외부에서 본 장에 규정된 직업 행위 외의 목적으로 이동 설비차를 사용할 경우 이 절은 적용되지 않는다.

7361. 장의 규정 적용

이 장에 따른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은 제6조(7346절로 시작)를 제외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동 설비차에 적용된다.



제8조 교육 시설, 강사 및 커리큘럼

7362. “위원회 승인 교육 시설”

(a) 위원회 승인 교육 시설은 우선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립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국의 인가를 받은 교육 시설 또는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이며, 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하지만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와 사립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국은 교육 시설의 승인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b)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교육 시설의 소유주나 직원이 (1)~(8) 목 전체에 명시된 행위에 연루되었을 경우, 주정부 법전 제2편 3부 1편 5장(11500절로 시작)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절차의 진행 중에 교육 시설에 대한 승인을 취소, 중지 또는 거절할 수 있다.

(1)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이발, 미용, 전기분해요법 시술 행위의 보편적인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반복적 실수 및 고객의 건강 및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를 포함한 무능력이나 중과실.

(B) 유사한 종류의 업무 태만 행위 반복.

(C) 승인받은 교육 시설 소유주의 자격 기준, 역할 및 의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이러한 경우 유죄 판결 기록 또는 공증 사본은 유죄 판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다.

(2)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시설의 규제를 위해 위원회가 채택하고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에서 승인한 보건 안전 규정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시설의 규제를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감염성 또는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계속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5) 알코올 중독 및 규제 약물의 습관적, 중독적 사용.

(6) 면허가 요구되며 이 장에서 규제된 직업 행위를 사칭하여 보수나 어떤 형식으로든 대가를 받고 수행하거나 시도한 경우.

(7) 이 장에서 승인된 점검을 허용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8) 교육 기관 승인에 대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는 모든 행위 또는 활동.



7362.1. 미용 교육 시설 승인 요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미용 교육 시설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a) 미용학 과정 학생 25명 또는 해당 과정에 등록된 학생 수 중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종합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공간을 보유한다
- (b) 해당 미용 교육 시설 학적부에 등록된 미용 과정 정규 학생은 25명 이상이어야 한다. 본 절의 목적상 정규 학생은 해당 미용 교육 시설 학적부에 등록되었으며, 미용학 전과정을 수강하기로 한 학생을 말한다.
- (c) 본 장 및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미용학 전과정에 대한 실습 및 기술 교육 과정을 유지한다. 모든 미용학 분야의 교육 과정은 미용 교육 시설에서 가르쳐야 한다.

7362.2. 이발 교육 시설 승인 요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발 교육 시설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a) 이발 교육 과정 학생 15명 또는 해당 과정에 등록된 학생 수 중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종합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공간을 보유한다.
- (b) 해당 이발 교육 시설 학적부에 등록된 이발 과정 정규 학생은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본 절의 목적상 정규 학생은 해당 이발 교육 시설 학적부에 등록되었으며, 이발 교육 전과정을 수강하기로 한 학생을 말한다.
- (c) 본 장 및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이발 교육 전과정에 대한 실습 및 기술 교육 과정을 유지한다.

7362.3. 전기분해요법 교육 시설 승인 요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전기분해요법 교육 시설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a) 전기분해요법 교육 과정 학생 5명 또는 해당 과정에 등록된 학생 수 중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종합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공간을 보유한다.
- (b) 해당 전기분해요법 교육 시설 학적부에 등록된 전기분해요법 과정 정규 학생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본 절의 목적상 정규 학생은 해당 전기분해요법 교육 시설 학적부에 등록되었으며, 전기분해요법 교육 전과정을 수강하기로 한 학생을 말한다.
- (c) 본 장 및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전기분해요법 교육 전과정에 대한 실습 및 기술 교육 과정을 유지한다.



7362.5. 실습 및 기술 교육 시간

(a) 교육 시설에서 개설한 이발 또는 미용 과정의 경우 7316절에 정의된 이발 및 미용 실습과 기술 교육 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b) 이발 과정의 커리큘럼에는 적어도 다음 분야의 기술 교육 및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 물질, 화학약품 안전, 안전 데이터 시트, 유해 화학약품으로부터 보호, 화학적 상해 예방, 보건 및 안전 법률과 규정, 전염병 예방 등을 포함하는 보건 및 안전 교육 100시간.

(2) 고객과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독 절차,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적절한 살균 절차를 포함하는 소독 및 위생 교육 100시간.

(3) (A) 염색, 스트레이트닝, 웨이브 처리, 탈색, 모발 분석, 소인 및 스트랜드 검사, 안전 예방 조치, 포물러 혼합 및 염료 제거제 사용 등을 포함하는 모발 화학 처리 서비스 교육 200시간.

(B) 화학 처리 모발 서비스 교육에는 모든 유형의 모발과 질감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교육에는 다양한 컬이나 웨이브 패턴, 머리카락 두께, 모발의 양 등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4)(A)모발 손질, 헤어드라이, 클렌징, 컬링, 헤어드레싱, 모발 분석, 샴푸, 웨이브 처리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스트레이트 시술, 가위, 면도기, 전기 클리퍼 및 트리머, 숄가위 등을 사용하여 젓거나 마른 모발의 헤어 커트를 포함하는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교육 200시간.

(B) 헤어스타일 서비스 교육에는 모든 유형의 모발과 질감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교육에는 다양한 컬이나 웨이브 패턴, 머리카락 두께, 모발의 양 등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5) 면도를 위해 고객의 수염 정리, 고객의 피부 상태 점검, 면도 기술을 사용한 면도, 페이스 서비스 후 애프터셰이브 소독제 도포, 얼굴 마사지 및 크림을 도포한 마사지 등을 포함하여 면도 및 수염 다듬기 관련 교육 200시간.

(c) 미용 과정의 커리큘럼에는 적어도 다음 분야의 기술 교육 및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 물질, 화학약품 안전, 안전 데이터 시트, 유해 화학약품으로부터 보호, 화학적 상해 예방, 보건 및 안전 법률과 규정, 전염병 예방 등을 포함하는 보건 및 안전 교육 100시간.



(2) 고객과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독 절차,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적절한 살균 절차를 포함하는 소독 및 위생 교육 100시간.

(3) (A) 염색, 스트레이트닝, 웨이브 처리, 탈색, 모발 분석, 소인 및 스트랜드 검사, 안전 예방 조치, 포물러 혼합 및 염료 제거제 사용 등을 포함하는 모발 화학 처리 서비스 교육 200시간.

(B) 화학 처리 모발 서비스 교육에는 모든 유형의 모발과 질감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교육에는 다양한 컬이나 웨이브 패턴, 머리카락 두께, 모발의 양 등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4)(A) 모발 손질, 헤어드라이, 클렌징, 컬링, 헤어드레싱, 모발 분석, 샴푸, 웨이브 처리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스트레이트 시술, 가위, 면도기, 전기 클리퍼 및 트리머, 숯가위 등을 사용하여 찢거나 마른 모발의 헤어 커트를 포함하는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교육 200시간.

(B) 헤어스타일 서비스 교육에는 모든 유형의 모발과 질감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교육에는 다양한 컬이나 웨이브 패턴, 머리카락 두께, 모발의 양 등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5) 화학적 페이스셜 시술 및 손을 사용한 페이스셜 시술, 마사지, 자극, 각질 제거, 클렌징 또는 손, 에스테틱 기기, 화장품, 소독제, 로션, 토닉 또는 크림을 사용한 얼굴, 두피, 목, 손 또는 신체 미용 서비스(살아 있는 조직을 제거하거나 박피하는 행위는 제외)를 포함하는 피부 관리 서비스 교육 150시간.

(6) 속눈썹과 눈썹의 틴팅 및 파마, 사람에게 속눈썹을 붙이는 행위 또는 제모제, 핀셋, 슈가 왁스 제모제, 비처방 화학약품 또는 왁스 제모제를 사용하거나 모든 종류, 등급의 기기나 장치를 사용(일반적으로 레이저라 부르는 광파 사용은 제외)하여 인체의 체모를 제거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제모, 속눈썹, 눈썹 미용 서비스 교육 50시간.

(7) 수성 매니큐어 및 오일 매니큐어, 손과 팔 마사지, 발과 발목 마사지, 네일 분석, 아크릴, 액상 및 분말형 브러쉬온, 딥, 팁, 랩, 복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조 네일 서비스를 포함하는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교육 100 시간.

7363. 헤어스타일리스트 과정, 실습 시간

(a) 교육 시설에서 개설한 헤어스타일링 과정은 실습 및 기술 교육이 600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b) 헤어스타일링 과정의 커리큘럼에는 적어도 다음 분야의 기술 교육 및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 물질, 화학약품 안전, 안전 데이터 시트, 유해 화학약품으로부터 보호, 화학적 상해 예방, 보건 및 안전 법률과 규정, 전염병 예방 등을 포함하는 보건 및 안전 교육 100시간.

(2) 고객과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독 절차,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적절한 살균 절차를 포함하는 소독 및 위생 교육 100시간.

(3) (A) 모발 손질, 헤어드라이, 클렌징, 컬링, 헤어드레싱, 모발 분석, 샴푸, 웨이브 처리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스트레이트 시술, 가위, 면도기, 전기 클리퍼 및 트리머, 숏가위 등을 사용하여 젓거나 마른 모발의 헤어 커트를 포함하는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교육 200시간.

(B) 헤어스타일 서비스 교육에는 모든 유형의 모발과 질감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교육에는 다양한 컬이나 웨이브 패턴, 머리카락 두께, 모발의 양 등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7364. 피부 관리 과정, 실습 시간

(a) 교육 시설에서 개설한 피부 관리 과정은 실습 및 기술 교육이 6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b) 피부 관리 과정의 커리큘럼에는 적어도 다음 분야의 기술 교육 및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 물질, 화학약품 안전, 안전 데이터 시트, 유해 화학약품으로부터 보호, 화학적 상해 예방, 보건 및 안전 법률과 규정, 전염병 예방 등을 포함하는 보건 및 안전 교육 100시간.

(2) 고객과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독 절차,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적절한 살균 절차를 포함하는 소독 및 위생 교육 100시간.

(3) 화학적 페이스 시술 및 손을 사용한 페이스 시술, 마사지, 자극, 각질 제거, 클렌징 또는 손, 에스테틱 기기, 화장품, 소독제, 로션, 토닉 또는 크림을 사용한 얼굴, 두피, 목, 손 또는 신체 미용 서비스(살아 있는 조직을 제거하거나 박피하는 행위는 제외)를 포함하는 피부 관리 교육 350시간.

(4) 속눈썹과 눈썹의 틴팅 및 파마, 사람에게 속눈썹을 붙이는 행위 또는 제모제, 핀셋, 슈가 왁스 제모제, 비처방 화학약품 또는 왁스 제모제를 사용하거나 모든 종류, 등급의 기기나 장치를 사용(일반적으로 레이저라 부르는 광파 사용은 제외)하여 인체의 체모를 제거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제모, 속눈썹, 눈썹 미용 서비스 교육 50시간.



7365. 네일케어 과정, 실습 시간

(a) 교육 시설에서 개설한 네일케어 과정은 실습 및 기술 교육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b) 네일케어 과정의 커리큘럼에는 적어도 다음 분야의 기술 교육 및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 물질, 화학약품 안전, 안전 데이터 시트, 유해 화학약품으로부터 보호, 화학적 상해 예방, 보건 및 안전 법률과 규정, 전염병 예방 등을 포함하는 보건 및 안전 교육 100시간.

(2) 고객과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독 절차,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적절한 살균 절차를 포함하는 소독 및 위생 교육 100시간.

(3) 수성 매니큐어 및 오일 매니큐어, 손과 팔 마사지, 전체 페디큐어, 발과 발목 마사지, 네일 분석, 네일 복구 및 인조네일, 액상, 젤, 분말형 브러쉬온, 딥, 네일 팁, 랩 기술을 포함하는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교육 150시간.

7366. 전기분해요법 과정, 실습 시간

(a) 교육 시설에서 개설한 전기분해요법 과정은 전기분해요법 실무와 관련된 실습 및 기술 교육이 6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b) 전기분해요법 과정의 커리큘럼은 다음 분야의 기술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유해 물질, 화학약품 안전, 안전 데이터 시트, 유해 화학약품으로부터 보호, 화학적 상해 예방, 보건 및 안전 법률과 규정, 전염병 예방 등을 포함하는 보건 및 안전 교육 100시간.

(2) 고객과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독 절차,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적절한 살균 절차를 포함하는 소독 및 위생 교육 100시간.

(3) 전기분해요법, 열분해요법, 혼합/이중요법 및 전기학 교육 400시간.

(A) 전기분해요법 과목은 단침 및 복침 삽입 기술을 이용한 제모, 갈바닉 전류 사용, 피부 반응, 아나포레시스, 카타포레시스, 전기분해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 병력 평가 학습을 다룬다.

(B) 열분해요법 과목은 자동 및 수동 열분해요법 장비를 이용한 제모, 삽입 기술, 고b강도 및 저강도 고주파 사용, 피부 반응, 열분해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 병력 평가 학습을 다룬다.



(C) 혼합/이중요법 과목은 고주파와 갈바닉 전류의 조합을 이용한 제모, 삽입 기술, 피부 반응, 아나포레시스, 카타포레시스, 혼합/이중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 병력 평가 학습을 다룬다.

(D) 전기학 과목은 전류의 성질, 전기 장비 작동 원리, 전기 장비 작동 시 준수해야 할 다양한 안전 예방 조치 및 장비의 적절한 관리법을 다룬다.

7367. 학점 이전

학생이 현재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는 변경 전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른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동일하게 받아 취득된 학점을 인정해야 한다.

7368. 교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학생의 작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교육 시설은 이발, 미용 또는 전기분해요법 서비스를 학생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7389. 위험 물질에 관한 보건 안전 과정

(a) 위원회는 7314.3절에 명시된 위험 물질과 기본 노동법, 7314.3절에 명시된 신체적, 성적 학대의 이해에 관한 보건 안전 과정을 개설하거나 채택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시설에서 교육해야 한다. 과정 개발 시 강사들이 해당 과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습 및 교육 과정의 시범 수업을 포함해야 한다.

(b) 본 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7389.5. 연방 또는 주 당국이 주립 교정시설에 개설한 이발 과정 또는 미용 과정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또는 주 교정시설에 개설된 이발, 미용 또는 헤어스타일링 교육 과정이 본 법률의 모든 조항과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한다면, 해당 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발사, 미용전문가 또는 헤어스타일리스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7395.1. 미용 교육 시설의 실무 수습생

(a) 7362절 (a) 항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승인한 미용 교육 시설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설된 교육 과정에 등록된 학생이 해당 과정 졸업을 위한 수업 시간의 최소 25%를 이수하였을 때, 그 학생은 해당 교육 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에서 실무 수습생으로 근무할 수 있다.

(b) 실무 수습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그 학점은 주당 25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과정 이수에 필요한 총 수업 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c) 실무 수습 프로그램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1)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시설.

(2) 직원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최소 4명의 면허 소지자가 근무하는 시설.

(3) 시설에 근무하는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4) 시설에 근무하는 면허 소지자는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 아닌 월급, 커미션을 받고 일한다.

(5) 시설에 근무하는 면허 소지자 4명당 실무 수습생은 1명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시설은 실무 수습생을 두기 위해 정규 고용된 면허 소지자를 해고하거나 면허 소지자의 근무 시간을 단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실무 수습생을 시설에 배정하기 앞서 시설은 면허 소지자의 현재 근무 일정이 단축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교육 시설 및 그에 영향을 받는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만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근무 일정을 줄이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6) 실무 수습생은 시설에 근무하는 중 알아보기 쉽게 교육 시설의 학생증을 착용해야 하며, 위원회가 승인한 형식으로 제작 및 코팅하여 사진이 부착된 교육 시설 학생증을 소지해야 한다.

(d) (1) 인턴의 책임과 의무의 90% 이상은 7316절에 정의된 미용 행위에 포함된 행위로 구성된다.

(2) 시설은 실무 수습 기간 중 학생을 배정한 교육 시설과 학생의 교육 진행 상황을 논의해야 한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학생을 감독하는 면허 소지자의 도움을 받아 학생의 교육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교육 시설에 보고해야 한다.

(3) 참여 교육 시설은 실무 수습 프로그램에서 수습생의 학습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 시설은 실무 수습 프로그램에서 수습생의 교육 경험을 정확히 기록하고, 수습생의 학습 결과가 교육 과정의 학점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e) 교육 시설에서 제공되는 실무 수습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언제든지 학생이 종료할 수 있으며, 졸업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

(f) 실무 수습생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시설은 수습생의 종합 책임 보험과 미용 사고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시설이 책임 보험 두 가지 모두에 가입하여 실무 수습생에게도 그 보험이 적용된다는 증빙 서류를 참여 교육 시설에 제공해야 한다.



(g) (1) 본 절에서 승인한 실무 수습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이 교육을 받는 분야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 및 태도를 습득하고 형식적인 강의 중심의 교육을 확장하는 데 있다.

(2) 교육은 교육이 실시되는 미용 분야의 기술, 지식, 태도 및 수행 수준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3) 면허 소지자가 직접 실무 수습생의 행위를 감독하는 조건으로 실무 수습생은 7316절의 미용 행위 정의에 기술된 행위만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실무 수습생이 승인된 미용 교육 기관에서 적절한 화학 기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수습생은 화학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의 경우 실무 수습생은 보조원으로서, 면허 소지자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감독하에서만 미용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4) 실무 수습생은 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아야 한다.

7395.2. 이발 교육 시설의 실무 수습생

(a) 7362절 (a) 항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승인한 이용 교육 시설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설된 교육 과정에 등록된 학생이 해당 과정 졸업을 위한 수업 시간의 최소 25%를 이수하였을 때, 그 학생은 해당 교육 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에서 실무 수습생으로 근무할 수 있다.

(b) 실무 수습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그 학점은 주당 25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과정 이수에 필요한 총 수업 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c) 실무 수습 프로그램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1)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시설.

(2) 직원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최소 4명의 면허 소지자가 근무하는 시설.

(3) 시설에 근무하는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4) 시설에 근무하는 면허 소지자는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 아닌 월급, 커미션을 받고 일한다.

(5) 시설에 근무하는 면허 소지자 4명당 실무 수습생은 1명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시설은 실무 수습생을 두기 위해 정규 고용된 면허 소지자를 해고하거나 면허 소지자의 근무 시간을 단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실무 수습생을 시설에 배정하기 앞서 시설은 면허 소지자의 현재 근무 일정이 단축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교육 시설 및 그에 영향을 받는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만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근무 일정을 줄이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6) 실무 수습생은 시설에 근무하는 중 알아보기 쉽게 교육 시설의 학생증을 착용해야 하며, 위원회가 승인한 형식으로 제작 및 코팅하여 사진이 부착된 교육 시설 학생증을 소지해야 한다.

(d) (1) 인턴의 책임과 의무의 90% 이상은 7316절에 정의된 이발 행위에 포함된 행위로 구성된다.

(2) 시설은 실무 수습 기간 중 학생을 배정한 교육 시설과 학생의 교육 진행 상황을 논의해야 한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학생을 감독하는 면허 소지자의 도움을 받아 학생의 교육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교육 시설에 보고해야 한다.

(3) 참여 교육 시설은 실무 수습 프로그램에서 수습생의 학습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 시설은 실무 수습 프로그램에서 수습생의 교육 경험을 정확히 기록하고, 수습생의 학습 결과가 교육 과정의 학점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e) 교육 시설에서 제공되는 실무 수습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언제든지 학생이 종료할 수 있으며, 졸업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

(f) 실무 수습생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시설은 수습생의 종합 책임 보험과 이발 사고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시설이 책임 보험 두 가지 모두에 가입하여 실무 수습생에게도 그 보험이 적용된다는 증빙 서류를 참여 교육 시설에 제공해야 한다.

(g) (1) 본 절에서 승인한 실무 수습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이 교육을 받는 분야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 및 태도를 습득하고 형식적인 강의 중심의 교육을 확장하는 데 있다.

(2) 교육은 교육이 실시되는 이발 분야의 기술, 지식, 태도 및 수행 수준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3) 면허 소지자가 직접 실무 수습생의 행위를 감독하는 조건으로 실무 수습생은 7316절의 이발 행위 정의에 기술된 행위만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실무 수습생이 승인된 이발 교육 기관에서 적절한 화학 기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수습생은 화학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의 경우 실무 수습생은 보조원으로서, 면허 소지자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감독하에서만 미용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4) 실무 수습생은 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보류)

제10조 면허

7396. 면허증의 형식과 내용

위원회에서 교부한 면허증의 형식과 내용은 1 64절에 따라 결정된다.

면허증에는 면허 소지자가 이발사, 미용전문가, 피부미용사, 매니큐어사,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또는 견습생 면허를 취득하였음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면허 소지자의 사진이 부착되어야 한다.

7396.5. 임시 규제 면허

(a)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조건이 부과된 임시 규제 면허를 신청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1) 지속적으로 진료,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다.
- (2) 지정된 재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 (3)알코올 또는 약물의 사용을 자제한다.
- (4) 본 장의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b) (1)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절의 목적상, 임시 규제 면허의 교부 결정 시 위원회는 유죄 판결이 기각된 신청자에게 기각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형법 1203.4절 또는 1203.4a절에 의거하여 유죄 판결이 기각된 신청자를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2) 또한 위원회는 다른 합당한 서류나 신청자가 제출한 선처 호소 탄원서를 참작하여 고려할 수 있다. 해당 서류는 위원회에서 재활의 증거로 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c) 위원회에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의 청원서를 접수하면 임시 규제 면허에 부과된 조건을 수정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d) 자격을 갖춘 신규 신청자에게 임시 규제 면허를 교부하는 목적상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임시 규제 기간의 표준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 (1) 임시 규제 면허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제한.
- (2) 임시 규제 면허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일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 (3) 보호 감독 요건.
- (4) 규정 준수 및 분기별 보고 의무.



7397. 면허증 게시

모든 면허 소지자는 사업장 또는 고용 장소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면허증을 게시해야 한다.

7398.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자가 면허증 분실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서약으로 확인해 제출하고,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7399. 임시 면허증

어떠한 경우에도 임시 면허증은 발급될 수 없다.

7400. 면허 갱신 시 필요한 정보

시설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모든 면허 소지자는 주소 변경 시 30일 이내에 새 주소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통지 접수 시 등록부의 해당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7401. 면허 갱신 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정보

(a) 7396절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개인은 면허 갱신 시 다음 중 하나로 지정된 시술 행위 상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캘리포니아주에서 상근 시술.
- (2) 캘리포니아주 외부에서 상근 시술.
- (3) 캘리포니아주에서 시간제 시술.
- (4) 이 업계에 종사하지 않음.
- (5) 은퇴.
- (6) 기타 시술 행위 상태(위원회에서 추가 정의 가능).

(b) 7396절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개인은 면허 갱신 시 신청서에 다음 중 하나로 고용 상태를 명시해야 한다.

- (1) 직원.
- (2) 독립 계약자.
- (3) 샬롱 소유자.

(c) 7347절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개인은 면허 갱신 시 다음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7402.5. 개인 서비스 허가증

- (a) 본 절의 목적상, ‘개인 서비스 허가증’이란 이 장에 의거하여 개인이 면허를 보유한 서비스를 위원회가 제정한 규율을 준수하며 7346절에 정의된 시설 외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허가증을 말한다.
- (b) 위원회는 개인이 규정에 명시된 개인 서비스 허가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인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 (c) 위원회는 개인 서비스 허가증에 관한 규정을 발행해야 한다. 규정을 제정할 때 위원회는 최소 2회 이상 이해관계자 회의를 열어야 한다.
- (1)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해 위원회는 개인 서비스 허가증 신청이 가능한 적절한 면허 교부 범주를 결정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개인 서비스 허가증 소지자가 허가된 시설 외부에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
- (3) 위원회는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한 위원회의 기존 규정이나 요건으로부터 개인 서비스 허가증 소지자를 면제할 수 없다.
- (4) 위원회에서 소비자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개인 서비스 허가증 소지자가 시설에 고용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5) 규정에 따라 개인 서비스 허가증 신청자는 책임 보험에 가입한 증빙 자료를 갖추고,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 (d) 개인 서비스 허가증은 2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일 전에 갱신해야 한다. 개인 서비스 허가증 수수료는 오십 달러(\$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 서비스 허가증 갱신 수수료는 오십 달러(\$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한 경과 과태료는 갱신 당일 현행 갱신 수수료의 50%이다.
- (e) 위원회는 개인 서비스 허가증 발급 및 규제 과정을 201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보고는 정부법 9795절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 (2) 이 항에 의거한 주의회에 대한 보고 요건은 정부법 10231.5절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없다.



제11조 징계 절차

7403. 면허 취소, 정지 또는 거절

(a)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본 조에서 규정한 징계 조치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장에 규정된 면허를 언제든지 취소, 정지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이 조의 절차는 주정부 법전 제2편 3부 1편 5장(11500절로 시작)에 의거하여 실시되며, 위원회는 그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

(b) 위원회는 480절에 명시된 사유를 근거로 신청자에게 면허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c) 485절 및 486절에 명시된 요건 외에 신청자의 면허 교부를 거절할 경우,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는 거절 사유서를 제공해야 한다.

(1)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재할 증거에 대한 평가.

(2) 482절에 의거하여 수립된, 위원회의 재할 관련 기준 제공. 참작 기준은 연령과 범죄의 심각도, 치료 또는 기타 재할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거 등이다.

(3) 위원회의 결정이 신청자의 과거 유죄 판결에 근거할 경우, 위원회는 면허 거절이 타당한 결정임을 설명하고, 과거의 범죄 유죄 판결이 이발사나 미용사의 자격 기준, 역할 또는 의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d) 2009년 7월 1일부로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1) 신청자의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범죄 기록이 부분적으로나마 면허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c) 항의 (3) 목에 따라 제출된 정보와 더불어 신청자의 범죄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신청자가 서면으로 위원회에 사본을 요청하고, 해당 사본을 보낼 주소를 명시한 경우).

(A)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범죄 기록의 경우, 사법부에서 제공받은 양식 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B) 범죄 기록은 신청자 범죄 기록의 기밀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범죄 기록을 고용주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c) 위원회는 신청자의 서면 요청 사본과 신청자에게 발송한 답변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답변서에는 발송 날짜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사법부 또는 연방 수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 487절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신청자의 심의회 요청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면허 거절 관련 심의회를 시행해야 한다. 그 외 모든 심의회 요청은 위원회에서 심의회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

(f) 행정법 판사가 위원회에서 면허를 취소, 정지 또는 거절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면 행정법 판사는 면허 소지자가 조사 및 판결과 관련된 합당한 비용을 위원회에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본 절의 목적상, ‘비용’에는 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하는 데 지출한 비용, 검찰청의 사건 조사 및 기소 비용, 행정 심의회 사무국에서 심의회 및 권고안 결정에 지출된 비용이 포함된다.

(g) 부과할 비용은 행정법 판사가 결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는 해당 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위원회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법 판사에게 반송하는 경우, 행정법 판사는 권고안에 부과된 비용의 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h) 위원회는 행정 심의회가 열린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서 지불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집행권은 비용 지불 명령을 받은 면허 소지자에 대한 위원회의 기타 권리에 추가된다.

(i) 비용 회수를 위한 사법 조치에서 위원회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불 명령 및 지불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결정적 증거이다.

(j)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절에 따라 회수된 모든 비용은 예정된 변제로서 비용이 실제로 회수되는 회계연도의 예비비로 적립된다.

7403.2. 면허의 일시 정지, 임시 규제 면허 조건,

(a)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관 또는 그 피지명자는 매니큐어, 페디큐어 장비와 관련된 보건 및 안전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소환장이 발부된 시설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관 또는 그 피지명자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면허 일시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심의 없이 본 장에 의거하여 교부된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일시 정지는 행정관 또는 그 피지명자가 면허 정지 사실을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 통지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b) 본 절에 따른 면허 정지는 즉시 효력을 발한다. 면허는 정지일로부터 1년 동안 임시 규제 처분을 받으며,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1) 면허 소지자는 시설에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 법률과 규정에 대해 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시설 소유자는 모든 조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3) 면허 소지자는 모든 벌금을 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와 합의를 통해 정기 분할 납부 방식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

(c) 본 절에 의거하여 면허가 정지된 면허 소지자는 징계 심사 위원회가 정지 및 임시 규제 조건을 변경 또는 취소하도록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면허 정지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이의제기를 거부해야 한다. 이의제기는 7410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7411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d) 면허 소지자가 본 절에 따라 부과된 임시 규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임시 규제 처분 취소를 청원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정부법 제2편 3부 1편 5장(11500절로 시작)에 따라 실시된다.

면허 소지자는 임시 규제 조건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위원회는 면허를 복권해야 한다.

7403.5.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 시설의 폐쇄

(a) 494절 및 7403절에 규정된 권한 외에도, 행정관은 독자적 판단에 따라 조사 결과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시설을 서면 통지하여 즉시 폐쇄할 수 있다.



(b) 행정관은 시설 면허의 정지 사실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통지서 및 폐쇄 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쇄 통지서는 일반 대중과 고객이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게시되어야 한다.

(c) 시설 면허 정지에 대한 서면 통지서가 교부된 경우, 해당 시설은 일반 대중과 고객을 대상으로 즉시 폐쇄되며, 행정관이 정지 조치를 취소하거나, 정지가 만료되어 494절의 권한에 따른 명령으로 대체되거나, 해당 시설이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 않을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d) (1) 행정관은 본 절에 따라 정지 명령을 내리기 전, 가능한 경우 시설에 통지하여 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면허 정지 명령서가 교부되기 전 심의를 받지 못한 시설은 정지 명령이 내려진 후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다.

(2) 본 절에 규정된 통지 및 심의회는 상황에 따라 전화, 팩스 전송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 시설은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면허 정지의 서면 통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관은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여 면허 정지의 서면 통지 취소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설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여 조사 후에도 면허 정지의 서면 통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본 절에 의거하여 이후 검사 1회 시행 시마다 100달러(\$100)가 부과된다.

(f) 면허의 정지 통지서는 행정관이 제거할 때까지 계속 게시되어야 하며, 30일간 유효하다. 행정관 또는 지명된 대리인 외의 다른 사람이 면허 정지 통지서를 제거하거나, 시설 면허 정지 서면 통지서 교부 시 시설 폐쇄를 거부할 경우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본 장에서 승인된 모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404. 징계 조치의 사유

징계 조치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a)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

(1) 이발, 미용, 전기분해요법 시술 행위의 보편적인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반복적 실수 및 고객의 건강 및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를 포함한 무능력이나 중과실.



(2) 유사한 종류의 업무 태만 행위 반복.

(3)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준, 역할 및 의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이러한 경우 유죄 판결 기록 또는 공증 사본은 유죄 판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다.

(4) 고의로 거짓 또는 기만적인 문구를 사용한 광고.

(b) 본 장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c)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에서 승인한 보건 안전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면허가 교부되어 관리되는 모든 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d)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면허가 교부되어 관리되는 모든 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e) 감염성 또는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계속 시술 시행하는 경우.

(f) 알코올 중독 및 규제 약물의 습관적, 중독적 사용.

(g) 면허가 요구되며 이 장에서 규제된 직업 행위를 사칭하여 보수나 어떤 형식으로도 대가를 받고 수행하거나 시도한 경우.

(h) 눈에 잘 띄는 곳에 면허증 또는 보건 안전 규칙 및 규정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i)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고 인가된 시설의 외부에서 본 장에 규정된 면허가 필요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단,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및 인가된 시설의 목적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j) 면허 소지자가 직접,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영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면허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k)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선서 또는 진술서에서 중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l) 이 장에서 승인된 점검을 허용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m) 면허 교부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는 모든 행위 또는 활동.

(n) 오류나 실수로 인해 교부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7404.1. 본 장의 규정 위반

별도의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개인, 회사, 협회, 본 장을 위반하는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이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7405. ‘유죄 판결’, 면허에 대한 영향

유죄 인정,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의 답변 후 유죄 판결은 본 조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유죄 인정을 취소하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 평결을 파기하거나 고발이나 약식 기소, 기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법 1203.4절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 유예 명령이 내려진 경우,

제12조 과징금 및 소환장

7406.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위원회는 본 장에 의거한 징계 절차를 실시하는 권한 외에, 본 장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본 장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식 담당관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7407. 과징금 요율표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본 장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요율표를 작성해야 한다. 본 절에 의거하여 징수된 모든 금액은 위원회 예비비로 적립된다.

요율표의 위반 유형별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위반 시정이 가능한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립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국이 동일한 위반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407.1. 동일한 위반에 대해 시설과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

(a)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동일한 위반에 대해 시설의 면허 소지자와 개인 면허 소지자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정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동일한 위반에 대해 시설의 면허 소지자에게만 벌금이 부과되거나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보건 안전 규정 위반의 경중과 동일 시설에서 면허 소지자의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b) (1) 위원회는 보건 안전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위반을 대신하여 위원회가 제공하는 구제 교육 프로그램을 규정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 위원회는 (1)항에 기술된 프로그램의 관리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7408. 소환장

위원회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공식 담당관을 통해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모든 소환장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위반 혐의가 있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여 위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과징금이 있을 경우 소환장 작성 시 함께 부과된다. 소환장에는 7406절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시정해야 할 조건이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이 포함된다.

7408.1. 분할 납부 방식

과징금이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소환장의 과징금을 분할 납부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 방식의 조건을 정의해야 하며, 해당 조건은 기간, 취소 사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7409. 위반 시정

소환장이 발부된 면허 소지자가 위반 사항의 시정을 입증하는 적절한 증빙 서류를 위원회 또는 행정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관련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가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과 규정의 조항 1가지를 3년 이내에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정을 입증하는 서류는 위원회가 규정한 시간 이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행정관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위반 사항 시정 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정해진 날짜를 경과한 후 제출한 시정 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으며, 과징금은 납부되어야 한다.



7410. 징계 심사 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

위반 통지서 또는 소환장이 발부되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위원회가 구성한 징계 심사 위원회에 소환장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이의제기는 소환장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소환장 관련 이의제기는 거부된다.

해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후 이의제기와 관련한 판결이 날 때까지 과징금 납부는 유예된다.

소환장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인 또는 지명된 대리인은 징계 심사 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 이의제기 신청인은 발부된 소환장과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대해 증빙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두로 설명할 수 있다. 징계 심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후, 해당 위원회는 조사한 사실을 근거로 소환장에 기재된 혐의를 확인, 축소, 기각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과징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상되지 않는다. 이의제기와 관련된 징계 심사 위원회의 결정은 이의제기 신청인에게 문서로 제공된다.

7411. 징계 심사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징계 심사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위원회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의회가 열리면, 국장은 조사한 사실을 근거로 소환장 또는 처벌을 확인,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적절한 구제 방안을 지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과징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상되지 않는다. 징계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의회는 주정부 법전 제 2편 3부 1편 5장(11500절로 시작)에 의거하여 실시되며, 위원회는 그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

7413. 이의신청 시기, 최종 결정

소환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의제기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된 시간에 징계 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환장은 최종 결정으로 판결되며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행정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7414. 과징금 미납 시 영향

과징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혹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 신청, 갱신 수수료, 기한 경과 과태료 및 모든 기타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면허가 교부 또는 갱신되지 않는다.

**제12.5조
태닝 시설**

7414.1. 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Filante Tanning Facility Act)에 의거하여 보존해야 할 점검 기록

서면 경고문, 게시해야 하는 표지판, 시설 운영자의 자격 요건, 승인서, 부모 동의서, 부상 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8부 23장(22700절로 시작))에 따라 태닝 시설에 보존하도록 법에 규정된 모든 기록은 모든 점검 또는 태닝 시설이 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에 위반된다는 고발로 인해 시작된 모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회 또는 공식 담당관의 점검 시 공개되어야 한다. 위원회 또는 공식 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즉시 이러한 모든 기록의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7414.2. 1988년 피란테 태닝 시설법 위반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a)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8부 23장(22700절로 시작)) 위반은 형법 19.6절 및 19.7절에 명시된 절차의 위반이다.

형법 제2편 3부 5c장(853.5절로 시작)에 따라 고소장 또는 법원 출석 통지서가 경범죄 기소 담당 법원에 제출된 경우.

(2) 법원에서 피고와 검찰의 동의를 받아 해당 위반 사항이 피고가 경범죄로 소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할 경범죄라 결정한 경우.

(b)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을 위반한 경우 250달러(\$2)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c) 본 절은 1994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7414.3. 출석 통지서 발부 권한, 발부 책임

(a) 국장이 임명한 위원회 담당관은 형법 제2편 3부 5c장(853.5절로 시작)에 따라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부할 권한이 있다. 임명된 담당관은 경찰관이 아니며, 그러한 임명의 결과로 공무원 연금 수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관의 권한은 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 위반에 대해 통지서 발부로 제한되며, 담당관 앞에서 그 위반이 행해진 경우로 한정된다

(b) (a) 항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합법적 체포 또는 담당관이 체포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판단할 합당한 사유가 있는 체포라면, 해당 담당관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체포 또는 불법 구금에 대한 민사 책임이 없으며, 그에 대한 소송 원인도 구성될 수 없다.

(c) 본 절은 1994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7414.4. 시설에 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 준수 관련 정보 배포

위원회와 공식 담당관은 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 준수와 관련한 정보를 태닝 시설에 배포할 수 있다.

7414.5. 조의 적용 범위

본 조는 본 장에 따라 인가된 시설과 공동으로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태닝 시설에만 적용된다.

7414.6. 규정의 채택

위원회는 인가된 시설 내의 태닝 시설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13조 수익

7415. 면허 만료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본 장에 따라 교부된 면허는 2년간 유효하며, 위원회가 면허를 교부한 달의 말일 자정에 만료된다.



7417. 만료된 면허 갱신 기간

본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만료된 경우,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납된 갱신 수수료와 기간 경과 과태료를 지불하면 갱신할 수 있다. 만료 후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갱신 전제 조건으로 기간 경과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본 장에서 규정한 현행 평생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 절의 규정에 따른 갱신은 신청서 제출일 또는 미납 갱신 수수료 납부일, 기간 경과 과태료 납부일 중 가장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된 면허는 갱신 효력 발생일 이후 면허가 다시 갱신되지 않을 경우 면허가 만료되는 다음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7418. 취소된 면허

본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만료 후 5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은 면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이후에는 면허가 갱신, 복권, 재교부될 수 없다. 취소된 면허 소지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된 모든 수수료를 납부하여 처음 면허를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춘 후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새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7419. 정지된 면허 갱신

정지된 면허는 만료될 수 있고,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하더라도 면허가 정지 상태이며 복권되지 않는 한, 해당 면허로 허용되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면허 정지 명령 또는 판결을 위반하는 기타 모든 활동이나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

7420. 취소된 면허의 만료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면허는 만료될 수 있으나 갱신할 수는 없다. 만료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를 복권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복권의 전제 조건으로 현행 갱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허 복권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7421. 수수료 결정

수수료는 위원회가 본 조에 정한 한도 내에서, 본 장에 규정된 의무 수행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7422. 회계 감사관에게 수수료 보고

위원회를 대신하여 전월에 징수된 모든 수수료 및 각종 영수증은 매월 초에 회계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전체 징수액은 주 재무국에 납부되며, 본 조항에 의거하여 조성되는 이·미용 예비비로 적립된다.

예비비는 연례 예산법에 따라 위원회에 배정되며, 본 장의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급여 및 기타 모든 비용은 예비비에서 지급된다.

7423. 수수료

각 전문직 종사자의 면허와 관련하여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a) (1) 미용사 신청 및 시험 응시료는 시험 개발, 구매, 채점 및 관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2) 미용사 면허 최초 교부 수수료는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1) 피부미용사 신청 및 시험 응시료는 시험 개발, 구매, 채점 및 관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2) 피부미용사 면허 최초 교부 수수료는 40달러(\$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1) 매니큐어사 신청 및 시험 응시료는 시험 개발, 구매, 채점 및 관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2) 매니큐어사 면허 최초 교부 수수료는 35달러(\$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1) 이발사 신청 및 시험 응시료는 시험 개발, 구매, 채점 및 관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2) 이발사 면허 최초 교부 수수료는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 (1)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신청 및 시험 응시료는 시험 개발, 구매, 채점 및 관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2)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면허 최초 교부 수수료는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f) 견습생 신청 및 면허 교부 수수료는 25달러(\$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g) 갱신 대상의 각 전문직 종사자 면허 갱신 수수료는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h) 미용사 신청 및 시험 응시료는 시험 개발, 구매, 채점 및 관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i) 미용사 면허 최초 교부 수수료는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j) 163.5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허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는 갱신 당일 현행 갱신 수수료의 50%이다.

7424. 이동 설비차 운영 관련 수수료 요율표

본 장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시설 운영 면허와 관련된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a) 신청 및 면허 최초 교부 수수료는 80달러(\$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갱신 수수료는 40달러(\$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기한 경과 과태료는 갱신 당일 현행 갱신 수수료의 50%이다.

(d) 기존 시설의 소유권 변경 시 모든 신청 및 최초 면허 교부 수수료는 새 시설에 부과되는 수수료보다 낮으나, 위원회에서 신청 처리 및 면허 교부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7425. 이동 설비차 운영 관련 수수료 요율표

본 장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이동 설비차 운영 면허와 관련된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a) 신청 수수료는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최초 점검 및 면허 교부 수수료는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갱신 수수료는 40달러(\$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 163.5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경과 과태료는 갱신 당일 현행 갱신 수수료의 50%이다.

7426.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7398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10달러(\$10)이다.



7426.5. 처리 직무 기준 수수료 종별 분류,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환불 불가
위원회는 처리 직무의 통합 수수료가 면허 종류별로 규정된 최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본 장에 규정된 면허와 관련하여 납부할 수수료를 신청서 검토, 시험 관리, 면허 교부 등 처리 직무에 따라 종별로 분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면허 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을 취소했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응시자가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 절차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7427. 면허 갱신 수수료 면제

- (a) (1) 면허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인 경우 위원회는 본 조에 명시된 갱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면허 소지자는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 본 항은 2023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없다.
- (b) 면허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이나 면허 소지자가 면허 갱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다음 두 가지 조항이 적용된다.
(1) 위원회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환불하지 않는다.
(2) 위원회는 이후 갱신 기간에 면허 갱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면허 소지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할 의무도 없다.
- (c) 본 절은 2025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해당 날짜부터 폐지된다.

제1.5부 면허 거절, 정지 및 취소

제1장 일반 규정

475. 부의 규정 적용

이 법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면허 거절 사유에 따라 면허 거절에 적용된다.

- (1) 면허 신청서에 고의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
(2) 범죄의 유죄 판결.



(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로 부정 또는 사기, 기만을 포함하는 행위를 실행한 경우.

(4) 해당 사업 또는 전문업 면허 소지자가 실행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인 행위를 실행한 경우.

이 법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부의 규정은 (a) 항의 (1), (2) 목에 명시된 사유로 인한 면허의 정지와 취소에 적용된다.

(c) 면허는 도덕성 결여 또는 신청자의 성격 또는 평판, 개성, 습관과 관련된 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거절, 정지, 취소되지 않는다.

476. 면제

(a) (b)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의 어떠한 조항도 3부 4장(6000절로 시작), 9부(23000절로 시작) 또는 8부 5장(198 00절로 시작)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면허 교부 또는 등록 시 적용되지 않는다.

(b) 3부 4장(6000절로 시작)에 따라 변호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의 면허 교부 및 8부 5장(19800절로 시작) 또는 9부(23000절로 시작)에 따른 사람의 면허 교부 또는 등록에는 494.5절이 적용된다.

477. “위원회”, “면허”

본 부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위원회(Board)’에는 ‘사무국(bureau)’, ‘위원회(commission)’, ‘위원회(committee)’, ‘부서(department)’, ‘국(division)’, ‘시험위원회’, ‘프로그램’ 및 ‘기관(agency)’이 포함된다.

(b) ‘면허’에는 이 법전에 규정된 사업 또는 전문업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증, 등록증 또는 기타 수단이 포함된다.

478. “신청서” 및 “자료”

(a) 본 부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신청서’는 제출한 원본 문서나 작성한 서류 및 신청자나 신청을 지원하는 다른 사람이 신청 당시 또는 이후에 제공하거나 접수한 증빙 서류를 비롯한 기타 모든 증빙 서류 또는 문서를 포함한다.

(b) 본 부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자료’는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직무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진술 또는 누락된 정보를 포함한다.



제2장 면허의 거절

480. 거절 사유, 재할 증명서 취득 시 효력

(a) 이 법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가 받은 유죄 판결 또는 형법상 처벌을 근거로 이 법전에 규정된 면허를 거절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면허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에, 범죄로 인한 과거의 수감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서의 대상인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직무, 의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신청자가 신청서의 대상인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직무, 의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경우 또는 신청자가 면허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내에 해당 범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그러나 과거 7년의 제한은 다음의 어떤 경우에도 적용될 수 없다.

(A) 신청자가 형법 1192.7절에 규정된 중범죄 또는 형법 290절 (d) 항의 (2) 또는 (3) 호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B) 신청자가 다음 규정에 명시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대상인 사업 또는 전문업의 신의성실의 자격, 직무, 의무와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로 현재 분류될 수 있는 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i) 제3부 1장(5000절로 시작).

(ii) 제3부 6장(6500절로 시작).

(iii) 제3부 9장(7000절로 시작).

(iv) 제3부 11.3장(7512절로 시작).

(v) 제3부 12장(7600절로 시작)에 명시된 장의사 또는 묘지 관리자

면허.

(vi) 제4부(10000절로 시작).

(2)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규정했으며 신청서의 대상인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직무, 의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에 캘리포니아주 내외의 면허를 교부하는 위원회의 정식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러나 면허를 교부하는 위원회가 부과한 과거 7년 이내의 징계 조치가 형법 1203.4, 1203.4a, 1203.41, 1203.42, 또는 1203.425절에 따라 기각된 판결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각 또는 말소된 범죄 기록을 근거로 하는 경우 면허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신청일로부터 7년 이전에 발생한 공식 징계는, 해당 징계가 제2부 제5장(제2000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의사 및 외과의사가 이 주에서 저질렀다면 제726절에서 규정한 성적 학대, 부정 행위 또는 환자와의 관계 또는 제729절(a)에 정의된 성적 착취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경우에 한하여 면허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b) 이 법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형법 제3편 6부 3.5장(4852.01절로 시작)에 따라 재할 증명서를 획득하거나,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감형 또는 사면을 받았거나, 482절에 따라 재할을 증명한 경우, 신청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또는 해당 유죄 판결의 원인이었던 행위를 근거로 면허를 거절할 수 없다.

(c) 이 법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 또는 형법 1203.4, 1203.4a, 1203.41 또는 1203.42절에 따라 기각된 유죄 판결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각 판결이나 말소된 범죄 기록만을 근거로 면허를 거절할 수 없다. 형법 1203.4, 1203.4a, 1203.41 또는 1203.42절에 따라 기각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청자는 사법부의 보고서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각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d) 이 법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규 위반, 소환장 발부, 소년 보호처분으로 처리된 체포를 포함하여 유죄 판결이 아닌 최종 판결을 받은 체포 사실을 근거로 면허를 거절할 수 없다.

(e) 위원회는 신청자가 이 법전에 규정된 면허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실에 대해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을 경우, 면허를 거절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개했더라도 면허 거절 사유가 아닌 사실을 신청자가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거절할 수 없다.

(f) 위원회는 신청자의 범죄 기록 정보를 요청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제3부 3장(5500절로 시작), 3.5장(5615절로 시작), 10장(7301절로 시작), 20장(9800절로 시작) 또는 20.3장(9880절로 시작)이나 제8부 3장(19000절로 시작), 3.1장(19225절로 시작)에 의거하여 면허를 교부하는 위원회는 본장에 규정된 면허 신청자가 면허 신청서에 범죄 기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1) 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면허 신청자에게 신청자의 범죄 기록 관련 정보나 문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위원회가 정보의 공개는 자발적이며, 신청자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원회의 면허 교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음을 신청자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위원회는 재할의 상당한 관계성 또는 재할을 입증하는 증거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자에게 범죄 기록과 관련한 양형 사유를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신청자의 유죄 판결 기록만을 근거로 혹은 해당 기록을 부분적 근거로, 면허 신청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A) 면허 교부 거절 또는 부적격.

(B) 신청자가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절차.

(C) 신청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D) 형법 11122~11127절에 의거하여 신청자가 본인의 유죄 판결 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해당 기록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

(g) (1) 이 법전의 규정에 따른 각 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기타 서류, 신청자에게 제공한 통지서, 신청자와 주고받은 모든 연락 내용 및 신청자의 범죄 기록 조회서를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2) 이 법전의 규정에 따른 각 위원회는 면허 교부 시마다 접수된 신청서 개수 및 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한 신청서 개수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각 면허 교부 기관은 다음 정보의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A) 면허 거절 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의 수.

(B) 감형 또는 재할의 증거를 제공한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의 수.

(C) 범죄 기록이 있으며 면허 거절 또는 부적격 통보에 이의를 제기한 신청자의 수.

(D) 세목 (A), (B) 또는 (C)에 명시된 신청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인증, 성별에 관한 정보 등 인구통계적 정보.

(3) (A) 이 법전의 규정에 따른 각 위원회는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 및 주의회의 해당 정책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본 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서 개인 식별 요소를 제거하여 매년 공개해야 한다. 각 위원회는 개인 신청자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B) (A) 목에 따른 보고서는 정부법 9795절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h) 본 절에서 ‘유죄 판결’은 7.5절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i) 본 절은 면허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기관의 면허 기준 권한을 변경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주립 체육 위원회(Athletic Commission)

(2) 사립 고등교육국(Th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3) 캘리포니아주 경마 위원회(The California Horse Racing Board).

(j) 본 절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480.5. 면허 교부 신청: 수감의 경우

(a) 본 부에 규정된 모든 면허 교부 요건을 수감 중에 충족한 개인이 출소 시점에 면허를 신청했으며 수감 사유가 아닌 경우 면허를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수감 생활 중 면허 교부 요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신청자의 면허 신청 처리를 지연하거나 면허 교부를 거절할 수 없다.

(b) 본 절의 어떠한 내용도 면허 복권을 위한 청원에 적용하거나, 480절에 의거한 면허 거절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c) 본 절은 제2부 2장(1000절로 시작)에 언급된 법안에 따른 개인 면허 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481. 범죄 및 직업 적합성 기준

(a) 이 법전의 규정에 따른 각 위원회는 면허의 거절, 정지 또는 취소를 고려할 때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직무 또는 의무와 범죄 또는 그 행위의 실질적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b) 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직무 또는 의무와 실질적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범죄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 (2) 범죄를 저지른 날부터 경과한 연수.
- (3) 신청자가 면허를 취득하려는 직종 또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 대상

직종의 특성과 직무.

(c) 위원회는 482절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정법에 정해진 절차 또는 특정한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재할의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유죄 판결만을 근거로 혹은 유죄 판결 부분적 근거로 하여 면허 교부를 거절할 수 없다.

(d) 각 위원회는 본 절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직무 또는 의무와 범죄의 실질적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간략히 게시해야 한다.

(e) 본 절은 면허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기관의 면허 기준 권한을 변경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 주립 체육 위원회(Athletic Commission)
 - (2) 사립 고등교육국(Th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 (3) 캘리포니아주 경마 위원회(The California Horse Racing Board).
- (f) 본 절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482. 재할 기준

(a) 이 법전의 규정에 따른 각 위원회 다음의 경우에 재할을 평가하는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 (1) 480절에 따른 위원회가 면허 거절을 고려하는 경우.
- (2) 490절에 따라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고려하는 경우.

(b) 각 위원회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기준이 충족된 경우,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제시한 모든 재할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1)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선고받은 형량을 마침.

(2) 위원회는 재할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자가 갱생되었다고 판단함.

(c) 본 절은 면허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기관의 면허 기준 권한을 변경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 주립 체육 위원회(Athletic Commission)
- (2) 사립 고등교육국(Th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 (3) 캘리포니아주 경마 위원회(The California Horse Racing Board).

(d) 본 절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484.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

이 법전에 의거하여 면허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의 도덕성과 관련한 타인의 증언을 면허 교부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85. 면허 거절 시 절차

본 장 또는 496절에 따라 면허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 정부법 제2편 3부 1편 5장(11500절로 시작)에 따라 문제와 관련된 진술서를 보관하고 제출한다.

(b) 면허 신청이 거절된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거절을 통지한다.

(1) 거절 사유

(2) 거절 통지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의회를 요청한 경우, 정부법 제2편 3부 1편 5장(11500절로 시작)에 따라 심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단, 60일 이내에 심의회 요청이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심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거절 통지는 승인된 민사 소송의 소환 통지 방식이나 신청자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신청서 또는 기타 서류에 기재된 최근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된다. 우편 발송일에 우편 통지 행위가 완료된다.

486. 결정 또는 통지의 내용

위원회가 본 장 또는 496절에 따라 면허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485절의 (b) 항에 규정된 결정 또는 통지 방식으로 신청자에게 다음 통보해야 한다.

(a)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결정의 효력 발생일 또는 485절 (b) 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1년 후이다. 단, 위원회에서 더 빠른 날짜를 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더 늦은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 제출된 모든 합당한 재할 증거는 면허 재신청 시 고려된다. 위원회는 결정 또는 485절의 (b) 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482절에 따라 수립된 재할 관련 기준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487. 심의회 - 시기

신청자가 심의회를 요청한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가 서면으로 심의회 연기를 요청하거나 그에 동의하지 않는 한, 요청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심의회 사무국은 심의회 시행 시기를 최대 45일 연장할 것을 명령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제시될 경우 연장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시험 또는 면허 교부 시기 혐의에 연루된 경우엔 예외적으로 심의회 시행 시기를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명령이나 요청은 2회 이상 승인될 수 없다.

488. 심의회 요청

(a)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485절의 (b) 항에 따라 신청자가 요청한 심의회를 시행한 후 위원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승인한다.

(2) 신청자가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승인하거나, 즉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 취소를 유지하거나, 면허 정지가 포함될 수 있는 임시 규제 조건을 면허에 부과한다.

(3) 면허 교부를 거절한다.

(4) 면허의 거절 또는 면허의 승인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타 조치를 취한다.

(b) 본 절은 면허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기관의 면허 기존 권한을 변경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주립 체육 위원회(Athletic Commission)

(2) 사립 고등교육국(Th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3) 캘리포니아주 경마 위원회(The California Horse Racing Board).

(c) 본 절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489. 심의회 없이 신청 거절

480 또는 496절에 명시된 사유를 근거로, 면허 신청을 거부할 법적 권한이 있는 부서의 모든 기관은 과거 1년 이내에, 정부법 제2편 3부 1편 5장(11500 절로 시작)에 따라 절차가 시행된 후, 해당 기관이 동일한 신청자의 신청을 동일한 사유로 거절한 적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열지 않고도 해당 사유를 근거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3장 면허 정지 및 취소

490. 정지 또는 취소 사유

(a)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조치 외에,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가 교부된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직무 또는 의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근거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b)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a) 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관계없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면허 소지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범죄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교부된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직무 또는 의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c) 본 절에서 유죄 판결은 유죄 인정,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의 답변 후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 형법 1203.4절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 유예 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원회는 유죄 판결 확정 후 허용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 이 법률에서 주 의회는 Petropoulos 대 부동산국(200 6)142 Cal.App.4th 554의 판결로 인해 본 절의 적용이 불명확하며, 해당 소송의 판결에 따라 상당수의 법령 및 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주 소비자에게 잠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했다. 따라서 주 의회는 본 절이 위원회에서 면허 소지자를 규제하는 독립적 근거를 설정하며, 2008년 법령 33장에 따른 본 절의 개정이 기존 법률의 변경이 아닌 기존 법률의 공표임을 확인하고 선언했다.

490.5.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 불이행 시 면허 정지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자녀 양육비 명령이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족법 17520절에 따라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491.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절차

490절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사유로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정부법 11522절의 규정 사본을 과거 면허 소지자에게 발송.
- (b) 482절에 따라 수립된 재할 관련 기준의 사본을 과거 면허 소지자에게 발송.

492. 징계 조치 또는 면허 거절 시 약물 치료 프로그램의 효력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전환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차량법 제11부 12장 5조(23249.50항으로 시작)에 따른 알코올 및 약물 문제 평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도, 본 법전의 2부(500절로 시작) 또는 해당 부에 언급된 모든 법안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징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체포에 관한 기록으로 불법 행위의 증거가 기록될 수 있을지라도 직무상 불법 행위를 사유로 면허를 거절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본 절은 이 법전의 2부(500절로 시작) 또는 해당 부에 언급된 모든 법안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약물 전환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93. 비윤리적 범죄 유죄 판결 기록의 증거 효력

(a)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해당 면허 소지자의 자격, 직무, 의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국의 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 징계 조치를 시행하는 절차에서 범죄 유죄 판결 기록이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의 결정적 증거이자 유일한 증거이다.

(b) (1) 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직무 또는 의무와 실질적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범죄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 (B) 범죄를 저지른 날부터 경과한 연수.
- (C) 직업의 특성과 의무.

(2) 위원회는 재할의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유죄 판결의 종류만을 근거로 신청자를 단정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c) 본 절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면허’는 ‘자격증’, ‘허가증’, ‘권한’ 및 ‘등록증’을 포함한다.



(d) 본 절은 면허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기관의 면허 기존 권한을 변경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 주립 체육 위원회(Athletic Commission)
- (2) 사립 고등교육국(Th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 (3) 캘리포니아주 경마 위원회(The California Horse Racing Board).

(e) 본 절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494. 임시 정지 또는 제한 명령

(a) 위원회 또는 행정법 단독 판사는 (h) 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이 제출된 경우 면허를 일시 정지하거나 의무적인 체액 검사, 감독, 교정 교육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면허 제한을 부과하는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청원에는 다음 모든 사항을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 소지자는 이 법전의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연루되거나 면허가 교부된 활동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음.

(2) 면허 소지자가 면허 활동에 계속 참여하도록 허용하거나, 제한 없이 면허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할 경우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복지에 해가 될 수 있음.

(b) 1통지된 문제를 심의하기 전, 해당 문제가 대중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이 청원 및 증빙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면허 소지자에게 본 절에 규정된 임시 명령을 통지 없이 내릴 수 없다.

(c) (b)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임시 명령의 청원과 관련한 심의회를 최소 1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청원의 근거로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증빙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b) 항에 규정된 통지 없이 임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면허 소지자는 통지 없이 임시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원과 관련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임시 명령이 내려진 후 2일 이내에, 심의회 통지 및 청원의 근거가 되는 모든 증빙 서류가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심의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통지 없이 임시 명령을 내린 후 20일 이내에 심의회를 열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임시 명령이 해제되어야 한다.

(d) 임시 명령 청원과 관련한 심의회에서 면허 소지자는,

(1)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정부법 11523절에 규정된 사법 심사의 복사 비용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비용을 지불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절차의 기록을 입수할 수



있다.

(3) 진술서와 기타 증빙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

(4) 구두 변론을 할 수 있다.

(e) (h) 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또는 행정법 단독 판사는 진술 제출 후 5일 이내에(영업일 기준) 임시 명령 관련 청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절에 따라 임시 명령을 받는 데 필요한 증거 기준은 증빙 서류 기준보다 우선한다. 임시 명령이 사전 통지 없이 내려진 경우, 위원회는 해당 명령의 효력을 유지할지, 명령을 해제 또는 수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f) 위원회는 임시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발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지 없이 임시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기간은 통지된 심의회 이후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기산한다. 면허 소지자가 항변 통지서를 제출할 경우, 기관은 항변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진술 제출 후 5일 이내에 고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절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임시 명령이 해제된다.

(g) 민사소송법 1094.5절에 따라, 임시 명령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며 그에 대한 심리는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또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서만 실시될 수 있다. 임시 명령 심사는 위원회에서 임시 명령을 내릴 때 재량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결정으로 제한된다. 피고인 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임시 명령의 근거가 되는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확정된다.

(h) 위원회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임시 명령 청원에 대한 심의회를 행정 심의회 사무국의 행정법 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가 통지된 청원을 심의하는 경우, 행정법 판사는 심의회를 주재하고, 증거의 인정 및 배제를 결정하며, 법률 문제와 관련한 자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회 실시와 관련된 기타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법 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청원이 행정법 판사에게 위임된 경우, 단독 판사는 심의회 실시와 관련된 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행정법 단독 판사의 결정은 위원회에 제출될 때 최종 판결로 확정된다. 행정법 판사가 통지 없이 임시 명령을 내릴 경우, 통지된 심의회를 주재해야 한다. 단, 해당 판사가 주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행정법 판사가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임시 명령 청원과 관련한 행정법 단독 판사의 결정은 최종 판결이며, (g) 항에 따른

사법 심사만 받는다.

(i) (a) 또는 (b) 항에 따라 내려진 임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별도의 징계 조치 사유이며, (f) 항에 규정된 통지된 심의회의 일부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임시 명령 미준수 주장은 고발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임시 명령의 위반은 면허 소지자에게 임시 명령과 그 조건이 통지되었고, 위반 당시 명령이 발효되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확정된다. 고발에 대한 심의회에서 내려진 임시 명령 위반은 기관에서 최종 결정 심사의 일환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관의 임시 명령이 면허 소지자 사업 또는 전문업의 완전한 정지보다 약한 조치를 규정하고, 면허 소지자가 (f) 항에 규정된 고발에 대한 심의회 전에 임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기관은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하고 위반의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임시 명령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j) 유죄 인정,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의 답변 후 유죄 판결은 본 절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공증된 유죄 판결 기록은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다. 유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본 절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k) 본 절에 규정된 임시 명령은 다른 법 규정에 따른 금지 명령 구제를 요청할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며 해당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l) 위원회의 경우, 행정관이 임시 명령의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국 또는 프로그램의 경우, 상황에 따라 국장 또는 프로그램 행정관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m) 본 절에서 ‘위원회’는 22절에 명시된 모든 기관 및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관할 구역의 모든 연합 의료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 정골요법위원회(Osteopath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 및 주립 카이로프랙틱 면허 관리국(State Board of Chiropractic Examiners)을 포함한다.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 족부의학 위원회 또는 주립 체육 위원회에는 본 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94.5. 면허 소지자가 확인된 명단에 포함된 경우 기관의 조치, 정의, 징수 및 확인된 명단 정보의 배포, 시기, 통지,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의 이의제기, 해제 양식, 유관기관 협정, 수수료, 구제 수단, 문의 및 정보의 공개, 법 규정의 가분성

(a) (1) (2), (3), (4) 목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확인된 명단에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면허 발급, 효력 재개, 복권 또는 갱신을 거부하고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

(2)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확인된 명단에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 면허 발급, 효력 재개, 복권, 갱신 또는 거절과 관련하여 본 절에 기재된 내용은 차량관리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State Bar of California)는 확인된 명단에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면허 발급, 효력 재개, 복권 또는 갱신을 거부하고 면허를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관할권에 속하는 면허에 대한 본 절의 규정에서 임시 면허 발급, 발급, 효력 재개, 복권, 갱신의 거부 또는 면허 정지와 관련한 규정의 경우 ‘할 수 있다(may)’라는 표현이 ‘해야 한다(shall)’를 대체한다.

(4) 주류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은 확인된 명단에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면허 발급, 효력 재개, 복권 또는 갱신을 거부하고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

(b) 본 절의 목적상,

(1) ‘확인된 명단’이란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7063절 또는 19195절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 또는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서 제공한 고액 체납자 상위 500인의 명단을 의미한다.

(2) ‘면허’에는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서 발급하여 전문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등록증 또는 기타 허가증이 포함된다. ‘면허’에는 차량법 제6부 1장(12500절로 시작)에 따라 발급된 운전 면허증이 포함된다. ‘면허’에는 차량법 제3부(4000절로 시작)에 따라 발급된 차량 등록증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면허 소지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증으로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면허’에는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서 발급하여 전문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등록증 또는 기타 허가증으로 승인을 받은 개인을 의미한다.



(4)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101, 1000 또는 19420절에 등재된 모든 기관, 법무부, 보험국, 차량관리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 부동산국 및 면허, 자격증, 등록증의 발급을 통해 개인이 전문업과 직업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기타 기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차량관리국 또는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발급한 모든 자격증, 사업 또는 직업 관련 면허, 허가증, 면허증이 포함된다.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캘리포니아주 건설면허국(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은 포함되지 않는다.

(c) 조세형평국과 세무국은 각각 확인된 명단을 모든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된 명단에는 이름,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납세자 식별 번호, 확인된 명단에 명시된 개인의 가장 최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d)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조세형평국과 세무국에서 제공한 확인된 명단의 이름과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의 이름을 대조할 목적으로, 모든 신청자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연방 납세자 식별 번호를 수집해야 한다.

(e) (1) 각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조세형평국과 세무국에서 가장 최근에 제공한 확인된 명단에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등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확인된 명단 중 하나에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등재된 경우,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즉시 해당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 기관이 면허 발급 또는 갱신을 중지하거나 보류할 것임을 통보해야 한다. 사전 통지서는 확인된 명단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등록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가장 최근 주소지로,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우편 통지 행위는 민사소송법 1013절에 따라 완료되어야 한다.

(A)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신청자가 면허를 받을 자격을 갖춘 경우, 확인된 명단에 이름이 등재된 모든 신청자에게 90일간 유효한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B) 임시 면허의 90일 유효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임시 면허는 일반 면허 기간 중 1회만 발급되며, 임시 면허의 유효 기간은 일반 면허 기간의 최초 90일과 동일하다. 본 절의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만, 전체 유효 기간 또는 남은 기간의 면허를 발급 또는 갱신할 수 있다.



(c) 본 절에 의거하여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 신청, 면허 갱신이 거절된 경우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납부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f) (1)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본 절에 의거하여 (e) 항의 (2) 목에 명시된 사전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90일 이후, 120일 이내에 면허의 발급을 거절하거나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 단, (h) 항에 따라 주정부의 면허 발급 기관이 제한 해제서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행정절차법(4.5장(11400절로 시작)) 및 정부법 제2편 3부 1편 5장(11500절로 시작)의 행정 심판 규정은 면허의 거절, 정지, 갱신 거절 또는 본 절에 따른 임시 면허 발급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 건설면허국 외의 101절에 명시된 위원회 또는 사무국이 본 절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국에서 적절히 임시 면허를 발급하거나, 면허의 발급, 효력 재개, 복권, 갱신을 정지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g) 각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통지서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조세형평국의 확인된 명단에 이름이 등재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를 위해, 통지서에는 조세형평국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갱신 또는 면허의 효력 유지의 조건으로 조세형평국의 제한 해제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세무국의 확인된 명단에 이름이 등재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를 위해, 통지서에는 세무국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갱신 또는 면허의 효력 유지의 조건으로 세무국의 제한 해제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1) 통지서는 신청자가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면허를 받을 자격을 갖춘 경우,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e) 항 (2) 목의 세목 (A)에 규정에 따라 역일 기준 90일간 유효한 임시 면허를 발급할 것이며, 해당 기간 만료 시까지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의 제한 해제서가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제출되지 않으면 면허가 거절된다는 점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통지서는 본 절에 의거하여 정지된 면허의 경우 제한 해제서, 면허 복권 신청서 및 수수료가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제출될 때까지 정지 상태로 유지된다는 점을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또한 통지서는 본 절에 의거하여 신청이 거절되거나 면허가 정지된 경우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납부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점을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의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데 사용할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의 사본은 본 절에 따라 발송되는 모든 통지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h)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확인된 명단에 이름이 등재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으로 제한 해제를 적시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된 경우,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은 해당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과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제한 해제서를 즉시 발송해야 한다.

(1)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체납 세액을 납부하거나, 세입 및 조세법 6832절 또는 19008절에 규정된 체납 세액 납부를 위한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2)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e) 항 (2) 목에 명시된 사전 통지서를 수령한 후 45일 이내에 제한 해제 요청을 제출했으나,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제한 해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제한 해제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 및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 목의 규정에 따른 제한 해제 시기와 무관하게, 해제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 해당 면허가 정지된 경우,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착오로 면허 정지가 발생한 날짜로 소급하여 면허를 복권해야 하며, 해당 정지가 면허 기록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3)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란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에서 판단한 재정적 어려움을 의미하며,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체납 세액을 전혀 납부할 수 없고, 세입 및 조세법 6832절 또는 19008절에 규정된 세금 분할 납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정적 어려움이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는 판정 목적으로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에서 요청한 적절한 사업 및 개인 경비 관련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i)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는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과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의 통지에 성실하게 응하고, 90일 후 임시 면허증의 시효가 만료되면 면허 정지 효력이 발생하고,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에서 해당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할 시간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처리를 지체하여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에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의 제한 해제 요청의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제한 해제서 발급의 근거가 되며, 본 절에 따라 요구된 성실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의 통지에 성실히 응했으며 합당한 이유 없이 지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의 책임이다.

(j)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은 본 절에 따라 사용할 제한 해제 양식을 제작해야 한다.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체납 세액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h) 항의 (3) 목의 규정된 바와 같이 현재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입증하여 납세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에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에게 제한 해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관련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해제서를 전달해야 한다.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본 항에 따라 조세형평국과 세무국의 제한 해제서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제한 해제를 처리해야 한다.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은 제한 해제서 발급 이후 면허 소지자가 분할 납부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면허 소지자가 해당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제한 해제는 철회되어야 함을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이 정한 방식으로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과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세형평국 및 세무국은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서 본 항의 준수를 위한 자동화된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면허 소지자가 분할 납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이 정한 방식으로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서 해당 통보를 수령하면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정해진 날짜에 정지되며, 정지일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사실을 즉시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본 항에 따라 제한 해제서가 새로 발급될 때까지 면허는 정지 상태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k) 조세형평국 및 세무국은 본 절을 집행하기 위해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과 유관기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l)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해당 부서의 국장이나 이사회의 승인하에 본 절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면허 소지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는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본 절의 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절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서 부과하는 기타 수수료와 함께 적립되며, 연례 예산법의 지출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m) (h) 항에 명시된 절차는 본 절에 따른 임시 면허 발급 또는 면허 거절, 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행정적 구제 수단이다.

(n) 본 절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거절되거나 정지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 또는 본 절의 규정에 따라 임시 면허가 발급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면허 상태에 대해 문의할 경우, 해당 기관은 면허가 거절 또는 정지되거나 임시 면허가 발급된 사유는 해당 면허 소지자가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의 관련 법규 제7063절 또는 제19195절에 따른 고액 체납자 상위 500인의 명단에 등재된 것뿐이라고 응답해야 한다. 본 절에 따라 주정부 기관, 위원회 또는 부서에서 수집한 정보는 1977년 정보취급법(민법 제3부 4편 1.8조 1장(1798절로 시작))이 적용된다.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인터넷 웹사이트나 다른 간행물에서 본 절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거절 또는 정지되었거나 임시 면허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해당 기관은 면허가 거절 또는 정지되거나 임시 면허가 발급된 사유는 면허 소지자의 체납뿐이라는 사실을 면허 상태와 관련한 정보와 가까운 곳에 굵은 활자체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o) 주정부 기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본 절에 따라 제정한 규칙 또는 규정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3부 1편 3.5장(11340절로 시작))의 규칙 제정 규정에 의거하여 긴급 규정으로 도입될 수 있다. 해당 규정 도입은 치안, 보건 및 안전 또는 공공 복지의 즉각적 보존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규정은 주무장관에게 제출된 즉시 시행된다.

(p) 조세형평국, 세무국 및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적절한 경우, 본 절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q) (1)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나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 전 임직원 또는 전 대리인은 조세형평국 또는 세무국에서 입수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단, 본 절에 따라 면허 거절, 갱신 거절, 정지 또는 임시 면허 발급을 대중에 공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절에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절에 따라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본 항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가 본 절에 의거하여 변호사 회원 자격 정지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2) 본 절에 따른 면허의 정지, 갱신 거부 또는 임시 면허 발급은 미국국립 의료인 데이터뱅크(National Practitioner Data Bank) 보고 요건상 면허 거절이나 면허 소지자 징계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미국국립 의료인 데이터뱅크 또는 의료 윤리 및 보호 데이터뱅크(Healthcare Integrity and Protection Data Bank)에 보고되지 않아야 한다.

(3) 확인된 명단 등재가 취소되면,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기타 간행물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이 목의 규정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r) 본 절의 규정 또는 그 적용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효력이 없는 경우, 무효한 규정이나 또는 그 적용을 제외하면 효력을 발하는 본 절의 다른 규정 또는 그 적용에 그 무효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본 절의 규정은 분리 가능하다.

(s) 본 절에서 신청자에게 부여된 재심사 권리는 면허 소지자에게도 부여된다.



(t) 본 절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절에 규정된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의 면허 정지 관련 정책, 관행 및 절차는 가족법 17520절에 따른 면허의 정지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u) 본 절의 어떠한 규정도 캘리포니아주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체납 세액을 납부하기 전, 법원이 세금 징수를 재심의하고 세금의 징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v) 2012년 7월 1일부로 본 절의 규정은 세입 및 조세법의 7063절 또는 19195 절에 따라, 고액 체납자 상위 500인의 명단에 이름이 등재된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494.6. 노동법 위반 - 면허 관련 징계의 근거

(a)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면허 소지자가 노동법 제244절 (b) 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을 내리고,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인해 면허 소지자의 직원에게 미치는 피해와 통지서 수령 후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면허 소지자의 선의의 노력을 고려한 경우, 이 법전에 규정된 사업 면허는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b) (a)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소비자 보호국의 기관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면허 소지자가 노동법 244절의 (b) 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c) 근무 예정인 직원 및 현재의 직원이 보수를 받고 일하는 첫 번째 근무일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취업자격 증명서(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만으로, 고용주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없다.

**제4장
공개 질책**

495. 면허 또는 자격증의 정지나 취소의 근거가 되는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행위에 대한 공개 질책, 법적 절차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증을 발급할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은 면허 또는 자격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근거가 되는 행위에 대해 해당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할 수 있다. 공개 질책 또는 공개 질책 및 정지, 공개 질책 및 취소의 절차는 정부법 제2편 3부 1편 5장(11500절로 시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주 공중보건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해당 절차는 보건안전법 100171절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5장 시험의 보안

496. 면허 거절, 정지 또는 취소 사유

위원회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 시험의 부정에 관한 123절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유를 근거로 면허를 거절, 정지,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498. 면허 관련 징계 조치의 사유가 되는 사기, 기만, 허위 진술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사기, 기만 행위 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의적 허위 진술 또는 누락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해당 사유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499. 타인의 신청과 관련한 면허 소지자의 행위에 따른 면허 관련 징계 조치

위원회는 타인의 면허 신청을 돕기 위해 면허 소지자가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의적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해당 사유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미용 규정



BarberCosmo

Board of Barbering & Cosmetology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16편 제9부

2025년 1월까지 개정 사항 포함

정
부



제1조. 관리

900. “시설”

사업 및 전문업법 7346절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의 규정 및 이·미용법(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사업 및 전문업법 제3부 10장 (7301절로 시작))의 목적상, 개인 서비스 허가증(이하 ‘PSP’) 소지자가 고객을 만나기 위해 외부 시설, 건물, 건물의 일부로 이동하여 965.2절에 따라 승인된 서비스만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절의 목적상 PSP 소지자가 거주하거나 고용된 장소는 ‘외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및 7402.5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46, 7350, 7402.5절

904. 집행

(a)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16편 제9부에 속한 위원회 규정의 제12조에는 위원회의 ‘보건 안전 규칙’이 명시되어 있다.

(b) 시설이나 이동 설비차 면허 소지자 및 시설이나 이동 설비차의 책임자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해당 시설이나 이동 설비차에서 고용되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과 공동으로 해당 시설 또는 이동 설비차의 보건 안전 규칙을 시행하고 유지해야 한다.

(c) 면허를 교부받은 모든 이발사, 미용 전문가, 헤어스타일리스트, 피부미용사, 매니큐어사,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강사 또는 견습생은 개인적으로 보건 안전 규칙을 시행하고 유지해야 한다.

(d) 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하고 이발사, 미용 전문가, 헤어스타일리스트, 피부미용사, 매니큐어사 또는 전기분해요법 시술사의 서비스를 시행하는 모든 사람은 위원회의 공식 담당관이 요청한 경우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적절한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운전 면허증 또는 주정부, 연방 정부, 기타 인정되는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여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e)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의 사유가 된다.

(f) 행정관 및 위원회의 공식 담당관은 시설, 이동식 장치, 교육 시설내의 모든 방, 벽장, 캐비닛, 서랍, 컨테이너, 이동식 또는 고정식 보관, 전시용 설비를 포함하여 교육 시설의 모든 구역에 출입하여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13, 7316, 및 7404절



905. 소비자를 위한 정보성 통지문 게시

승인된 교육 시설 소유주와 인가된 시설의 소유주는 이 규정에 참고 문헌으로 포함된 ‘소비자를 위한 통지문(BBC-CP01(2/2017))’ 사본을 교육 시설 및 시설의 접수대 인근에서 눈에 잘 띄도록 게시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129(e), 7404절

제2조. 시험 응시 자격

909. 교육 증명서

(a) 신청자가 시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주의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기재한 모든 시험 신청서는 그 교육의 이수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b) 이 절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증명서는 "교육 증명서 문서"(양식 #F-BBC-05(신규 06/2024))를 제목으로 한 완성된 양식이어야 하며 참조를 위하여 여기에 통합된다. 이 교육 증명서는 신청자가 자격 교육을 완료한 교육 시설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사업 및 전문업법 다음 각절 7321, 7321.5, 7322, 7324, 7326, 7330, 7331, 7337, 7362.5, 7363, 7364, 7365, 7367 및 7391절.

910. 타주 신청자 또는 군복무 신청자

(a) 타주에서의 실무 행위,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인가 교육 시설에서 보충 교육 또는 그러한 교육의 조합을 근거로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자격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타주 또는 다른 국가에서의 실무 행위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양식(Form #03E-145, 경력 진술서(Affidavit of Experience)-Form C, Rev1/91)을 사용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해당 실무 행위를 확인하는 진술서 및 실무 행위를 수행한 주 또는 국가에서 면허가 필요했던 경우, 그러한 행위에 종사할 수 있는 면허를 신청자가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인증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타주 또는 다른 국가의 교육 시설에서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이수한 후 캘리포니아주에서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양식(Form #03B-144, 타주 미용 교육 시설 교육 기록(Out-of-State Beauty School Training Record)- Form B, Rev. 8/94)을 사용하여 과목별로 이수한 교육 및 훈련 시간과 그 시기를 입증하는 교육 시설 또는 훈련 시설의 인증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캘리포니아주의 인가된 교육 시설에서 이수한 보충 교육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는 과목별로 이수한 교육 시간을 입증하는 해당 교육 시설의 인증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 사업 및 전문업법 제3부 10장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고용된 시험 신청자는 고용을 확인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인증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 수행한 실무 경력을 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c) 미군 복무중 해당 교육, 직업 훈련, 또는 경력을 쌓은 시험 신청자는 평가를 위해 군 경력 인증서(V-Met)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기록을 시험 신청자의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증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35, 7321, 7321.5, 7324, 7326, 7330, 7331, 7337절.

제3조. 견습

913. 견습생 교육 프로그램 승인

(a) 이발, 미용, 전기분해요법, 피부 관리 또는 네일케어 견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공동 견습 위원회 또는 고용주나 노동자 일방의 견습 위원회 또는 개인 고용주를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라고 한다.

(b) 이발, 미용, 피부 관리, 네일케어 또는 전기분해요법의 견습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로 위원회 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위원회의 견습 프로그램 승인을 위한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견습 프로그램 과목을 명시한다. 개인 고용주 또는 프로그램 제공자가 개인이 아닐 경우 조직의 책임자가 견습 승인 요청서에 서명해야 한다.

(2) 캘리포니아주 견습 위원회(California Apprenticeship Council)에서 프로그램 제공자가 견습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3) 본 조에 명시된 견습 규정의 준수를 입증하는 교육 프로그램안의 상세한 개요를 제출한다.



(4) 프로그램 제공자와 견습생 간의 계약서(이하 ‘견습 계약’) 사본을 제출한다. 견습 계약은 1939년 ShelleyMaloney 견습 노동 기준법(노동법 3070 절 이하 참조)의 조항과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 본 절의 (b) 항에 따라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는 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위원회는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 승인을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승인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혹은 신청서의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으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신청서에서 누락된 정보가 위원회에 다시 제출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정보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판단해야 한다.

(2) 신청서의 일부 정보가 여전히 누락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정보 접수 후 5일 이내에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 위원회는 완전한 신청서 접수 후 35일 이내에 신청자가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f) 본 절의 입안 전 2년간 위원회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볼 때,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미용 위원회가 승인서 교부를 결정할 때까지 견습 프로그램의 승인 요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최소, 중간, 최대 값은 다음과 같다.

- (1) 최소: 1일
- (2) 중간: 15일
- (3) 최대: 48일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및 정부법 15376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3절, 노동법 3070, 3078절 및 정부법 15376절.

913.1. 승인 취소: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

(a) 위원회는 법률 규정과 이·미용법(사업 및 전문업법 7301절 이하 참조)의 규정에 따라, 견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b) (1)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절차는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유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반의 내용을 기술하고,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예비 판결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2) 적절한 경우, 사유 통지서에는 위반을 해소할 합리적인 시간을 정하는 해소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프로그램 제공자가 명시된 시간 내에 해소 명령을 따를 경우, 위원회는 사유 통지서를 철회해야 한다.

사유 통지서의 징계 명령이나 해소 명령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해당 위반의 심각성과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의 견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견습생에 대한 영향, 공중에 대한 영향,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가 보여준 선의, 과거 위반 이력 등 요소를 고려하여 명령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c) 사유 통지서는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가 해당 통지서의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심의회를 요청하려는 경우, 사유 통지서가 제공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행정관에게 서면으로 심의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본 절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가 요청되지 않은 경우, 사유 통지서의 명령은 해당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d) 사유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심의회는 위원회가 프로그램 제공자의 심의회 요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위원회(board)의 선정에 따른 위원회(committee)가 해당 심의회를 시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종료 시까지 심의 결과,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서면 판결을 준비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해당 판결은 심의회 종료 후 45일 이내에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3절.

914.1. 견습 신청서 접수, 신청 자격

견습 면허 신청자가 이전에 특정 분야의 면허 시험에 지원했으며 응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신청자는 동일 분야의 견습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4절

914.2. 견습 신청서 접수, 재등록

- (a) 견습 기간은 2년이다. 견습생이 견습 프로그램 도중 등록을 취소한 경우,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는 등록 취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b) 견습생이 2년 후에도 필수 교육 시간 3,200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본 조의 923절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 취소로 통보되며 견습 면허가 반납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한번 재등록할 수 있다. 견습 프로그램에 2회 등록 후, 신청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4절

915. 관련 교육

- (a) 위원회에서 승인한 모든 견습 프로그램은 관련된 실무 교육 및 강의로 구성되어야 한다.
- (b) 이발사 견습생을 위한 관련 교육은 2년 동안 최소 216시간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중 최소 144시간은 이론, 최대 72시간은 선택 교육으로 구성될 수 있다. 선택 교육은 72시간은 강의, 세미나 또는 이발 관련 시범 교육으로 실시될 수 있다. 선택 교육은 과정 수수료 증명서 또는 등록 기록을 통해 인증된다.
- (c) 미용, 피부 관리, 네일케어 또는 전기분해요법 견습 프로그램의 관련 교육은 2년 동안 최소 220시간의 강의를 제공해야 한다. 강의 시간에 포함되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 (1) 미용 견습의 관련 교육에는 미용과 관련된 다음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목: 미용 화학, 보건 안전 및 위험 물질, 전기 이론, 소독 및 위생, 세균학, 해부학 및 생리학, 습식 헤어스타일링, 가열식 헤어스타일링, 파마, 화학적 스트레이트닝, 모발 커트, 염색 및 탈색, 두피 및 헤어 트리트먼트, 페이스, 눈썹 손질 및 제모, 메이크업,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기술.
 - (2) 피부 관리 관련 교육에는 피부 관리와 관련된 다음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목: 미용 화학, 보건 안전 및 위험 물질, 전기 이론, 소독 및 위생, 세균학, 해부학, 생리학, 피부 분석 및 피부 상태, 페이스, 눈썹 손질 및 제모, 메이크업.



(3) 네일케어 관련 교육에는 네일케어와 관련된 다음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목: 미용 화학, 보건 안전 및 위험 물질, 소독 및 위생, 세균학, 해부학 및 생리학, 수성 및 오일 매니큐어, 손과 팔 마사지, 전체 페디큐어, 인조네일 부착.

(4) 전기분해요법 관련 교육에는 전기분해요법과 관련된 다음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목: 보건 안전 및 위험 물질, 소독 및 위생, 살균, 세균학, 해부학 및 생리학, 전기, 전기분해, 열분해, 고주파 및 갈바닉 전류.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3, 7334절

916. 교육 시간 및 일정

(a) 사업 및 전문직법 7335절에 명시된 ‘2년’은 최소 3.200시간의 견습 기간을 의미한다. 전일제 견습이란 승인된 프로그램에서 주당 32시간 이상 고용되어 교육을 받는 것이다. 하루에 8시간 30분을 초과하거나 일주일에 5일을 초과하는 시간 학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대 교육 시간은 주당 42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b) 2년제 견습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견습 면허 교부로 시작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사업 및 전문업법 7333, 7334, 7345절

917. 견습생 예비 교육

사업 및 전문업법 7334절에 명시된 견습생 예비 교육의 최소 시간은 위원회의 법률 및 규정, 기본적인 고객 보호 및 위생, 소독 절차에 관한 교육 39시간이다. 견습생 면허 신청자는 견습생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견습생 예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4절

918. 견습생 교육 강사

(a) 면허 소지자라도 소지한 면허에 견습생 면허의 행위 범위가 포함되지 않는 한, 견습생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

(b) 면허 소지자는 한 번에 최대 2명의 견습생을 감독할 수 있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2, 7336절

919. 위원회에서 승인한 강사 및 시설

(a) 견습생 교육을 담당하려는 면허 소지자는 견습생을 고용하거나 교육하기 위해 앞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시설이 공동 소유권하의 여러 지점에서 견습생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은 여러 지점의 교육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형 체인점, 개인 소유의 여러 시설, 프랜차이즈 그룹 또는 파트너십 등이 공동 소유권에 해당한다. 강사 및 시설 승인 신청 시 위원회에서 제공한 양식(Form # 35A -03, 인가된 견습생 면허 및 강사, 시설 승인을 위한 신청서(제기되어 for Licensure as a Licensed Apprentice and for Approval of Trainers and Establishments), Rev. 5/94)을 사용해야 한다.

(1) 공동 소유권하의 여러 지점에서 견습 교육에 참여하려는 시설은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시설 이름, 위치, 위원회 교부 면허 번호, 책임자 및/또는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b) 견습생 강사 승인의 자격 요건:

(1)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서 교부하여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2) 면허 소지자는 본인을 대상으로 보류 중인 중인 징계 조치가 없고, 위원회 징계 조치로 임시 규제를 받는 중이 아니며, 견습생 강사로 지원하기 직전 2년 이내에 과거의 징계 조치로 임시 규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3) 480절의 거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4) 사업 및 전문업법 제3부 10장 12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 미납 벌금이 없어야 한다.

(c) 견습생은 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시설 승인은 (a) 항에 명시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d) 시설 승인의 자격 요건:

(1) 시설은 위원회에서 교부하여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2) 시설은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보류 중인 중인 징계 조치가 없고, 위원회 징계 조치로 임시 규제를 받는 중이 아니며, 시설 승인을 신청하기 직전 2년 이내에 과거의 징계 조치로 임시 규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3) 480절의 거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4) 사업 및 전문업법 제3부 10장 12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 미납 벌금이 없어야 한다.

(5) 시설이 공동 소유권하의 여러 지점에서 견습생 교육에 참여할 경우, 견습생 고용과 관련한 지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e) 위원회는 신청서(Form #35A-03, 인가된 견습생 면허 및 강사, 시설 승인을 위한 신청서, Revised 5/94)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견습생 강사 또는 견습 시설로 참여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신청서가 완전한지 혹은 신청서의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으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신청서에서 누락된 정보가 위원회에 다시 제출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정보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판단해야 한다.

(2) 신청서의 일부 정보가 여전히 누락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정보 접수 후 5일 이내에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f) 위원회는 완전한 신청서 접수 후 35일 이내에 신청자가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g) 본 절의 입안 전 2년간 위원회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볼 때,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미용 위원회가 면허 교부를 결정할 때까지 승인 요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최소, 중간, 최대 값은 다음과 같다.

- (1) 최소: 1일
- (2) 중간: 15일
- (3) 최대: 48일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2, 7333, 7334, 7336절

920. 견습생 교육의 기록

견습생 교육 강사는 요청 시 견습생의 근무 일지 사본을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무 일지에는 고용된 견습생의 이름, 견습생 근무일, 근무 시간 및 근무일에 수행한 업무 과정, 강사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3, 7334절



921. 이발사 견습 과정 커리큘럼

(a) 이·미용법 7316절에 따라 이발사 견습 과정에 등록된 견습생을 위한 커리큘럼은 3,200시간의 기술 교육과 이발사의 모든 실무를 포함하는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본 절의 목적상, 기술 교육은 시범, 강의, 강의 중 참여 또는 시험을 통한 교육을 의미하며, 실습은 학생이 다른 사람이나 마네킹을 대상으로 전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 교육은 실습을 수행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기술 교육 및 실습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헤어드레싱 기술 및 실습 교육 2,800시간

헤어드레싱 교육의 필수 과목에서 과목별로 이수해야 할 기술 교육 및 실습의 최소 시간은 다음과 같다.

헤어스타일링(기술 교육 95시간, 실습 450회)

헤어스타일링 과목은 다음 기술과 시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모발 분석, 샴푸, 핑거 웨이브, 핀 컬링, 콤아웃, 스트레이트닝, 웨이브 처리, 가열식 빗이나 고데기를 사용한 컬링, 드라이 스타일링.

파마 및 화학적 스트레이트 시술(기술 교육 40시간, 실습 120회)

파마 및 화학적 스트레이트 시술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모발 분석, 산성 펴제 및 알칼리성 펴제로 파마, 수산화나트륨 및 기타 염기성 용액의 사용 등 화학적 스트레이트 시술.

염색 및 탈색(기술 교육 65시간, 실습 50회)

염색 및 탈색 과목은 다음 기술과 시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반영구 염색, 준영구 및 임시 염착제를 사용한 염색 포함): 모발 분석, 소인 및 스트랜드 검사, 안전 예방 조치, 포뮬러 혼합, 틴팅, 탈색, 하이라이트 및 톤다운 염색, 염료 제거제 사용.



헤어 커트(기술 교육 20시간, 실습 300회)

헤어 커트 과목은 다음 기술과 시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젓거나 마른 모발의 커팅을 위한 가위, 면도기(셰이퍼), 전기 클리퍼/
 트리머, 숄(테이퍼링) 가위 사용.

(2) 면도 기술 교육 및 실습 교육 200시간

면도 교육의 필수 과목에서 과목별로 이수해야 할 기술 교육 및 실습의
 최소 시간은 다음과 같다.

준비와 실행(기술 교육 100시간, 실습 40회)

준비와 실행 과목은 다음 기술과 시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면도를 위해 고객의 수염 정리, 고객의 피부 상태 점검, 면도 기술을
 사용한 면도, 페이스 서비스 후 애프터셰이브 소독제 도포, 얼굴 마사지
 및 크림을 도포한 마사지.

(3) 보건 안전 기술 교육 200시간

보건 안전 교육의 필수 과목에서 과목별로 이수해야 할 기술 교육의 최소
 시간은 다음과 같다.

법률 및 규정(기술 교육 20시간)

법률 및 규정의 과목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미용법
 및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

보건 안전 고려 사항(기술 교육 45시간)

화학약품 교육 및 시설의 보건 문제를 비롯한 보건 안전/위험 물질, 재료
 안전 데이터 시트,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 화학적 상해 예방, 보건 및
 안전 법률과 관련 부처, 세균학, HIV/AIDS, B형 간염 등 전염병의 예방.

소독 및 위생(기술 교육 20시간)

소독 및 위생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고객과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는 적절한 절차,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적절한 살균 절차를 포함하는 소독 및 위생 교육.



전체 교육 과정에서 소독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며, 모든 기구와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부학 및 생리학(기술 교육 15시간)

해부학 및 생리학 과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c) 위원회는 교육 시설에서 직업 윤리, 영업 기술, 고객 자료 관리, 에티켓, 부스 임차인, 독립 계약자, 직원, 고용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세무 정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34(f)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6(a), 7321.5(d)(2), 7362(b), 7362.5(a), 7389절 및 노동법 3078절.

921.1. 미용 견습 과정 커리큘럼

(a) 이·미용법 7316절에 따라 미용 견습 과정에 등록된 견습생을 위한 커리큘럼은 3,200시간의 기술 교육과 미용 기술을 포함하는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본 절의 목적상, 기술 교육은 시범, 강의, 강의 중 참여 또는 시험을 통한 교육을 의미하며, 실습은 학생이 다른 사람이나 마네킹을 대상으로 전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 교육은 실습을 수행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기술 교육 및 실습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헤어드레싱 기술 및 실습 교육 2,600시간

헤어드레싱 교육의 필수 과목에서 과목별로 이수해야 할 기술 교육 및 실습의 최소 시간은 다음과 같다.

헤어스타일링(기술 교육 95시간, 실습 450회)

헤어스타일링 과목은 다음 기술과 기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모발 분석, 샴푸, 핑거 웨이브, 핀 컬링, 콤파웃, 스트레이트닝, 웨이브 처리, 가열식 빗이나 고데기를 사용한 컬링, 드라이 스타일링.

파마 및 화학적 스트레이트 시술(기술 교육 40시간, 실습 210회)



파마 및 화학적 스트레이트 시술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모발 분석, 산성 펴제 및 알칼리성 펴제로 파마, 수산화나트륨 및 기타 염기성 용액의 사용 등 화학적 스트레이트 시술.

염색 및 탈색(기술 교육 65시간, 실습 215회)

염색 및 탈색 과목은 다음 기술과 시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반영구 염색, 준영구 및 임시 염착제를 사용한 염색 포함): 모발 분석, 소인 및 스트랜드 검사, 안전 예방 조치, 포물러 혼합, 틴팅, 탈색, 하이라이트 및 톤다운 염색, 염료 제거제 사용.

헤어 커트(기술 교육 20시간, 실습 300회)

헤어 커트 과목은 다음 기술과 시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젓거나 마른 모발의 커팅을 위한 가위, 면도기(셰이퍼), 전기 클리퍼/트리머, 숄(테이퍼링) 가위 사용.

(2) 보건 안전 기술 교육 200시간

보건 안전 교육의 필수 과목에서 과목별로 이수해야 할 기술 교육의 최소 시간은 다음과 같다.

법률 및 규정(기술 교육 20시간)

법률 및 규정의 과목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미용법 및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

보건 안전 고려 사항(기술 교육 45시간)

보건 안전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화학적 조성 등을 다루는 미용화학, 화장품의 용도, 네일, 헤어, 피부 관리 준비. 기초 화학적 구성 성분의 이해, 화학적 박피,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 화학약품 교육 등 위험 물질 교육, 시설의 보건,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 화학적 상해 예방, 인간공학, 미용 전기학 이론, HIV/AIDS, B형 간염 포도상구균 감염 등 전염병의 예방, 재료 안전 데이터 시트.



소독 및 위생(기술 교육 20시간)

소독 및 위생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고객과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는 적절한 절차를 포함하는 소독 및 위생 교육.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적절한 살균 절차.
 전체 교육 과정에서 소독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며, 모든 기구와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부학 및 생리학(기술 교육 15시간)

해부학 및 생리학 과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3) 피부미용 기술 교육 및 실습 교육 200시간

피부미용 교육의 필수 과목에서 과목별로 이수해야 할 기술 교육 및 실습의 최소 시간은 다음과 같다.

손이나 전동 기구를 사용한 페이스, 화학적 페이스 시술(기술 교육 25시간, 실습 65회)

손이나 전동 기구를 사용한 페이스, 화학적 페이스 시술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클렌징, 과학적 처리, 팩 및 마스크 등 손을 사용한 페이스 시술. 전기적 치료요법, 피부관리용 광선, 페이스 및 피부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동 기구를 포함하는 전동 페이스 시술. 단, 신체 또는 얼굴 근육의 수축을 위해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화학적 페이스 시술에는 화학적 박피, 팩, 마스크 및 스크럽이 포함된다. 교육 시 미용 목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표피라고 불리는 죽은 세포, 즉, 피부의 최상층뿐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모든 실습은 박피에 관한 992절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눈썹 미용 및 메이크업(기술 교육 25시간, 실습 55회)

눈썹 미용 과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왁스, 전동 및 수동 핀셋, 불필요한 체모 제거용 제모제 사용을 포함하는 눈썹 모양 손질과 제모술.



메이크업 과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피부 분석, 풀 메이크업 및 수정 메이크업, 속눈썹 및 눈썹 틴팅, 인조 속눈썹 부착.

(4)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기술 교육 및 실습 교육 200시간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교육의 필수 과목에서 과목별로 이수해야 할 기술 교육 및 실습의 최소 시간은 다음과 같다.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기술 교육 10시간, 실습 34회)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과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손톱 분석을 포함한 수성 매니큐어 및 오일 매니큐어, 손/발 및 팔/발목 마사지.

인조 손톱 및 랩(기술 교육 25시간, 실습(네일) 120회)

아크릴 재질 등 인조 손톱: 액상 및 분말형 브러쉬온, 인조 네일 팁, 네일랩, 복구.

(c) 위원회는 교육 시설에서 직업 윤리, 영업 기술, 에티켓, 기록 보존, 고객 서비스 기록 등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34(f)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6(b), 7321(d)(5), 7362(b), 7362.5(b), 7389절 및 노동법 3078절.

921.2. 전기분해요법 견습 과정 커리큘럼

(a) 이·미용법 7316절에 따라 전기분해요법 견습 과정에 등록한 견습생을 위한 커리큘럼은 3,200시간의 기술 교육과 전기분해요법 기술을 포함하는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본 절의 목적상, 기술 교육은 시범, 강의, 강의 중 참여 또는 시험을 통한 교육을 의미하며, 실습은 학생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전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 교육은 실습을 수행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기술 교육 및 실습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전기분해요법, 열분해요법, 혼합/이중요법 및 전기학 기술 교육 및 실습 교육 400시간
 전기분해요법, 열분해요법, 혼합/이중요법 및 전기학 교육의 필수 과목에서 과목별로 이수해야 할 기술 교육 및 실습의 최소 시간은 다음과 같다.

전기분해요법(기술 교육 45시간, 실습 120회)

전기분해요법 과목은 단침 및 복침 삽입 기술을 이용한 제모, 갈바닉 전류 사용, 피부 반응, 아나포레시스, 카타포레시스, 전기분해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 병력 평가 학습을 다룬다.

열분해요법(기술 교육 45시간, 실습 120회)

열분해요법 과목은 자동 및 수동 열분해요법 장비를 이용한 제모, 삽입 기술, 고강도 및 저강도 고주파 사용, 피부 반응, 열분해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 병력 평가 학습을 다룬다.

혼합/이중요법(기술 교육 45시간, 실습 120회)

혼합/이중요법 과목은 고주파와 갈바닉 전류의 조합을 이용한 제모, 삽입 기술, 피부 반응, 아나포레시스, 카타포레시스, 혼합/이중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 병력 평가 학습을 다룬다.

전기학(기술 교육 15시간)

전기학 과목은 전류의 성질, 전기 장비 작동 원리, 전기 장비 작동 시 준수해야 할 다양한 안전 예방 조치 및 장비의 적절한 관리법을 다룬다.

(2) 보건 안전 기술 교육 200시간

보건 안전 교육의 필수 과목에서 과목별로 이수해야 할 기술 교육의 최소 시간은 다음과 같다.



법률 및 규정(기술 교육 20시간)

법률 및 규정의 과목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미용법 및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

보건 안전 고려 사항(기술 교육 45시간)

보건 안전 과목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균학, HIV/AIDS, 간염, 헤르페스, 포도상구균 감염, 기타 전염병 및 그 예방법, 인간공학, 전기 안전, 재료 안전 데이터 시트.

살균(기술 교육 25시간)

살균 과목은 고객과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는 적절한 절차,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 소독 방법의 학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내용을 다룬다. 전체 교육 과정에서 살균 및 위생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며, 모든 기구와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살균 시간과 날짜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한다.

해부학 및 생리학(기술 교육 25시간)

해부학 및 생리학 과목은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피부학, 피부 및 모발 분석, 순환계, 신경계 및 내분비계에 대한 학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내용을 다룬다.

(c) 위원회는 교육 시설에서 직업 윤리, 상담, 시술 전후 관리, 영업 기술, 에티켓, 기록 보존, 고객 서비스 기록, 비즈니스 기술, 독립 계약자, 직원, 고용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세무 정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34(f)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6(f), 7330(d)(3), 7362(b), 7366(b), 7389절 및 노동법 3078절.

922. 전과/변경

견습생은 프로그램 제공자의 승인된 관련 교육반에서, 다른 교육반으로 전과를 요청하거나 승인된 시설 및 강사에서 다른 시설과 다른 강사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견습생과 프로그램 제공자는 전과/변경 후 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3, 7336절

923. 면허 반납

견습생은 면허 시험에 합격하거나, 견습 교육 프로그램 등록을 취소한 경우 혹은 견습 프로그램 등록이 만료된 경우 이전에 발급된 견습생 면허와 신분증 사진을 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5절.

924. 견습생 교육 프로그램 수수료

(a) 견습 프로그램을 수수료하거나 중단할 경우,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는 견습생에게 견습 수수료 증명서 또는 중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강사, 견습생 및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는 견습 수수료 또는 중단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b) 견습 수수료 또는 중단 증명서는 프로그램 제공자가 작성하며,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교육 과정 이름.
- (2) 견습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생년월일.
- (3) 견습 면허 번호 및 사회보장번호.
- (4) 프로그램 제공자 이름 및 위원회에서 부여한 제공자 코드.
- (5) 이수한 총 관련 교육 시간.
- (6) 견습생 교육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날짜.
- (7) 견습생이 이수한 과목별로 정해진 실단 교육(OJT)의 총 시간.
- (8) 위원회 승인 견습 프로그램 이전에 받은 모든 교육.
- (9) 견습생이 커리큘럼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진술.
- (10)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서류의 모든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확인하는 진술서. 해당 진술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We, the undersigned,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at al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true and correct.” (우리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여기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진실이며 틀림이 없음을 아래 서명하여 약속합니다.)

(c) 견습생이 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견습 수수료 증명서 및 기타 모든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21, 7321.5, 7324, 7326, 7330, 7333, 7337절.



925. 강사의 책임에 대한 선언문

견습 과정을 실시하는 시설의 소유주는 견습생 강사인 직원에게 견습생 강사로서 해당 직원의 책임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강사 책임 선언문에는 노동법 3078절의 (a), (b), (c), (d), (e) 항에 명시된 조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강사 책임 선언문은 시설 소유주와 견습생 강사가 서명하여 시설 구내에 보관해야 한다. 강사 책임 선언문은 요청 시 위원회 또는 위원회 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2, 7333, 7336절

926. 견습 사전 교육 학점

(a) 캘리포니아주 견습 사전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교육을 기반으로, 사업 및 전문업법 7321~7330절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려는 견습생은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사전 교육은 위원회가 승인한 견습 프로그램에서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 (2) 사전 교육은 위원회가 승인한 견습 프로그램에 재등록하기 직전 3년 이내에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 (3) 사전 교육 학점이 부여되기 전 견습, 강사, 교육 시설 대표 및 프로그램 제공자가 서명하여 유효한 수수료 또는 중단 증명서가 등록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4) 3,200시간의 견습 교육 과정을 마치면, 시험 응시 신청서와 함께 각 등록 기간의 유효한 수수료 또는 중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이수한 교육 학점을 취득하려면 견습생은 승인된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서 성실(good standing)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부적절한 활동으로 해고되지 않았다.
- (2) 프로그램 제공자가 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견습생 면허를 반납했다.

915 CCR절에 따라 관련 교육 및 보충 교육 수업에 출석했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3, 7334, 7345절



제4조. 시험

931. 통역사

(a) 이발사, 미용사, 헤어 스타일리스트, 피부미용사, 매니큐어리스트 또는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시험 지원자는 10학년 수준의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또는 간체 중국어로 말하고, 읽고, 쓸 수 없는 경우 지원자 및/또는 통역사가 해당되는 경우 하위절 (c), (d), (f), (h), (i) 및 (j)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면 시험 중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다.

(b) 신청자가 지명한 사람이 통역사로 도움을 주도록 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려면 신청자는 "통역사 사용 신청서"(양식 #03A-126(신규 06/2024)) 라는 제목의 완성된 양식을 심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본원에 참조로 포함됩니다.

(c) 통역사는 영어와 신청자의 모국어에 능통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g) 통역사는 모든 시험에서 한 사람이 이(2)년에 한 번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 장애인 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권리가 있으며, 의학적으로 인증된 서류를 구비한 모든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가 제공된다.

(f)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역사 역할을 할 수 없다.

(1) 15세 미만인 사람.

(2) 현재 이발, 미용학, 헤어스타일링, 전기분해용법시술, 손톱 관리, 또는 피부 관리를 전공하는 자 또는 기 졸업한 사람.

(3) 캘리포니아주 또는 다른 주에서 이발, 미용, 헤어스타일링, 전기분해용법시술, 손톱 관리 또는 피부 관리 분야의 운영자 또는 강사로 현재 또는 과거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

(4) 현재 또는 과거에 이발사, 미용사, 피부미용사, 손톱 관리사 또는 전기분해요법 견습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

(5) 이발, 미용, 전기분해요법, 헤어스타일링, 손톱 관리 또는 피부 관리 학교의 현재 또는 과거 소유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g)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통역사로 근무한 날짜로부터 일(1)년 동안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 이발, 미용학, 헤어스타일링, 전기분해용법시술, 손톱 관리 또는 피부 관리에 대한 면허를 위원회에 신청할 자격이 없다.



(h) 위원회가 본 절에 따라 제공된 정보 중 하나라도 중대한 거짓이라고 판단할 경우, 신청자의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i) 다른 언어로 통역하지 않고 시험지를 신청자에게 읽어주기만 하는 사람은 지원자와 함께 시험에 참석할 수 없다.

(j) 시험 중에 통역사가 신청자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통역 대신에 기타 중요한 도움을 제공한다고 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통역사 자격이 박탈되고 신청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8 및 7340절

932. 시험의 합격 점수

(a)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구성된다.

(b) 지원자는 필기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얻어야 한다. 위원회는 절대 평가 방식을 사용하며, 위원회와 위원회의 시험을 주관한 계약업체의 감독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의 권고를 기준으로 합격 점수를 결정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38, 7340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38 및 7340절

제5조. 이동 설비차

937. 면허 교부 및 운영

(a) 이동 설비차 운영 면허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008) 이동 설비차 면허 신청서"라는 제목의 완성 양식(양식 #03A-202(신규 06/2024)),이 참조용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998 절에 명시된 환불 불가 신청 수수료, 998 절에 명시된 최초 검사 및 면허 수수료, 사업 및 전문업법 7355(b)절에 따라 요구되는 증거, 진술서 또는 문서 등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이·미용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보건 안전 규칙(본 규정의 제12조에 명시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동 설비차에도 적용된다.

(c) 모든 보관 캐비닛 문에는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한다.

(d) 보관 캐비닛에 보관하지 않는 모든 장비는 이동 설비차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e) 이동 설비차가 이동 중일 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f)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이동 설비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 또는 승강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g) 이동 설비차의 소유자는 이동 설비차로 사용되는 차량 운행과 관련한 모든 지역 및 주, 연방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h) 요청 시 위원회의 공식 담당관에게 날짜와 장소, 서비스 시간을 표시한 이동 일정표를 제공해야 한다.

(i) 위원회는 이동 설비차 운영 면허 신청서가 접수된 후 신청서가 완전하여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또는 신청서의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으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문서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j) 완료된 신청서의 접수 통지일로부터 역일 기준 칠(7)일 이내에 사업 및 전문업법 7355(a) 절에 따라 최종 승인을 내리기 위해 신청자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담당관과 이동 설비차 점검 일정을 잡으면 해당 일정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다. 신청서가 불완전하고 신청자가 사업 및 전문업법 7345절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7345절의 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자에게 최초 검사 및 허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k) 최종 승인을 위한 결정은 사업 및 전문업법 7345, 7357(b) 절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57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45, 7355, 7357절

제6조. 교육 시설

940. 교육 시설의 장비

(a) 미용 교육 시설에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피부 관리 및 전동 기구를 사용한 페이스셜 수업용 전기 설비.

참고: 이러한 장비는 신체 또는 얼굴 근육의 수축을 위해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 머리카락이 있는 마네킹 10
- (3) 시간 기록계 또는 시간 스캐너 1
- (4) 샴푸대 5
- (5) 헤어드라이기 6
- (6) 페이스셜 시술용 의자 또는 카우치 2
- (7) 매니큐어 작업대 6
- (8) 가열식 헤어 스트레이트기



- (A)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빗 3
- (B) 스토브(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빗용) 1
- (C) 전기 고데기 1
- (D)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고데기(최소 2가지 크기) 3
- (E) 스토브(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고데기용) 1
- (9) 헤어스타일링 또는 이발용 의자 15
- (b) 이발 교육 시설에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장비는 다음과 같다.
 - (1) 머리카락이 있는 마네킹 7
 - (2) 시간 기록계 또는 시간 스캐너 1
 - (3) 샴푸대 3
 - (4) 헤어드라이기 4
 - (5) 헤어스타일링 또는 이발용 의자 8
 - (6) 전기 고데기 1
 - (7)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빗 1
 - (8)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고데기(최소 2가지 크기) 2
 - (9) 스토브(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빗용) 1
 - (10) 타올 스티머 1
- (c) 전기분해요법 교육 시설에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장비는 다음과 같다.
 - (1) 시간 기록계 또는 시간 스캐너 1
 - (2) 손을 씻는 싱크대 2
 - (3) 서비스 테이블 3
 - (4) 전기분해식 제모기:
 - (A) 고주파 열분해 2
 - (B) 혼합 제모기 2
 - (C) 복침 1
 - (5) 확대 램프/소형 확대경/양안 돋보기 3
 - (6) 높이 조절식 스톨 3
 - (7) 유틸리티 스탠드 3
 - (8) 주사바늘 회수용 용기 1/테이블당
 - (9) 건식 열 멸균기 1
 - (10) 가압 스팀 멸균기 1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62.1, 7362.2, 7362.3절

941. 교육 시설의 승인

(a) 사립 고등교육 기관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으로 구성된 승인 요청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시설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교육 과정 또는 미용 교육 시설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사업 및 전문업법 7362.1절의 교육 시설 승인과 관련한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을 진술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교육 시설의 소유자가 서명한 문서.



(2) 사립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에서 교육 시설에 교부하여 현재 유효한 최신 기관 승인 증명서 사본.

(b) 위원회는 (a) 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요청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요청이 승인되었는지 혹은 요청서의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으며 승인 요청서를 완전하게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c) 모든 신규 교육 시설 및 소유권 또는 위치가 변경된 교육 시설은 (a) 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d) 승인된 교육 시설이 사업 및 전문업법 7362절 또는 7362.1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역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규정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62, 7362.1절

950.5. 전기분해요법 과정 커리큘럼

(a) 이·미용법 7316절에 따라 전기분해요법 과정에 등록한 학생을 위한 커리큘럼은 600시간의 기술 교육과 전기분해요법 기술을 포함하는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본 절의 목적상, 기술 교육은 시범, 강의, 강의 중 참여 또는 시험을 통한 교육을 의미하며, 실습은 학생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전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 교육은 실습을 수행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기술 교육 및 실습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전기분해요법, 열분해요법, 혼합/이중요법 및 전기학 기술 교육 및 실습 교육 400시간

전기분해요법, 열분해요법, 혼합/이중요법 및 전기학 교육의 필수 과목에서 과목별로 이수해야 할 기술 교육 및 실습의 최소 시간은 다음과 같다.

전기분해요법(기술 교육 45시간, 실습 60회)

전기분해요법 과목은 단침 및 복침 삽입 기술을 이용한 제모, 갈바닉 전류 사용, 피부 반응, 아나포레시스, 카타포레시스, 전기분해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 병력 평가 학습을 다룬다.



열분해요법(기술 교육 45시간, 실습 120회)

열분해요법 과목은 자동 및 수동 열분해요법 장비를 이용한 제모, 삽입 기술, 고강도 및 저강도 고주파 사용, 피부 반응, 열분해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 병력 평가 학습을 다룬다.

혼합/이중요법(기술 교육 45시간, 실습 60회)

혼합/이중요법 과목은 고주파와 갈바닉 전류의 조합을 이용한 제모, 삽입 기술, 피부 반응, 아나포레시스, 카타포레시스, 혼합/이중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 병력 평가 학습을 다룬다.

전기학(기술 교육 15시간)

전기학 과목은 전류의 성질, 전기 장비 작동 원리, 전기 장비 작동 시 준수해야 할 다양한 안전 예방 조치 및 장비의 적절한 관리법을 다룬다.

(2) 보건 안전 기술 교육 200시간

보건 안전 교육의 필수 과목에서 과목별로 이수해야 할 기술 교육의 최소 시간은 다음과 같다.

법률 및 규정(기술 교육 20시간)

법률 및 규정의 과목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미용법 및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

보건 안전 고려 사항(기술 교육 45시간)

보건 안전 과목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균학, HIV/AIDS, 간염, 헤르페스, 포도상구균 감염, 기타 전염병 및 그 예방법, 인간공학, 전기 안전, 재료 안전 데이터 시트.

살균(기술 교육 20시간)

살균 과목은 고객과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는 적절한 절차,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 소독 방법의 학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내용을 다룬다.

전체 교육 과정에서 살균 및 위생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며, 모든 기구와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살균 시간과 날짜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한다.

해부학 및 생리학(기술 교육 20시간)

해부학 및 생리학 과목은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피부학, 피부 및 모발 분석, 순환계, 신경계 및 내분비계에 대한 학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내용을 다룬다.

(c) 위원회는 교육 시설에서 직업 윤리, 상담, 시술 전후 관리, 영업 기술, 에티켓, 기록 보존, 고객 서비스 기록, 비즈니스 기술, 독립 계약자, 직원, 고용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세무 정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6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6(f), 7330(d)(1), 7362, 7366, 7389절.

950.10. 크레딧의 이전

(a)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학생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전에 취득한 기술 및 실습 교육 시간("교육 시간")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시간당 기준의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1) 이 경우 학생이 취득한 이전 교육 시간과 동일하며 교육 기간이 동일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전 프로그램의 교육 시간에 대한 크레딧은 이 절의 요구 사항에 따라 부여된다.

(b)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미용학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교육 시간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크레딧이 부여된다.

(1) 새로운 이발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A) 사업 및 전문업법("법") 7362.5(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B) 법 7362.5(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C) 법 7362.5(b)(3)절에 정의된 화학적 모발 서비스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200시간.



(D) 법 7362.5(b)(4)절에 정의된 미용 서비스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200시간.

(2) 새로운 이발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A) 법 7364(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B) 법 7364(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C) 법 7364(b)(3)절에 정의된 피부 관리 서비스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50시간.

(D) 법 7364(b)(4)절에 정의된 제모 및 속눈썹과 눈썹 미용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50시간.

(3) 새로운 손톱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A) 법 7365(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B) 법 7365(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C) 법 7365(b)(3)절에 정의된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과정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4) 새로운 헤어스타일링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A) 법 7363(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B) 법 7363(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C) 법 7363(b)(3)절에 정의된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200시간

(5) 새로운 전기분해용법시술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A) 법 7366(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B) 법 7366(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b) 이발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이발사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교육 시간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크레딧이 부여된다.

(1) 새로운 피부미용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A) 법 7362(c)(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B) 법 7362.5(c)(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C) 법 7362.5(c)(3)절에 정의된 화학적 모발 서비스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200시간.

(D) 법 7362.5(c)(4)절에 정의된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200시간

- (2) 새로운 이발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4(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4(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3) 새로운 손톱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5(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5(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4) 새로운 헤어스타일링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3(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3(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C) 법 7363(b)(3)절에 정의된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200시간.
- (5) 새로운 전기분해용법기술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6(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6(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d)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피부 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교육 시간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크레딧이 부여된다.
 - (1) 새로운 피부미용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2(c)(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2.5(c)(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C) 법 7362.5(c)(5)절에 정의된 피부 관리 서비스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50시간.
 - (D) 법 7362.5(c)(6)절에 정의된 제모 및 속눈썹과 눈썹 미용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50시간.
 - (2) 새로운 이발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2.5(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2.5(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3) 새로운 손톱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5(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5(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4) 새로운 헤어스타일링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3(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3(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5) 새로운 전기분해용법시술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6(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6(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e) 매니큐어리스트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네일 케어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교육 시간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크레딧이 부여된다.
 - (1) 새로운 피부미용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2(c)(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2.5(c)(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C) 법 7362(c)(7)절에 정의된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과정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2) 새로운 이발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2.5(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2.5(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3) 새로운 이발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4(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4(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4) 새로운 헤어스타일링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3(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3(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5) 새로운 전기분해용법시술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6(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6(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f)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미용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교육 시간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크레딧이 부여된다.

(1) 새로운 피부미용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A) 법 7362(c)(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B) 법 7362.5(c)(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D) 법 7362.5(c)(4)절에 정의된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200시간

(2) 새로운 이발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A) 법 7362.5(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B) 법 7362.5(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D) 법 7362.5(b)(4)절에 정의된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200시간

(3) 새로운 손톱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A) 법 7365(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B) 법 7365(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4) 새로운 이발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A) 법 7364(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B) 법 7364(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5) 새로운 전기분해용법시술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A) 법 7366(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B) 법 7366(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g) 전기분해용법시술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전기분해용법시술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교육 시간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크레딧이 부여된다.

(1) 새로운 피부미용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A) 법 7362(c)(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B) 법 7362.5(c)(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2) 새로운 이발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2.5(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2.5(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3) 새로운 이발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4(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4(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4) 새로운 헤어스타일링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3(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3(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5) 새로운 손톱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 (A) 법 7365(b)(1)절에 정의된 보건 및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B) 법 7365(b)(2)절에 정의된 소독 및 위생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100시간.
- (h) 법 7367절에 따라, 학생이 법 7362.5, 7363, 7364, 7365절 및 7366절에서 규정한 최소 기술 커리큘럼 내용 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정의 실습 및 기술 교육 시간에 대하여 이발사, 미용사, 헤어 스타일리스트, 피부미용사, 매니큐어리스트 또는 전기분해용법시술자 면허에 필요한 이전 취득 시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으며 이는 하위 조항 (a)(1)에 정의된 것과 동일하다.
 - (i) 본 절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 (1)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경”이란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학하거나, 면허 소지자로서 위원회가 발급한 다른 면허 유형에 대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획득(Earned)”이란 합격점으로 시간 또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법 7316절, 7362.5절, 7363절, 7364절, 7365절, 7366절 및 7367절.



950.12.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무 수행

(a) 교육 시설에 등록한 학생은 1학년 교육을 마칠 때까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학년은 각 과정에 지정된 총 교육 시간의 10%에 해당한다.

(b) 교육 시설에 등록한 학생은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교육 및 실습 교육을 완료할 때까지 유료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c) 본 절의 목적상, 기술 교육은 시범, 강의, 강의 중 참여 또는 시험을 통한 교육을 의미하며, 실습 교육은 학생이 다른 사람이나 마네킹을 대상으로 전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6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62(b), 7362.5, 7364, 7365, 7366절

961. 교육 자료

(a) 인가 교육 시설은 교육을 실시하는 첫 주에 각 학생에게 다음 자료의 인쇄본 또는 전자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 학생이 등록한 교육 과정(예: 이·미용, 전기분해요법, 매니큐어 기술) 관련 교과서 1권 이상.

(2) 캘리포니아주 이·미용 위원회 법률의 최신 버전(캘리포니아주 사업 및 전문업법 제3부 10장, 7301절로 시작);

(3) 캘리포니아주 이·미용 위원회 규정집의 최신 사본(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16편 9부, 904절로 시작);

(4) 학생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영어 외 언어로 시험을 치려는 경우,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려는 언어로 응시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허 시험 공급업체에서 준비한 면허 시험 번역 가이드의 최신 버전.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6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62절.



제8.5조 실무 수습

962. 정의

(a) 사업 및 전문업법 (c)(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7395.1절 및 7395.2(c)(3) 절의 목적상 '성실성(good standing)'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면허 소지자는 이·미용 위원회에서 교부하여 현재 유효한 최신 이발사, 미용전문가, 전기분해용법시술사, 헤어스타일러, 피부미용사 또는 매니큐어리스트 면허를 유지한다.

(2) 이·미용법 제11조에 의거한 면허 관련 징계가 없으며, 보류 중인 중인 징계도 없다.

(3) 이·미용법 제12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 미납 벌금이 없다.

(b) 사업 및 전문업법 7395.1(g)(3)절 및 7395.2(g)(3)절과 이 조항의 목적상 "적절한 교육"이란 학생 외부인이 사업 및 전문업법 7362.5절에 명시된 필수 최소 실습 및 기술 교육 시간의 25%를 이수했음을 의미한다.

(c) 사업 및 전문업법 7395.1(g)(3)절 및 7395.2(g)(3)절의 목적상, '화학적 시술'이라는 용어는 화학적 시술을 통해 모발, 피부 또는 손발톱의 분자 구조를 변경하는 제품을 준비하거나 바르는 행위를 포함하는 제품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술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1) 파마
- (2) 소프트 파마
- (3) 화학적 스트레이트 시술
- (4) 수산화나트륨 및 기타 염기성 용액 사용
- (5) 염색 및 탈색(반영구 및 영구)
- (6) 화학적 박피 제품
- (7) 제모 제품
- (8) 속눈썹 및 눈썹 틴팅 제품

(d) 사업 및 전문업법 7395.1 (g)(3)절 및 7395.2(g)(3)절의 목적상,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감독'이라 함은 지정된 면허 소지자가 수행 과정을 감독하는 경우 실무 수습생이 보조 역할로만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무 수습생이 수행하는 업무는 실무 수습생을 감독하는 지정된 면허 소지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될 것이어야 한다.



(e) 사업 및 전문업법 7395.1(g)(3)절 및 7395.2(g)(3)절의 목적상 "직접 감독받는"이라는 용어는 실무 수습생이 사업 및 전문업법 7316절에 나열된 이발 또는 미용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를 감독할 지정된 면허 소지자가 있고 그 실무 수습생이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실무 수습생은 위원회가 941절에 따라 승인한 이발소 또는 미용 학교에서 해당 작업 방법을 적용하는 데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한 고객에게 화학 처리를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실무 수습생이 수행하는 업무는 실무 수습생을 감독하는 지정된 면허 소지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될 것이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7362.5, 7395.1 및 7395.2절

962.1. 미용 실무 수습 프로그램 참여 통지

(a) 962절의 규정된 미용 실무 수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 및 면허 소지자의 '성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각 참여 교육 시설의 책임이다. 참여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의 '성실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

(b) 미용 실무 수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 시설 및 시설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려면 매년 참여 통지를 갱신해야 한다. 통지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교육 시설에서 작성해야 한다.

- (1) 교육 시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위원회에서 부여한 교육 시설 코드.
- (2) 시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위원회에서 부여한 면허 번호.
- (3) 시설 소유자 이름.
- (4)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교육 시설 및 시설에서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함으로써 서류의 모든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교육 시설 및 시설이 사업 및 전문업법 7395.1절의 이 조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진술서. 해당 진술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We, the undersigned,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at al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true and correct(우리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여기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함을 아래에 서명하여 확인합니다). We have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of Article 8.5 of Division 9 of Title 16 of the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and Section 7395.1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우리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16편 제9부 8.5조의 모든 요건과 사업 및 전문업법 7395.1절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준수합니다)."



(5) 서류에는 교육 시설을 대표하여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과 직위가 명확하게 작성 또는 인쇄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95.1 절

962.2. 코팅된 교육 시설 학생증

(a) 실무 수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은 승인된 시설에서 근무 시 사진이 부착된 교육 시설 학생증을 소지해야 한다.

(b) 사진이 부착되고 코팅된 교육 시설 학생증은 크기가 2.5x3.5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실무 수습생의 이름(이름, 미들네임 이니셜, 성), 수습생의 얼굴이 완전히 보이는 1.5x1.5인치 크기의 최근 컬러 사진, 글꼴 크기 14로 인쇄된 ‘STUDEN EXTERN(실무 수습생)’ 문구 및 해당 수습생이 등록된 미용 교육 시설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95.1 절.

제9조. 면허

965. 면허증 게시

- (a) 모든 기술자의 면허는 주요 업무 공간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 (b) 모든 시설 면허는 접수 구역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 (c) 사업 및 전문업법 7316절에 정의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누구도 만료되거나, 어떤 사유로든 효력이 정지된 면허를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면허가 게시된 경우, 요청 시 위원회에 면허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7317, 7332, 7342, 7397, 7414, 7415, 7417, 7418, 7419, 7420절.

965.1. 이 장의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제품 시연

이·미용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 관한 사업 및 전문업법 7319 (e) 절의 목적상, 제품 ‘시연’이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통상적인 소매가보다 높지 않은 가격으로 향후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미용 면허 소지자 혹은 제품 사용법을 설명하는 강사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제품의 가치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회성 서비스를 의미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7319절

965.2 개인 서비스 허가증

(a) 위원회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허가증 소지자가 인허가 시설 외부에서 특정 이미용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개인 서비스 허가증(PSP)을 발급해야 한다.

(1)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면허를 발급받아 최소 2년 동안 중단 없이 유효한 면허를 소지했거나 다른 주에서 면허를 취득했고 이발사, 미용전문가, 피부미용사 또는 매니큐어사로서 사업 및 전문업법 7331절에 따라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사업 및 전문업법 480절에 따른 면허 거절 대상이 아니다.

(2) 신청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를 통해 범죄 경력 조회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완전한 전체 지문을 라이브 스캔(Live Scan)으로 제출한다. 사업 및 전문업법 475절에 명시된 모든 관련 근거에 따라 신청자의 PSP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3) 신청자는 이 규정의 998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청비를 위원회에 지불한다.

(4) 신청자는 \$1,000,000 이상의 책임 보험에 현재 가입해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b) PSP 소지자는 \$1,000,000 이상의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통지서로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담당관에게 책임 보험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c) PSP를 보유한 미용전문가 면허 소지자가 인가 시설 외부에서 수행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샴푸 서비스.

(2) 헤어 커트, 스타일링, 헤어드레싱, 모발 손질, 컬링 및 웨이브 처리. 모발 신장, 매직 스트레이트, 화학적 웨이브 처리는 승인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헤어 토닉 바르기.

(4) 두피, 얼굴 또는 목에 파우더, 클레이, 소독제 및 오일 바르기.

(5) 수염 다듬기.

(d) PSP를 보유한 미용전문가 면허 소지자가 인가 시설 외부에서 수행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샴푸 서비스.
 (2) 헤어 커트, 스타일링, 헤어드레싱, 모발 손질, 컬링 및 웨이브 처리.
 모발 신장, 매직 스트레이트, 화학적 웨이브 처리는 승인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헤어 토닉 바르기.
 (4) 두피, 얼굴 또는 목에 파우더, 클레이 및 오일 바르기.
 (5) 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으로 얼굴과 목에 클렌징, 마사지, 자극을 주는 행위. 소독제, 토닉, 로션 또는 크림. 화학적 박피 또는 도구, 기계 또는 장치를 사용한 박피는 포함되지 않는다.

(6) 핀셋으로 인체의 체모 제거.
 (7) 메이크업 또는 접착식 속눈썹 붙이기.
 (8)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구로 손톱 샌딩 및 다듬기.
 (9) 매니큐어 바르고 제거하기.

(e) PSP를 보유한 피부미용사 면허 소지자가 인가 시설 외부에서 수행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세정제, 소독제, 토닉, 로션 또는 크림을 사용하여 손으로 얼굴과 목에 클렌징, 마사지, 자극을 주는 행위. 화학적 박피 또는 도구, 기계 또는 장치를 사용한 박피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메이크업 또는 접착식 속눈썹 붙이기.
 (3) 핀셋으로 인체의 체모 제거.

(f) PSP를 보유한 매니큐어사 면허 소지자가 인가 시설 외부에서 수행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구로 손톱 다듬기 및 샌딩.
 (2) 매니큐어 바르고 제거하기.

(g) 가능한 경우 PSP 소지자는 일회용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h) PSP 소지자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 시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i) PSP 소지자는 인가 시설 외부에서 서비스를 완료한 후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이 규정에 참고 문헌으로 포함된 개인 서비스 허가 공지문(BBC-PSP(2020))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2) 고객으로부터 다음 정보를 포함하며 서명 및 날씨가 기재된 영수증을 취득한다.

- A. 개인 서비스 허가와 관련한 고객 공지문을 받아보았다는 고객의 확인
- B. 고객의 이름.
- C. 고객의 전화번호.
- D. 고객의 이메일 주소(있을 경우)
- E. 고객에게 제공된 모든 서비스 목록



(3) 고객에게 영수증 사본을 제공한다.

(4) 적절한 통지서로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또는 그 담당관에게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영수증 보관한다. 위원회 또는 그 담당관에게 고객 공지문의 수령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공지문 및 영수증 요건은 전자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402.5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402.5절

제10조. 징계 절차

969. 특정 직무의 위임

본 조항에 의거하여, 고발의 접수 및 제출, 심의회 통지서, 피고인에게 보내는 진술서, 문제에 대한 진술서의 발부, 항변 통지서의 접수 및 제출, 정부법 11508절 규정에 따른 심의회 시기와 장소 결정, 소환장 및 대배심 소환장의 발부, 심의회 결정 및 일정 수립, 정부법 11500~11528절 규정에 따른 절차와 관련하여 심의회 전에 위원회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직무의 수행, 동 법전의 11518절에 따른 결정서의 인증 및 발송 등 법률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과 재량권은 행정관에게 또는 행정관 부재 시 행정관 대리인에게 위임되고 부여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0, 7403절

970. 상당한 관련성 기준

(a) 이·미용법(사업 및 전문업법 제3부 10장(7301절로 시작))에 따라 교부된 면허의 거절, 정지, 취소와 관련한 목적상, 사업 및 전문업법 141, 7362, 7403, 7404, 7405절 또는 제1.5부(475절로 시작) 또는 면허 거절 사유의 근거로 사업 및 전문업법 480절을 인용한 이·미용법의 절에 의거하여, 면허 신청자 또는 소지자가 공중 보건, 안전, 복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면허로 승인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재 불가능하거나 잠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을 경우, 범죄, 직무상 불법 행위 또는 행위는 신청자가 면허를 받으려는 혹은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교부받은 행위 또는 직종의 자격, 직무, 의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b) 위원회는 범죄와 관련한 (a) 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상당한 관련성을 결정할 때,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1) 범죄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 (2) 범죄를 저지른 날부터 경과한 연수.
- (3) 신청자가 면허를 취득하려는 직종 또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 대상 행위나 직종의 특성과 직무.

(c) (a) 항의 목적상 상당한 관련이 있는 범죄, 직무상 불법 행위 또는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사업 및 전문업법 제3부 10장의 규정 또는 이·미용 행위에 적용되는 기타 주 또는 연방법의 규정 위반.

(2) 음란 행위, 마약 사용이나 판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면허로 승인된 직무 또는 의무 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직무 또는 의무 수행 중 행한 형사 범죄.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481,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141, 480, 481, 488, 490, 492, 493, 7347, 7355, 7362, 7403, 7404, 및 7405절.

971. 재할 기준

(a) 면허 거절.

(1) 사업 및 전문업법 480, 7362, 7403 또는 7405절이나 제1.5부(475절로 시작) 또는 면허 거절 사유의 근거로 사업 및 전문업법 480절을 인용한 이·미용법(사업 및 전문업법 제3부 10장(7301절로 시작)) 절에 따라, 면허 신청자가 받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면허 거절을 검토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신청자가 재할 증거를 제시했는지,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선고받은 형량을 마쳤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판단할 때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A) 범죄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 (B) 해당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기간.
- (C) 해당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이 단축되거나 연장된 기간 및 기간

변경 사유.

(D)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의 기간 및 조건과 신청자의 재할에 미치는 영향.

(E)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의 기간 및 조건이 변경된 정도와 변경 사유.



(2) 신청인이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선고받은 형량을 마치지 않아 위원회에서 신청인이 (1) 목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재할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면허의 거절은 직무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하거나 사업 및 전문업법 7362(c) 또는 7403절에 규정된 유죄 판결 외의 사유 1개 이상을 근거로 한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자의 재할을 판단해야 한다.

(A) 거절 사유로 고려되는 행위, 직무상 불법 행위 또는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

(B) 거절 사유로 고려되는 행위, 직무상 불법 행위 또는 범죄 이후에 저지른 행위, 직무상 불법 행위 또는 범죄의 증거.

(C) 세목 (A) 또는 (B)에 언급된 행위, 직무상 불법 행위 또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 경과한 시간.

(D) 신청자가 가석방, 보호관찰, 손해배상 또는 해당 신청자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모든 기타 처벌의 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E) 해당되는 경우, 세목 (1)(A)-(E)의 기준.

(F)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 또는 재할의 증거.

(b)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1) 사업 및 전문업법 490, 7362, 7403, 7404 또는 7405절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받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검토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면허 소지자가 재할 증거를 제시했는지,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선고받은 형량을 마쳤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판단할 때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A) 범죄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B) 해당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기간.

(C) 해당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이 단축되거나 연장된 기간 및 기간 변경 사유.

(D)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의 기간 및 조건과 면허 소지자의 재할에 미치는 영향.

(E)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의 기간 및 조건이 변경된 정도와 변경 사유.

(2) 면허 소지자가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선고받은 형량을 마치지 않아 위원회에서 면허 소지자가 (1) 목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재할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사업 및 전문업법 141절에 규정된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되는 행위를 근거로 하거나 사업 및 전문업법 7362(c), 7403 또는 7404절에 규정된 유죄 판결 외의 사유 1개 이상을 근거로 한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면허 소지자의 재할을 판단해야 한다.



(A) 정지 또는 취소 사유로 고려되는 행위, 징계 처분 또는 범죄의 성격 및 심각성.

(B)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로 고려 중인 행위, 징계 처분 또는 범죄 이후에 저질러진 모든 행위, 징계 처분 또는 범죄에 대한 증거.

(C) 세목 (A) 또는 (B)에 언급된 행위, 징계 처분, 또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 경과한 시간.

(D) 면허 취득자가 법적으로 부과된 가석방, 보호관찰, 손해배상 또는 모든 기타 처벌의 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E) 해당되는 경우, 세목 (1)(A)-(E)의 기준.

(F) 면허 소지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 또는 재할의 증거.

(c) 위원회는 면허 복권 청원을 검토할 때 (b) 항에 규정된 재할 기준을 고려하여 청원자가 제출한 재할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481, 482,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141, 141, 480, 481, 482, 488, 490, 493, 7347, 7355, 7362, 7403, 7404, 7405절.

972. 징계 기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11400절 이하 참조)에 따라 징계 조치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이 규정에 참고 문헌으로 포함된 ‘징계 기준(Disciplinary Guidelines, 2010년 10월판)’의 징계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가 특정 사건과 관련한 요인(예: 양형 사유, 사건 당사자의 나이, 증거 문제)이 징계 기준에서 벗어날 정당한 사유라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경우, 일반적인 임시 규제 기간 등의 기준에서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는 적절하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403, 7404절

973. 즉각적인 정지 사유

위원회의 담당관은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절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시설이나 교육 시설이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근거로 위원회 행정관 또는 그 피지명자가 즉시 면허를 일시 정지하고, 임시로 규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 (a) 페디큐어 풋스파 또는 족욕기, 족탕기가 현저히 깨끗하지 않은 경우.
- (b) 스크린, 제트, 발판 또는 임펠러 분리 시 페디큐어 풋스파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 (c) 매니큐어 및/또는 페디큐어 장비의 소독 및 위생에 부적합한 청소 재료가 시설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 (d) 페디큐어 시설의 청소 일지가 없는 경우.
- (e)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장비와 관련된 보건 안전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f) 매니큐어 및/또는 페디큐어 도구가 현저히 깨끗하지 않은 경우.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절.

973.1. 즉각적인 정지 절차

위원회의 행정관 또는 그 피지명인은 위원회 담당관이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라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담당관은 신속한 전자적 전송 수단을 사용하여 행정관 또는 그 피지명자에게 증거 사진을 전송해야 한다. 행정관 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사진 증거가 접수되면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행정관 또는 그 피지명인은 즉각적인 정지를 통보하는 서면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절

973.2. 즉각적인 정지 통지서의 내용

즉각적인 정지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 (a) 위반한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여 위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
- (b) 정지 처분이 즉시 집행되며, 1년간의 면허 임시 규제 처분을 받는다는 진술.
- (c) 임시 규제 효력 발생일.
- (d) 이의제기 신청 절차 설명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절.



973.3. 임시 규제 조건

사업 및 전문업법 740 3.2절 및 규정 973절에 따라 즉각적인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임시 규제 대상이 된 면허 소지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a) 임시 규제된 면허 소지자는 매월 다음을 기재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서명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모든 페디큐어 시설 청소 일지 사본.

(2) 해당되는 경우, 규정 973.4절에 정의된 위원회 승인 교정 교육의 이수 증명서.

(b) 임시 규제된 면허 소지자의 시설은 분기별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이 더 자주 실시될 수도 있다. 시설의 소유자는 점검 비용을 총당하는 모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점검 비용은 시설의 스테이션 1개당 \$42이다. 스테이션은 페디큐어 작업대 또는 매니큐어 작업대이다.

(c) 임시 규제된 면허 소지자는 모든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d)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절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어 임시 규제된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8시간의 교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절.

973.4. 교정 교육의 정의

교정 교육은 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 과정으로, 페디큐어 및 매니큐어 장비의 소독 및 위생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정 교육 과정은 위원회의 보건 안전 법률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절.

973.5. 교정 교육 과정의 승인

(a) 위원회에서 교정 교육 과정을 승인을 받기 위해 교육 기관은 다음 정보를 기재한 과정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과정 내용에 대한 설명. 과정 내용은 보건 안전 법률 및 위원회의 규정을 다루어야 한다. 해당 과정은 페디큐어 및 매니큐어 장비의 안전과 위생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2) 제공되는 과정의 교육 방법. 강의, 세미나, 시청각 자료 등 과정별 교수법을 설명해야 한다.

(3) 과거 교육과 훈련, 경험에 비추어 강사가 지정된 교육 과정의 내용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 승인 신청서와 함께 강사 이력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4) 과정 승인 신청서에는 교육 기관의 이름, 교육 장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b) 승인된 교정 교육 과정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본 절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과정이 본 절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이 본 절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서면으로 획득할 때까지 승인 취소의 효력은 지속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절.

973.6. 이의제기 절차

(a) 즉각적인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임시 규제 대상이 된 면허 소지자는 면허 정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징계 심사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비공식 심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b) 규정된 기간 내에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북부와 남부 중 정지/임시 규제된 면허의 소지자에게 가까운 지역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본 절에 따라 요청된 이의제기는 다음 정기 징계 심사 심의회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c) 위원회 직원은 늦어도 심의회 30일 전까지는 심의회 날짜, 시간, 장소가 명시된 서면 통지서를 임시 규제된 면허 소지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임시 규제된 면허의 소지자는 징계 심사 심의회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서면으로 동의함으로써 30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d) 임시 규제된 면허의 소지자는 심의회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 또는 공식 대리인을 심의회에 동반할 수 있다. 임시 규제된 면허의 소지자는 서면 정보 및/또는 구두 증언을 징계 심사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임시 규제된 면허 소지자는 즉각적인 정지/임시 규제된 면허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 이·미용법 또는 위원회 채택 규정의 위반.
- (2) 해당되는 경우, 시정 기간.
- (3) 벌금 금액.



(e) 징계 심사 위원회는 즉각적인 정지 및 임시 규제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징계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인정과 법률적 결론을 근거로 한 서면 결정서가 정지/임시 규제된 면허의 소지자 및 해당 면허 소지자의 변호사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즉각적인 정지 및 임시 규제 명령에 대한 징계 심사 위원회의 수정 판결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다. 본 절의 (h) 항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결정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f) 징계 심사 위원회가 면허의 즉각적인 정지 및 임시 규제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징계 심사 위원회는 즉각적인 정지 및 임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결정은 심의회 종료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된다.

(g) 정지/임시 규제된 면허의 소지자가 징계 심사 심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975절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당한 불출석 사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면허의 정지/임시 규제는 최종 결정이 되며, 해당 처분이 내려진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행정적 이의제기는 신청할 수 없다.

(h) 징계 심사 위원회가 즉각적인 정지 및 임시 규제 명령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사업 및 전문업법 7411절에 따라 행정법 판사에게 서면으로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 심사 위원회가 즉각적인 정지 및 임시 규제 명령을 해제할 경우 행정법 판사에게 제출된 요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i) 임시 규제 기간 종료 시, 위원회는 즉각적인 정지 및 임시 규제 처분을 받은 각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절

제11조. 과징금 및 소환장

974. 과징금 요율표

(a) 사업 및 전문업법(BPC) 및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16편 제9부의 특정 조항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달러 기준).



조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BPC 7407.1절에 의거한 벌금 적용 대상:	면제 가능 여부
7313. 점검을 위한 시설 출입	250	500	75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7317. 무면허 시설	500	1,000	1,000		불가
7317. 무면허 개인	1,000	1,000	1,000		불가
7317. 만료된 시설 면허	250	300	50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7317. 만료된 개인 면허	250	300	500	개인 면허 소지자	불가
7317. 면허가 만료된 시설에서 일하는 개인	25	50	100	개인 면허 소지자	불가
7317. 무면허 시설에서 일하는 개인	250	300	500	개인 면허 소지자	불가
7320. 의료 행위	1,000	1,000	1,00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시설에 있을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됨.	불가
7320.1. 불법 금속 도구 사용	250	500	50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시설에 있을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됨.	불가
7320.2. 불법 시술	500	500	50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시설에 있을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됨.	불가
7336. 견습생 감독 없음	100	150	200	개인 면허 소지자	불가



조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BPC 7407.1절에 의거한 벌금 적용 대상:	면제 가능 여부
7348. 시설에 책임이 있는 면허 소지자 없음	100	150	20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7349. 무면허 직원 채용	1,000	1,000	1,00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7349. 무면허 직원 채용(만료된 면허)	250	300	50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7349.1. 이발소 표시등 불법 사용	25	50	10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7350. 시설의 주거 목적 사용/출입구/금지된 사용	50	100	15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7351. 화장실 규정 - 청결/수납/바닥/환기구	50	100	15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7352. 손을 씻는 시설에 비누/수건 또는 핸드 드라이어 없음	50	100	15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7353.4. 근로자 권리 공지문 미게시	50	100	15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7358. 이동 설비차에 책임이 있는 면허 소지자 없음	100	150	200		불가



조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BPC 7407.1절에 의거한 벌금 적용 대상:	면제 가능 여부
7359. 이동 설비차에 무면허 직원 채용	1,000	1,000	1,000		불가
7360. 이동 설비차-주거 목적 사용/ 금지된 사용	50	100	150		불가
7400. 제출된 주소 변경 통지 없음	50	100	150	개인 면허 소지자	불가
7404(l). 점검 방해	1,000	1,000	1,00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점검을 방해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가
904(d). 신분증에 사진 없음	50	100	150	개인 면허 소지자	불가
905. 소비자 정보 자료 미게시	50	100	15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920. 견습생 교육 기록 없음/ 불완전함	100	150	200	개인 면허 소지자	불가
965. 면허증 게시	50	100	150	시설 면허 소지자, 시설 면허가 접수 구역에 눈에 잘 띄게 게시되지 않은 경우. 개인 면허가 주요 업무 공간에 눈에 잘 띄게 게시되지 않은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 및 시설 면허 소지자에게 벌금이 부과됨.	불가



조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BPC 7407.1절에 의거한 벌금 적용 대상:	면제 가능 여부
978(a)(1), (a)(2), (a)(3), (a)(4). 콘센트, 캐비닛, 컨테이너	50	100	15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978(a)(5). 용기에 담긴 소독제가 폭 담그기에 부족한 경우	100	150	20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978(a)(6). 전기분해요법 기구용 스팀/건식 열 멸균기 없음	500	1,000	1,50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978(b). 사용 가능한 소독액 없음	250	300	50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978(c). 제조사 라벨이 부착된 소독제 용기 없음	250	300	50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979. 비전기식 도구 및 장비 살균	100	250	500	확정 가능한 개인 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엔 개인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개인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시설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벌금은 시설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됨.	불가
980(a). 전기 제품의 잘못된 살균	100	250	500	확정 가능한 개인 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엔 개인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개인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시설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벌금은 시설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됨.	불가



조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BPC 7407.1절에 의거한 벌금 적용 대상:	면제 가능 여부
980(b). 전기 살균 제품의 잘못된 보관	50	100	150	확정 가능한 개인 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엔 개인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개인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시설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벌금은 시설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됨.	불가
980(c). 더러운 전기 도구의 잘못된 보관	50	100	150	확정 가능한 개인 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엔 개인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개인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시설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벌금은 시설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됨.	불가
980.1. 페디큐어 스파의 잘못된 살균(의자 1 개당)	500	500	50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시설에 있을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가
980.1(c)(7). 980.1(d)(8). 980.1(e)(4). 부정확한/ 누락된 기록	100	150	20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시설에 있을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가
980.1(g). 기록에 의자를 '미사용'이라 표기하지 않음, 의자에 표시 없음	50	100	15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시설에 있을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가
980.2. '파이프리스' 풋스파 잘못된 살균(유닛 1 개당)	500	500	50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시설에 있을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가
980.2(b) (7). 980.2(c) (6). 980.2(d) (3). 부정확한/ 누락된 기록	100	150	20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시설에 있을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가



조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BPC 7407.1절에 의거한 벌금 적용 대상:	면제 가능 여부
980.2(f). 기록에 의자를 '미사용'이라 표기하지 않음, 의자에 표시 없음	50	100	15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시설에 있을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가
980.3. '월플 기능이 없는 족욕기'의 잘못된 살균(유닛 1개당)	100	150	20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시설에 있을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가
980.3(b)(6). 부정확한/ 누락된 기록	50	100	15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시설에 있을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가
980.3(c). 족욕기 또는 족탕기의 부적절한 보관	50	100	15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시설에 있을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가
980.4. 일회용 라이너 사용 후 족욕기 또는 족탕기의 잘못된 살균	500	500	50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시설에 있을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가
980.4(a)(2). 부정확한/ 누락된 기록	50	100	150	시설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시설에 있을 경우 개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가
980.4(a)(4). 족탕기 1개당 일회용 라이너 5장을 비치하지 않음	250	300	50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조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BPC 7407.1절에 의거한 벌금 적용 대상:	면제 가능 여부
981(a). 살균하지 않은 용품 미폐기	100	150	200	확정 가능한 개인 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엔 개인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개인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시설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벌금은 시설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됨.	불가
981(b). 새로운 용품 및 일회용 도구의 부적절한 보관	50	100	150	확정 가능한 개인 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엔 개인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개인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시설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벌금은 시설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됨.	불가
981(c). 도구나 용품을 착용한 옷 등에 소지	50	100	150	개인 면허 소지자	불가
982. 전기분해요법 도구의 잘못된 살균	100	150	200	확정 가능한 개인 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엔 개인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개인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시설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벌금은 시설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됨.	불가
983. 개인 청결	50	100	150	개인 면허 소지자	불가
984(a). 감염성 질병/전염병을 않는 면허 소지자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허용	100	250	50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조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BPC 7407.1절에 의거한 벌금 적용 대상:	면제 가능 여부
984(b). 면허 소지자가 감염성 질병/전염병을 앓는 사람과 함께 일하도록 허용 또는 요구	100	250	50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984(e). 염증, 상처, 감염, 발진이 있는 피부/두피 표면에 시술 제공/손에 염증, 상처, 감염, 발진이 있는 경우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	100	250	500	개인 면허 소지자	불가
985. 넥 스트립 또는 타올 미사용	50	100	150	개인 면허 소지자	불가
986. 더럽거나 비위생적인 넥더스터/브러시	50	100	150	확정 가능한 개인 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엔 개인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개인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시설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벌금은 시설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됨.	불가
987. 타올	50	100	150	확정 가능한 개인 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엔 개인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개인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시설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벌금은 시설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됨.	불가



조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BPC 7407.1절에 의거한 벌금 적용 대상:	면제 가능 여부
988. 리퀴드, 크림, 파우더 및 화장품	50	100	150	확정 가능한 개인 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엔 개인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개인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시설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벌금은 시설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됨.	불가
989. 금지된 위험 물질/제품 사용	500	500	50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990. 머리 받침대 및 시술대	50	100	150	확정 가능한 개인 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엔 개인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개인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시설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벌금은 시설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됨.	불가
991. 침습적 시술 시행	500	500	500	확정 가능한 개인 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엔 개인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개인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시설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벌금은 시설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됨.	불가
992. 침습적 피부 각질 제거/진피 시술 시행	500	500	500	확정 가능한 개인 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엔 개인 면허 소지자. 개인 면허 소지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개인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시설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벌금은 시설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됨.	불가
993. 금지된 도구	300	400	50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조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BPC 7407.1절에 의거한 벌금 적용 대상:	면제 가능 여부
994. 청결 및 유지보수	50	100	15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995(b), (c), (d), (e). 배관 설비 표준	50	100	150	시설 면허 소지자	불가

(b) (a) 항에 면제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위반의 경우, 위원회 재량으로 해당 위반은 사업 및 전문업법 7407절에 따라 시정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사업 및 전문업법 7409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초 위반에 대한 벌금도 면제될 수 없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406, 7407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53.4, 7406, 7407, 7407.1, 7409절.

974.1. 징계 심사 위원회

- (a) 위원회의 징계 심사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3인으로 구성된다.
- (b) 위원회 의장은 재량에 따라 징계 심사 위원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 (c) 위원회의 의장은 매년 징계 심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매년 위원회의 의장이 선출될 때 임명도 시행된다.
- (d)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징계 심사 위원회보다 먼저 열리는 비공식 소환 심의회의 날짜와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410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410절

974.2. 징계 심사 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

- (a) 사업 및 전문업법 7411절에 규정된 심의회 요청 외에도,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위반 통지서 또는 소환장의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심사 위원회보다 먼저 열리는 비공식 소환 심의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b) 규정된 기간 이내에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위원회 직원은 소환된 사람이 본인의 기록상 주소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심의회 요청서 접수 후 최소 45일 이후에 개최되는 다음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야 한다. 위원회 직원은 늦어도 심의회 30일 전까지는 심의회 날짜, 시간, 장소가 명시된 서면 통지서를 소환된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c) 소환된 사람은 심의회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 또는 공식 대리인을 심의회에 동반할 수 있다. 또한 서면 정보 및/또는 구두 증언을 징계 심사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d) 소환된 사람은 소환장 또는 위반 통지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 이·미용법 또는 위원회 채택 규정의 위반.
- (2) 해당되는 경우, 시정 기간.
- (3) 벌금 금액.

(e) 비공식 소환 심사 심의회 종료 시, 징계 심사 위원회는 심의회를 계속 진행할지 또는 소환된 사람이 위원회에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할지 선택할 수 있다. 징계 심사 위원회가 심의회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심의회는 소환된 사람의 기록상 주소와 가까운 곳에서 다음 심의회가 개최될 때까지 연기된다. 위원회 직원은 (b) 항에 따라 연장된 심의회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소환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징계 심사 위원회가 서면 정보의 추가 제출을 위해 기록을 미결 상태로 유지하기로 한 경우, 소환된 사람은 예정된 다음 심의회 전까지 동일한 징계 심사 위원회에 서면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위원회는 기록을 마감하여 예정된 다음 심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f) 징계 심사 위원회는 벌금이 포함된 소환장을 확정, 수정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환장이나 위반 통지서에 기록된 위반 사항이나 과징금이 가중되지 않는다. 징계 심사 위원회는 해당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이전에 발생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반 이력을 고려할 수 있다. 비공식 소환 심사 심의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사실 인정을 근거로 한 서면 결정서가 소환된 사람 및 그 변호사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소환된 사람에게 결정서가 발송되고 30일 후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일은 결정문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결정서는 부과된 벌금을 포함하여 발부된 소환장의 최종 명령으로 간주된다.

(g) 소환된 사람이 비공식 소환 심사 심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975절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당한 불출석 사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은 최종 결정으로 판결되며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행정적 이의제기는 신청할 수 없다.



(h) 징계 심사 위원회가 벌금을 포함한 소환장 또는 위반 통지서를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소환된 사람은 징계 심사 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 및 전문업법 7411절에 따라 행정법 판사에게 서면으로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 심사 위원회가 소환장 또는 위반 통지서 전체를 기각할 경우, 행정법 판사에게 제출된 요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410, 7412, 7413절

974.3. 분할 납부 방식.

(a) \$500를 초과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면허 소지자는 최대 12개월의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분할 납부를 요청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분할 납부를 요청한 후 위원회는 납부 기한과 금액이 명시된 납부 일정을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한다.

(b) 면허 소지자가 분할 납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분할 납부를 취소한다.

(c) 위원회에서 분할 납부를 취소할 경우, 면허 소지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없다.

(1) 미납 벌금을 전액 납부하기 전까지 소지한 모든 위원회 발급 면허의 갱신.

(2) 이후 과징금 분할 납부 요청.

(d) 면허 소지자가 본 절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과징금이 면허 갱신일까지 전액 납부되지 않더라도 소지한 모든 위원회 발급 면허를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408.1, 7414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408.1, 7414절

975. 심의회 불출석의 합당한 사유

위원회는 사업 및 전문업법 7413절의 목적상, ‘합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질병, 자동차 사고, 사망 또는 직계 가족의 중병 또는 기타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고통. 위원회에서 합당한 사유로 간주하는 모든 상태는 서면으로 입증되어야 한다(예: 의사 소견서, 공식 사고 보고서, 부고).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413절

976. 소환, 무면허 활동

위원회에서 교부한,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면허 없이 보수를 받고 이발, 미용 또는 관련 업종 또는 전기분해요법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나 회사, 법인에 대하여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 명령을 포함하는 소환장이 부과될 수 있다. 본 절에 따라 발부된 모든 소환장은 해당 법 125.9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125.9, 148, 7317절

제12조. 보건 안전

977. 보건 안전 관련 용어 정의

다음 용어는 본 조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가압 스팀 멸균기 — 고압력 포화 증기를 이용해 도구, 장비 및 그 외 물품을 소독하는 기구.

일반의약품 — 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 대중이 구입할 수 있는 미용, 이발 또는 전기분해요법 제품.

화장품 —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오염 — 혈액이나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감염원이 물품 표면에 묻어 있거나 눈에 보이는 먼지, 모발, 피부 조각이 존재하는 상태.

진피 — 표피 바로 아래의 피부 층으로, 살아 있는 피부 세포층이다.

소독 — 기구나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해 해로운 박테리아, 바이러스, 병원균을 제거하는 행위.

소독제 — 미국 환경보호국(EPA) 등록 제품으로,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제거 성능이 입증된 제품. 이러한 제품에는 제조사의 EPA 등록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구를 살균할 수 있도록 액체 형태이거나 전기 기구나 가위를 살균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나 멀티슈 형태여야 한다.



건식 열 살균기 — 거의 또는 전혀 수증기가 없는 고온의 공기를 사용하여 장비와 용품을 소독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이다.

표피 — 피부의 가장 바깥쪽 층으로, 죽은 세포층이다.

전기 기구 — 이발, 미용, 전기분해요법을 위해 작동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한 모든 기구로서, 전기 코드, 무선 충전기, 건전지가 사용된다. 클리퍼, 드라이기, 컬링 고데기 및 스트레이트용 고데기가 이에 해당되지만 이 외의 다른 기구들도 있다.

족욕기 — 풋스파 의자에 달려 물을 채우는 용기로, 페디큐어를 받는 고객이 발을 담그는 부분이다.

가열식 스타일링기 — 헤어 스타일링에 열을 사용하는 기구.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 — 이발, 미용, 전기분해요법을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서 어떤 형태의 전기도 사용하지 않는 기구. 가위, 면도칼, 큐티클 니퍼, 큐티클 푸셔, 네일 클리퍼, 메탈파일, 메탈스무더, 빗, 헤어클립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 외에 다른 기구들도 있다.

유독한 — 인체에 유입되거나 접촉될 경우 질병을 유발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

위생적인 —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

더러운 — 청결하지 않고 더러운 상태.

살균 — 가압 스팀 멸균기 또는 건식 열 살균기를 사용해 전파나 전염이 가능한 인자(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포자)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죽이는 과정.

족욕기 — 물을 채우는 별도의 용기로, 페디큐어를 받는 고객이 발을 담그는 부분이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78. 최소 장비 및 용품

(a) 시설과 교육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장비와 용품을 구비하고 유지해야 한다.

(1) 헤어 서비스를 시행하는 장소에는 머리카락 처리용 쓰레기통을 시설당 1개 이상 배치해야 한다. 머리카락은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2)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밀폐된 구역에 더러운 타올, 가운, 작업복, 리넨, 시트를 보관하는 달을 수 있는 보관함.



(3)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 타올, 가운, 작업복, 리넨 및 시트가 깨끗한 경우 보관하는 용도의 깔끔하고 닫을 수 있는 캐비닛.

(4) 기구와 장비를 소독하는 데 사용하는 소독제 용기. 용기에는 ‘Disinfectant Solution(소독액)’이라 표기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5) (4) 항에 명시된 각 용기에는 기구를 완전히 담글 수 있도록 소독액이 충분히 들어 있어야 한다.

(6) 전기분해요법 기술이 시행될 경우, 982절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압 스팀 멸균기 또는 건식 열 살균기.

(b) 시설과 교육 시설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혼합된 소독액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한다.

(c) 제조업체 라벨이 부착된 소독제 용기가 시설 또는 교육 시설에 항상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소독제를 다 사용했다면, 소독제의 제조업체 라벨이 부착된 빈 용기가 남아 있어야 한다.

참고: 인용 전자: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79.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 소독

(a) 가위를 제외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소독 가능한 모든 기구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전에 다음 순서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

(1) 눈에 보이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비누 또는 세제와 물로 세척한다.

(3)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키친타올로 기구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4) 제조업체 지침에 따라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입증된 EPA 등록 소독제에 완전히 담근다.

(5) 면허 소지자 또는 학생은 소독제에서 기구를 꺼낼 때 보호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집게를 사용해야 한다.

(b) (a) 항에 명시된 소독액은 다음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1) 항상 뚜껑을 닫은 상태로 유지한다.

(2) 용액이 탁하거나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교체한다.

(c)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모든 기구는 ‘Dirty(더러움)’, ‘Soiled(더러움)’ 또는 ‘Contaminated(오염됨)’이라 표기된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보관한다.

(d) 소독한 모든 기구는 ‘깨끗함(Clean)’ 또는 ‘Disinfected(소독 완료)’라고 표기된 라벨을 부착한 깨끗하고 노출되지 않은 곳에 보관한다.

(e) 소독한 기구를 소독이 불가한 용기, 파우치 또는 홀더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f) 가위는 다음 절차에 따라 소독한다.



- (1) 눈에 보이는 모든 이물질 제거한다.
- (2) 비누 또는 세제와 물로 세척한다.
- (3)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입증된 EPA 등록 소독제를 뿌리거나 물티슈 형태의 소독제로 닦는다.
- (g) 소독한 가위를 소독이 불가능한 용기, 파우치 또는 홀더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 (h) 본 절에 명시된 기구를 982절의 요건에 따라 살균한 경우, 본 절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80. 전기 기구의 소독

(a) 클리퍼와 다른 전기 기구들은 사용하기 전에 다음 순서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

- (1) 먼저, 눈에 보이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 (2)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입증된 EPA 등록 소독제를 뿌리거나 물티슈 형태의 소독제로 닦는다.
- (b) 소독한 모든 전기 기구는 깨끗한 장소에 보관한다.
- (c)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모든 기구는 ‘Soiled(더러움)’, ‘Dirty(더러움)’ 또는 ‘Contaminated(오염됨)’이라 표기된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보관한다(가열식 스타일링기 제외).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80.1. 월풀 풋스파 및 에어제트 족욕기 세척 및 소독 절차

- (a) 본 절에서 ‘월풀 풋스파’ 또는 ‘스파’는 순환하는 물을 사용하는 모든 족욕기로 정의된다.
- (b) 에어제트 족욕기는 에어제트 스트림 시스템을 사용하여 물을 순환시키는 족욕기로 정의된다.
- (c) 각 월풀 풋스파 또는 에어제트 족욕기는 고객에게 사용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 (1) 족욕기에서 물을 완전히 빼낸다.
 - (2) 족욕기의 안쪽 벽을 문질러 닦고 깨끗한 솔과 액상 비누(비누 제품 라벨이 부착된 제품), 물을 사용해 눈에 보이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 (3) 물로 스파 족욕기를 행군다.



(4) 스파 족욕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운다.

(5) 족욕기의 물은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소독제를 넣고 최소 10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6) 스파 족욕기의 물을 비우고 행군 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키친타올로 닦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7) 페디큐어 장비 세척 일지에 이 절차를 기록한다. 일지에는 각각의 세척 날짜와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세척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d) 매일 일과 종료 시, 마지막 고객 이용 후 월풀 풋스파 또는 에어제트 족욕기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1) 스크린 및 분리 가능한 기타 부품을 제거한다.

(2) 깨끗한 솔과 액상 비누(비누 제품 라벨이 부착된 제품), 물을 사용해 스크린과 족욕기의 안쪽, 기타 분리 가능한 부품, 그 부품의 후면에서 눈에 보이는 이물질질을 문질러 닦아낸다.

(3) 깨끗한 스크린과 기타 분리 가능한 부품을 다시 끼운다.

(4) 따뜻한 물과 세제(세제 제품 라벨이 부착된 제품)를 족욕기에 채우고 스파 시스템을 통해 최소 10분간 세제를 순환시킨다(제조업체 지침 참조).

(5) 세제 용액을 배출하고 족욕기를 행군다.

(6) 족욕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소독제를 넣고 최소 10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7) 물을 비우고 행군 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키친타올로 닦아 족욕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8) 페디큐어 장비 세척 일지에 이 절차를 기록한다. 일지에는 각각의 세척 날짜와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일과 종료 시 세척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e)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d)(1~6) 항에 규정된 절차를 시행한 후 월풀 풋스파와 에어제트 족욕기의 물을 비우지 않고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시행한다.

(1) 소독액을 비우지 않는다. 장치를 끄고 소독액이 담긴 채 최소 6시간 동안 둔다.

(2) 6시간이 지나면 소독액을 비우고 깨끗한 물로 행군다.



(3) 깨끗한 물로 족욕기를 다시 채우고 시스템에서 물을 배출한다.

(4) 페디큐어 장비 세척 일지에 이 절차를 기록한다. 일지에는 각각의 세척 날짜와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매주 세척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f)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g) ‘Not in Service(미사용)’ 중인 월플 풋스파의 경우, 해당 풋스파가 사용되지 않음을 장비 청소 일지에 표시해야 한다. 풋스파에 ‘Not in Service(미사용)’ 경고문을 올려 두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h) 본 절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또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본 절을 준수하지 않은 월플 풋스파 또는 에어제트 족욕기는 각각 별도의 위반 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80.2. 파이프리스 풋스파 세척 및 소독 절차

(a) 본 절에서 ‘파이프리스(pipeless)’ 풋스파는 발판, 임펠러, 임펠러 장치와 프로펠러가 장착된 모든 장치로 정의된다.

(b) 각 파이프리스 풋스파는 고객에게 사용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1) 풋스파의 족욕기에서 물을 완전히 빼낸다.

(2)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발판 및 기타 분리 가능한 부품을 분리한다.

(3) 깨끗한 솔과 액상 비누(비누 제품 라벨이 부착된 제품), 물을 사용해 임펠러, 발판, 족욕기 안쪽, 기타 부품, 그 부품의 후면이나 아래쪽에서 눈에 보이는 이물질은 문질러 닦아낸다. 깨끗한 물로 헹군다.

(4) 깨끗이 청소된 발판 또는 기타 부품을 다시 조립한다.

(5) 족욕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소독제를 넣고 최소 10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6) 물을 비우고 헹군 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키친타올로 닦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7) 페디큐어 장비 세척 일지에 이 절차를 기록한다. 일지에는 각각의 세척 날짜와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세척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c) 매일 일과 종료 시, 마지막 고객 이용 후 (b)(1~7) 항에서 규정된 절차를 시행한 후, 파이프리스 풋스파를 다음 순서에 따라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1) 따뜻한 물과 세제(세제 제품 라벨이 부착된 제품)를 족욕기에 채우고 스파 시스템을 통해 최소 10분간 세제를 순환시킨다(제조업체 지침 참조).

(2) 세제 용액을 배출하고 족욕기를 행군다.

(3) 족욕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소독제를 넣고 최소 10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4) 물을 비우고 행군 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키친타올로 닦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5) 족욕기를 완전히 건조시킨다.

(6) 페디큐어 장비 세척 일지에 이 절차를 기록한다. 일지에는 각각의 세척 날짜와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일과 종료 시 세척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d)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d)(1~3) 항에 규정된 절차를 시행한 후 파이프리스 풋스파의 소독액을 비우지 않고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시행한다.

(1) 장치를 끄고 소독액이 담긴 채 최소 6시간 동안 그대로 둔다.

(2) 6시간이 지나면 소독액을 비우고 깨끗한 물로 행군 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키친타올로 닦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3) 페디큐어 장비 세척 일지에 이 절차를 기록한다. 일지에는 각각의 세척 날짜와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매주 세척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e)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f) ‘Not in Service(미사용)’ 중인 월풀 풋스파의 경우, 해당 풋스파가 사용되지 않음을 장비 청소 일지에 표시해야 한다. 풋스파에 ‘Not in Service(미사용)’ 경고문을 올려 두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g) 본 절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또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본 절을 준수하지 않은 파이프리스 풋스파는 각각 별도의 위반 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406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80.3. 월풀 기능이 없는 족욕기 또는 족탕기의 세척 및 소독 절차

(a) 본 절에서 ‘월풀 기능이 없는 족욕기’ 또는 ‘족탕기’는 모든 족욕기, 족탕기, 풋배스, 싱크대, 대야 및 페디큐어 서비스 중 고객의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담는 모든 비전기식 장비를 의미한다.

(b) 월풀 기능이 없는 족욕기 또는 족탕기는 고객에게 사용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1) 족욕기 또는 족탕기에서 물을 완전히 빼낸다.

(2) 족욕기 또는 족탕기의 안쪽 벽을 문질러 닦고 깨끗한 솔과 액상 비누(비누 제품 라벨이 부착된 제품), 물을 사용해 눈에 보이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3) 족욕기 또는 족탕기를 깨끗한 물로 헹군다.

(4) 족욕기 또는 족탕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소독제를 넣고 순환시켜야 한다. 족욕기 또는 족탕기에 소독액을 최소 10분간 그대로 둔다.

(5) 물을 비우고 헹군 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키친타올로 닦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6) 페디큐어 장비 세척 일지에 이 절차를 기록한다. 일지에는 각각의 세척 날짜와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세척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c)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는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d) 본 절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또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본 절을 준수하지 않은 월풀 기능이 없는 족욕기 또는 족탕기는 각각 별도의 위반 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e) 소독한 모든 족욕기 또는 족탕기는 ‘깨끗함(Clean)’ 또는 ‘Disinfected(소독 완료)’라고 표기된 라벨을 부착한 깨끗하고 노출되지 않은 곳에 보관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406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80.4. 족탕기 또는 족욕기에 사용하는 일회용 라이너

(a) 족탕기 또는 족욕기에 깔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사용 후 버릴 수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라이너는 감염이나 재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1) 페디큐어 족탕기 라이너를 폐기한 후, 족욕기 또는 족탕기의 안쪽 벽을 문질러 닦고 깨끗한 솔과 액상 비누(비누 제품 라벨이 부착된 제품) 및 사용해 눈에 보이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족욕기 또는 족탕기를 깨끗한 물로 헹군 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키친타올로 닦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페디큐어 장비 세척 일지에 이 세척 절차를 기록한다. 일지에는 각각의 세척 날짜와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세척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3)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는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4) 라이너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교육 시설은 족욕기 1개당 라이너를 5장씩 비치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406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81. 기구 및 용품

(a) 고객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며 소독이 불가능한 모든 기구와 용품(버퍼, 각질 제거용 스톤, 왁스 스틱, 페디큐어용 고정 스폰지, 장갑, 면 패드, 스폰지, 네일 파일, 넥 스트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고객 1명에게 사용한 후 즉시 쓰레기통에 폐기해야 한다.

(b) 새 제품 및 사용 후 버릴 수 있는 일회용 기구는 깨끗하고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New(새 제품)’라는 라벨을 부착해 보관해야 한다.

시설 또는 교육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교육을 수행하는 사람은 사업 및 전문업법 7316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행위 중 착용한 옷이나 또는 유니폼에 기구 또는 용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82. 전기분해요법 기구 살균

(a) 교육 시설 및 시설에서 살균 처리되어 사용 후 버릴 수 있는 일회용 침/금속 침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 살균 가능한 모든 전기분해요법 기구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살균해야 한다.

(1) 비누나 세제를 사용해 물로 세척하고(초음파 장비도 사용 가능),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살균한다.

(A)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 가압 스팀 멸균기 사용.

(B)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 건식 열 살균기 사용.

(C) 살균된 각 패키지의 살균 완료 여부를 표시하는 화학적(색 변화)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2) 살균된 모든 기구는 사용하기 전까지 살균된 패키지에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해당 패키지는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살균 완료(Sterilized)’ 또는 ‘Sterilization(살균)’이라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3)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모든 기구는 ‘Dirty(더러움)’, ‘Soiled(더러움)’ 또는 ‘Contaminated(오염됨)’이라 표기된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보관한다.

(4) 살균 장비는 매주 점검을 통해 제조업체 지침에 명시된 온도에 도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b) 살균 처리되어 사용 후 버릴 수 있는 일회용 전기분해요법 침/금속 침은 사용 직후, 사용 전이라도 오염된 경우, 개봉 시 손상된 경우 찢어지지 않는 주사바늘 회수용 용기에 넣어야 한다. 주사바늘 회수용 용기가 3/4 이상 차면, 유해 폐기물로 처리해 버리고 새 용기로 교체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83. 개인 청결

(a) 고객을 대하는 면허 소지자와 학생은 항상 복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b)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면허 소지자와 학생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직전에 비누와 물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알코올 함유 손세정제를 사용해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84. 질병 및 감염

(a) 시설 또는 교육 시설은 면허 소지자나 학생이 고객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된 것을 인지하고도 해당 시설이나 교육 시설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b) 시설 또는 교육 시설은 고객이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된 것을 인지하고도 면허 소지자나 학생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c) 면허 소지자 또는 학생과 고객 간에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 또는 기생충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 감기, 독감, 열을 동반하는 기타 호흡기 질환, 해열 후 24 시간까지.
- 연쇄상구균 인두염(‘인후염/strep throat’), 치료 시작 후 24시간 또한 해열 후 24시간까지.
- 화농성 결막염(‘결막염/pink eye’),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다른 임상이가 업무 복귀를 승인할 때까지.
- 백일해(‘쌈쌈거리는 기침/whooping cough’), 5일간 항생제 치료가 끝날 때까지.
- 수두(‘수두/chicken pox’), 발진이 생긴 후 6일까지 또는 감염 부위가 마르고 딱지가 생긴 경우 그 전에.



- 불거리, 이하선이 붓기 시작한 후 9일까지.
- 폐결핵, 지역 보건당국이 전염성이 없다고 확신할 때까지.
- 농가진(세균성 피부 감염), 치료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 이기생증(머릿니), 첫 번째 치료 다음 날 오전까지.
- 옴(‘옴벌레/crabs’), 완치 시까지.

(d) 본 절의 목적상 HIV/AIDS와 B형 간염(HBV) 등 혈액 매개 질환은 전염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 시설 또는 교육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교육하는 사람은 고객의 피부에 염증, 상처(찰과상이나 베인 상처 등), 감염, 발진이 있는 경우 피부와 두피에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설 또는 교육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교육하는 사람의 피부에 염증, 상처, 감염, 발진이 있는 경우,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보건안전법 121365절.

985. 넥 스트립

위생용 넥 스트립 또는 타올은 고객이 보호용으로 걸치는 가운 등이 목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86. 넥더스터 및 브러시

(a) 시설이나 교육 시설에서 고객에게 사용하는 넥더스터 또는 네일더스터, 기타 매니큐어 브러시는 사용하기 전 다음과 순서에 따라 세척해야 한다.

- (1) 눈에 보이는 모든 이물질 제거한다.
- (2) 비누 또는 세제와 물로 세척한다.
- (3) 더스터 또는 브러시를 말린다.
- (4) 깨끗한 더스터 또는 브러시는 ‘깨끗함(Clean)’이라고 표기된 라벨을 부착한 청결하고 노출되지 않은 곳에 보관한다.
- (5)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모든 더스터나 브러시는 ‘Dirty(더러움)’, ‘Soiled(더러움)’ 또는 ‘Contaminated(오염됨)’이라 표기된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보관한다.

(b) 시설이나 교육 시설에서 고객에게 사용하는 천연 섬유, 페이스, 아크릴, 젤, 네일아트 및 화장용 브러시는 사용하기 전 다음과 순서에 따라 세척해야 한다.



- (1) 눈에 보이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 (2) 모너머, 메이크업 브러시용 리퀴드/스프레이 세정제, 알코올 등의 세정제를 사용해 세척한다.
- (3) 브러시를 말린다.
- (4) 깨끗한 브러시는 ‘깨끗함(Clean)’이라고 표기된 라벨을 부착한 청결하고 노출되지 않은 곳에 보관한다.
- (5)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모든 브러시는 ‘Dirty(더러움)’, ‘Soiled(더러움)’ 또는 ‘Contaminated(오염됨)’이라 표기된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보관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87. 타올

- (a) 수건, 시트, 로브, 리넨 또는 작업복은 1회 사용 후 뚜껑이 달린 보관함에 담아 세탁 및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b) 수건, 시트, 로브, 리넨 또는 작업복은 일반적인 상용 세탁 방식 또는 세탁이나 행굼 과정에서 화씨 160도 이상의 물에 25분 이상 담가두는 과정이 포함된 비상용 세탁 방식에 따라 세탁해야 한다. 또는 제조업체의 세탁기, 건조기, 세제, 린스에이드 및 다른 첨가제 사용 지침에 따라 상용 세탁 시 찬물에서 미생물을 제거하는 화학약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세탁용 세제가 반드시 향균 세제일 필요는 없다.
- (c) 모든 깨끗한 수건, 시트, 로브, 리넨 또는 작업복은 깨끗하고 노출되지 않은 캐비닛이나 보관함에 두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88. 액체 용품, 크림, 파우더 및 화장품

- (a) 모든 액체 용품, 크림, 왁스, 샴푸, 젤 및 기타 화장품은 깨끗하고 뚜껑이 달린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파우더는 깨끗한 셰이커에 보관할 수 있다.
- (b) 모든 병과 용기는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유독성 물질이 들어 있는 모든 병과 용기에는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유독성 물질을 제조업체의 라벨이 붙어 있는 용기에 둔 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다.
- (c) 화장품의 일부만을 고객에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나머지가 오염되지 않는 방식으로 병이나 용기에서 덜어내야 한다.



(1) 본 조항은 병원균을 전파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화장품(매니큐어 제품, 인조 모노머액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펜슬형 화장품은 사용 전에 깎아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89. 금지된 위험 물질/제품 사용

시설 또는 교육 시설에서는,

(a) 미국 식품의약국이 화장품으로 사용을 금지한 위험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구내에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b) 메타크리산메틸 모너머 및/또는 염화메틸렌을 구내에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c)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산업안전보건국(EPA)에서 승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90. 머리 받침대, 샴푸 트레이, 샴푸대 및 시술대

(a) 고객이 바뀔 때마다 깨끗한 타올이나 종이로 의자의 머리 받침대를 덮어야 한다.

(b) 샴푸 트레이와 샴푸대는 사용 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적절히 관리하여 항상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c) 시술대는 사용 후에 항상 깨끗한 시술대용 종이, 깨끗한 타올 또는 깨끗한 시트를 깔아야 한다. 타올이나 시트는 1회 사용 후 즉시 시술대에서 떼어내 뚜껑이 있는 보관함에 넣고, 적절한 세탁 및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술대용 종이는 1회 사용 후 즉시 쓰레기통에 폐기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91. 침습적 시술

(a) 면허 소지자와 학생은 표피층 아래의 피부를 제거, 파괴, 절개 또는 관통하는 제품, 기기, 기계, 기타 기술 또는 그 조합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행위는 침습적 시술로 간주된다.

(b) 침습적 시술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1) 근육을 눈에 띄게 수축시키는 전기적 시술.
- (2) 구입 시 의료 면허가 필요한 국부 로션, 크림, 세럼 또는 기타 물질 사용.
- (3) 전기분해요법 침/금속 침을 제외한 금속 침을 피부에 삽입하는 행위.
- (4) 표피층 아래의 피부를 긁어내거나 벗겨내는 행위.
- (5) 면도날이 달린 기구나 그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해 피부를 제거하는 행위.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7316, 7320, 7320.1절

992. 피부 각질 제거

- (a) 미용 목적으로, 표피층이라고 하는 피부의 가장 바깥쪽 세포층만을 어떠한 방식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제거할 수 있다.
- (b) 표피층 외에 살아 있는 피부 세포층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박피 기술은 금지된다.
- (c) 피부 각질 제거에는 의료 목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다.
- (d) 고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모든 각질 제거 제품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7316, 7320절

993. 금지된 도구

- (a) 시설이나 교육 시설은 굳은살 제거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시술을 위해 면도날이 달린 기구를 구내에 비치할 수 없다.
- (b) 시설이나 교육 시설은 기미 제거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시술을 위한 바늘과 같은 기구를 구내에 비치할 수 없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7320, 7320.1절

994. 청결 및 유지보수

- (a) 시설이나 교육 시설은 바닥, 벽, 목조부, 천장, 가구, 비품 및 설비를 청결하게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b) 시설이나 교육 시설에는 쓰레기, 잘라낸 머리카락 또는 폐기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절.



995. 건물 표준

- (a) 시설 및 교육 시설은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24편 제2부 1203절에 따라 적절한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 (b)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24편 제5부 601.3.1절에 따라 냉온수 상수도 설비를 갖춰야 한다.
- (c) 시설 및 교육 시설은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24편 제5부 601.3.3절에 따라 음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 (d) 시설 및 교육 시설은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24편 제5부 601.3.2절에 따라 세면 시설을 갖춰야 한다.
- (e) 시설 및 교육 시설은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24편 제5부 422.6, 422.7절 및 표 422.1에 따라 공중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7352절

998. 수수료 요율표

위원회는 다음 수수료(달러)를 부과한다.

- (a) 이발사:
 - (1) 신청 및 시험 응시 수수료 75
 - (2) 최초 면허 수수료 50
 - (3) 면허 갱신 수수료 50¹
 - (4) 면허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 25¹
- (b) 미용전문가:
 - (1) 신청 및 시험 응시 수수료 75
 - (2) 최초 면허 수수료 50
 - (3) 면허 갱신 수수료 50¹
 - (4) 면허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 25¹
- (c) 피부미용사:
 - (1) 신청 및 시험 응시 수수료 75
 - (2) 최초 면허 수수료 40
 - (3) 면허 갱신 수수료 50¹
 - (4) 면허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 25¹
- (d) 매니큐어사:
 - (1) 신청 및 시험 응시 수수료 75
 - (2) 최초 면허 수수료 35
 - (3) 면허 갱신 수수료 50¹



(4) 면허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	25 ¹
(e)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1) 신청 및 시험 응시 수수료	75
(2) 최초 면허 수수료	50
(3) 면허 갱신 수수료	50 ¹
(4) 면허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	25 ¹
(f) 신청 및 시험 응시 수수료 ² 25	
(g) 시설:	
(1) 지원 및 최초 면허 수수료	50
(2) 면허 갱신 수수료	40
(3) 면허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	20
(h) 이동 설비차:	
(1) 신청 수수료	50
(2) 최초 점검 및 면허 수수료	100
(3) 면허 갱신 수수료	40
(4) 면허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	20
(i) 개인 서비스 허가증	
(1) 최초 면허 수수료	25
(2) 면허 갱신 수수료	10
(3) 면허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	5

이 수수료는 2007년 12월 21일부로 만료되는 모든 면허에 적용된다.

² 견습생 면허는 갱신할 수 없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37.5 및 7421절 참고 문헌: 사업 및 전문업법 7402.5, 7415, 7417, 7418, 7419, 7420, 7423, 7424 및 7425절

제13조. 수입

999. 부도 수표 수수료

결제되지 않고 되돌아온 개인 수표의 수수료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소비자자국이 정한 금액이다. 이 수수료는 부도 수표에 대한 변제액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참고: 인용 전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절. 참고 문헌: 민법 1719절, 정부법 6157절.



의도적 공백 페이지



의도적 공백 페이지





발행:

이·미용 위원회

P.O. Box 944226
Sacramento, CA 94244-2260
(800) 952-5210
www.barbercosmo.ca.gov

2025년 캘리포니아주 이·미용 위원회 법률 및 규정집의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모든 사본은 무상으로 배포되어야 합니다.